

미국의 정치자금법제연구

- 2002년 연방선거운동개혁법을 중심으로 -

2002. 12.

연구자 : 김선화(대법원 사법정책연구실 조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목 차

제 1 장 서 설	7
제 2 장 미국 연방선거운동법상 정치자금제도	13
제 1 절 개 요	13
제 2 절 감독기관 : 연방선거위원회 (Federal Election Commission)	13
1. 위원회의 임무	14
2. 위원회의 구성	14
3. 위원회의 권한	14
1) 구체적 권한	14
2) 선거위원회의 소환과 명령에 복종시키기 위한 사법명령	15
3) 정보 공개 요구권	15
4) 의회 또는 예산평가위원회에 대한 동시송달	15
5) 실행을 위한 유일한 민사구제책	15
4. 위원회의 의무	16
5. 위원회의 독립성 문제	16
제 3 절 정치위원회	16
1. 의 의	16
2. 정치위원회의 종류	17
3. 수지보고	17
4. 수지보고서의 공개	18
제 4 절 정치자금의 모금	19
1. 의 의	19
2. 정치자금의 기부한도	19
1) 개인의 기부한도	19

2) 복수후보자정치위원회의 기부한도	19
3. 정치자금의 기부금지	20
1) 기업, 노동조합, 국립은행의 기부금지	20
2) 정부와 계약관계가 있는 자	20
3) 외국인	20
4) 다른 사람 명의의 기부	21
5) 현금기부	21
6) 미성년자의 기부 금지	21
4. 소프트머니의 금지	21
1) 의 의	21
2) 일반규정	22
3) 정책광고에 대한 소프트머니의 문제	23
5. 위법적인 기부에 대한 조치	24
제 5 절 정치자금의 지출	25
1. 독립지출	25
1) 독립지출의 의의	25
2) 독립지출의 주체	26
3) 독립지출이 아닌 것	26
4) 공지요건	28
5) 보고요건	28
6) 독립지출을 한 위원회에 대한 기부	29
2. 대통령 후보자의 경비지출범위	29
3. 연방직 선거와 관련한 정치위원회의 경비지출범위	30
4. 국립은행·기업·노동조합에 의한 지출	30
5. 선거운동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정치자금의 공개	30
제 6 절 보고서의 공개	31

제 3 장 미국 내국세법상 정치자금제도	33
제 1 절 개 요	33
제 2 절 대통령선거운동자금	33
1. 국고보조금 일반	33
1) 국고보조금의 연혁	33
2) 보조금의 수급자격	34
3) 연방선거위원회에 의한 인증	35
4) 선거운동기금의 설치	35
5) 연방선거위원회의 감사	36
2. 대통령 후보지명대회를 위한 보조금	37
1) 계정의 설치	37
2) 기금의 사용 및 지출한도	37
3. 의회에 대한 보고	38
4. 사법심사	38
제 3 절 대통령예비선거보조지출계정	39
1. 대통령예비선거보조지출계정의 설치	39
2. 보조금수급자격	39
3. 보조금수령적격후보자의 권리	40
4. 적정선거운동비용의 한도	40
5. 조사와 반환	40
6. 보고와 규칙	41
7. 사법심사	41
제 4 장 미국정치자금제도의 평가	43
제 1 절 정치자금분배의 불균등	43
제 2 절 연방선거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45
제 3 절 수정헌법 제1조와 정치자금	45

제 5 장 결 어 49

<부 록>

○ 聯邦選舉運動法중 政治資金關係規定 51

○ 內國稅法중 政治資金關係規定 119

제1장 서설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즉 政治資金은 現代 民主的 代議制度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민주주의를 위한 비용이라는 現實인 政治條件임과 동시에 정치과정의 腐敗要因임을 인식하고, 그 조성과 지출 등을 법으로 제도화¹⁾하고 있다.

즉, 정치자금을 法制化하는 目的은 선거를 포함한 광범위한 정치영역에 돈이 침투하여 정치의 본래기능을 왜곡하고 국가기능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다시 말하면, 국가의 본질과 기능으로부터 公共性을 확보하고 資本으로부터 中立性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²⁾이다.

우리나라도 건국 이래 지금까지 정치자금문제가 모든 정치와 사회의 透明性과 公正함의 핵심적인 문제로 논의되어 오고 있는 바이다. 본 연구도 우리의 제도의 마련과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는 미국의 정치자금제도에 관하여 개관하려고 한다³⁾.

미국에서도 정치자금법제가 제대로 실효성을 가지게 된 것은 그다지 오래된 일은 아니다. 미국의 선거운동자금에 관한 연방법으로 최초의 것은 1867년 해군정부지출금법(Naval Appropriations Bill)인데, 동법은 정부관리나 고용인은 해군시설의 근로자들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이 규정은 1883년 공무원개혁법(Civil Service Reform Act)에서 모든 연방공무원에게로 확대된다. 그 이전에는 정부직원들이 그 직업을 유지

1) 일본의 정치자금규정법, 독일의 기본법, 영국의 2000년 정당및선거법, 이탈리아의 법률915호등. 자세한 것은

http://search.assembly.go.kr/alkms/html-77/menu6_index.html 참조.

2) 정종섭, 『정치자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헌법연구2, 박영사, 2001, 123면 등.

3) 다른 정치현상과 마찬가지로 정치자금제도도 각 국가의 정당제도나 선거제도, 정치문화, 경제기반 등의 제반 사정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정치자금제도도 특유한 정치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우리의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정치자금제도의 나아갈 방향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것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른 연구에 미루고, 정치자금에 직접 관련된 부분에서 필요한 특징에 대해서만 간단히 짚어보는 것으로, 논의의 범위를 정치자금제도 자체만으로 좁히기로 한다. 미국의 정치자금제도에 대한 연구와 판례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정치자금자체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정치자금에 관련하여 수정헌법 제1조와의 관련여부, 소외계층의 참정권과의 관련여부들에 대한 문헌들이 상당히 많다.

하기 위해서 선거자금기부를 하도록 기대되었던 것이다. 1905년 테디 루즈벨트 대통령은 의회에 대한 교서에서 기업이 정치단체에 하는 모든 기부 혹은 정치목적의 기부를 법으로 금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기업의 소유주나 기업의 경영자 개인으로부터의 기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그리고 실제로 정치자금에 관한 규제가 완비된 최초의 것이라고 지적되는 1907년 킬먼법(Tillman Act)은 연방후보에게 기업이나 국책은행들은 직접 기부금을 내는 것을 금지하였지만, 강제력을 담보하지 못하여 효력을 거의 가지지 못했다고 한다. 1910년의 연방부패방지법(Federal Corruption Practices Act)도 미하원의원 후보자에 대한 명세서요건을 규정하였고 1911년에는 상원에까지 이를 확대하였으나 역시 강제력을 발휘하지 못하여 유명무실해졌다. 이러한 유명무실한 상태는 1925년 지출상한과 명세서에 관하여 정하는 개정을 하였어도 강제력을 의회가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⁴⁾였다. 그래도 1971년까지 연방의 정치자금에 관한 기본법으로 역할하였다.

1971년에는 연방선거운동법(Federal Election Campaign Act:이하 FECA)을 제정하여, 부패방지법(Corruption Practices Act)을 폐지하고, 예비선거, 결승투표, 총선거, 전당대회에 관한 전반적인 기초를 마련하고 항시 자금을 항시 공개하도록 정하였다. 또한 미디어 광고에 대한 규제도 정하고 후보나 그 가족으로부터의 기부금도 제한하였으며 노동조합과 기업이 그 구성원, 고용인, 주주들로부터 자발적인 기부를 모금할 수 있

4) 1971년 FECA입법이 있기까지, 1940년 Hatch Act Amendment(연방후보자나 정치위원회에 개입기부자는 연간 5000달러이상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함. 또한 예비선거와 총선거모두에 적용되는 선거자금규정을 만들), 1943년 Smith-Connally Act(전국은행과 기업으로부터 연방후보가 기부를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을 노동조합도 하지 못하도록 함.), 1944년 Formation of First PAC(로즈벨트재선을 위한 자금모집을 위하여 최초로 정치작용위원회가 산업구조의회에 의하여 형성되었는데 PAC의 자금이 노동조합구성원들의 자발적인 개인현금에서 나온 것이고 노동조합기금이 아니었으므로 Smith-Connally Act에 의하여 금지되는 것이 아니었음), 1947년 Taft-Hartley Act(연방후보자가 노동조합, 기업, 전국은행으로부터 기부받을 수 없는 것을 영구히 하고, 그 적용범위를 예비선거와 총선거에 같이 함)와 같은 입법들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1967년 W. Pat Jennings 전의원이 1925년 Corrupt Practices Act에 근거한 하원의 첫 담당관으로서 작성한 선거자금과 그 위법자에 대한 보고서를 법무부는 무시했다.

도록 허용하고, 정치위원회(PACs)의 운영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기업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그리고 동년, 내국세법(Revenue Act)을 제정하여 연방소득세환급 중 자발적인 1달러기부규정을 통하여 대통령선거의 후보를 위한 공공선거자금을 창설하고 개인기부자들이 지방, 주, 연방선거후보자를 위한 50달러 감세와 12.5달러의 세금유예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던 중 워터게이트사건이 터지자, 다시 1974년 FECA를 개정하여, 대통령선거에서의 완전 공공자금이나 대통령예비선거를 위한 보조금(matching funds), 대통령후보지명정당대회를 위한 공공자금(public funds) 중에 선택을 하도록 하고, 대통령 예비선거와 본선거의 지출상한과 상원과 하원선거에서의 지출상한을 규정하였다. 한 선거당 후보자 1인에 대한 개인의 기부금을 1,000달러로 제한하는 규정을 창설하고, 한 선거당 후보자 1인에 대한 PAC의 기부금을 상한을 5,000달러로 제한하였다. 또한 한 개인이 연간 25,000달러 이상을 기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후보자의 자신에 대한 선거비용 역시 제한하였다. 한 후보의 독립지출을 선거당 1,000달러로 제한하는 규정도 있다. 그리고 1940년 정부와의 계약하여 고용된 개인이나 단체로부터의 기부금지는 해제하였으며, 미디어광고에 대한 규제도 철폐하였다. 그리고 선거법을 관장하기 위한 연방선거위원회(Federal Election Commission: 이하 FEC)를 창설하여 의회가 6명의 의원 중에 4인을 지명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들이 언론의 자유에 반한다는 위헌분쟁이 발생하였다. 그것이 미국정치자금법제에 획기적인 사건인 Buckley v. Valeo(1976)⁵⁾이다. 연방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기부제한과 선거운동비용수지의 공개는 인정하였으나, 후보자에 대한 지출제한(공적 자금의 지원을 받은 후보는 제외)과 “독립지출”에 대한 제한은 연방수정헌법 제1조에 반한다⁶⁾고 하였다.

5) Buckley v. Valeo, 424 U.S.1 (1976).

6) 이에 대하여 Stevens 판사같은 이는 선거자금은 언론이 아니라 재산이므로, 연방대법원이 이 조항을 근거로 위헌판결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적법질차조항으로 심사하여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주장한다(Nixon v. Shrink Missouri Government PAC, 528 U.S. 377, 2000., 398-99).

따라서 피치못하게 다시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판결에 따라 1976년에 FECA개정이 있었다. 이 개정은 버클리 판결을 존중하여 이루어졌고, 전국 정당에 대한 개인기부금을 연간 20,000달러로 제한하고 PAC에 대한 개인 기부금도 연간 5,000달러로 제한하였다. 그 뒤 1979년 다시 자원자들이 물품으로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을 5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상향조정하고 신고해야 하는 기부금의 상한도 100달러에서 200달러로 상향조정하였다. 그리고 FEC가 변칙감사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규제하였다. 그리고 주나 지방의 정당이 선거물품(차량스티커나 사인 등의 이용)을 무제한 사용하여 연방 후보자를 후원하는 것을 허용하였다.⁷⁾

2000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에서는 소프트머니의 규제에 대한 논의가 대단하였다. 소프트머니⁸⁾라 함은 정치위원회나 기업으로부터 모금된 포괄적 형태의 정치자금으로 기부한도액이 정해져서 특정선거에서 특정후보를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한 하드머니와 대칭되는 정치자금을 말한다. 논쟁은 소프트머니를 규제하려는 1998년 McCain-Feingold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그리고 2002년 초 부시행정부초반에 엔론게이트가 터지면서 더욱 가열되었다. 현재 정치자금법제의 개혁이 진행중⁹⁾인데, 공화당의 필리버스터 협박에도 불구하고, 상원은 60-40으로 2002년 3월 27일 선거운동개혁법(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 30여년 중 가장 改革의인 법안이 제정된 셈이다. 전국정당

7)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brook.edu/dybdocroot/gs/cf/sourcebk01/HistoryChap.pdf>의 Anthony Corrado, *A History of Federal Campaign Finance Law*를 참조.

8) 소프트머니라 함은 법률상의 정의는 없지만, 연방선거위원회의 용례에 의하면, 연방선거법상 출원이 금지되어 있는 주체에 의하거나 기부의 한도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금지된 자금으로서 연방선거와 무관하지만 연방선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위하여 모금되고 사용되는 정치자금(L.Paige Whitaker, *Campaign Finance: Constitutional and Legal Issue of Soft Money*, CRS Brief for Congress, The Library of Congress, 2002. 4. 16.의 1면: 또한 이 보고서는 소프트머니를 3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정당 소프트머니, 기업이나 노조소프트머니, 쟁점옹호소프트머니가 그것이다. 자세한 것은 이후에 상술한다.)

9) 자세한 내용은 <http://www.fec.gov>에서 2002년 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의 Rulemaking에 대한 안내를 참조. 독립지출(Independent Expenditure)등에 대한 규정은 2002년 12월 중순 이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에 의한 소프트머니계정이 폐지되었고 또한 하드머니에 대한 제한이 상향조정되고, 소위 정책광고에 대한 규제가 추진되고 있다¹⁰⁾. 그러나 합헌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違憲訴訟이 잇따르고 있어¹¹⁾, 정치자금제도의 改革은 아직 未完이라 보아도 좋을 듯하다.

이하에서는 현행 정치자금제도 즉, 2002년 11월 6일부터 발효한 선거운동 개혁법으로 인한 개정내용¹²⁾을 고려하여 연방의 정치자금제도를 위한 규정들과 논의가 되고 있는 관련문제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러한 法制와 논의들이 우리나라의 정치자금법제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10) <http://www.followthemoney.org/press/pp/story6.html> 참조.

11) <http://www.opensecrets.org/payback/issue.asp?issueid=CFR> (last updated : 2002년 11월 19일).

12) 2002년 선거운동개혁법 내용이 정리된 것으로 참고할 만한 자료로는, 이익현, 미국의 2002년도 선거운동개혁법안, 법제 2002. 5.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

제 2 장 미국 연방선거운동법상 정치자금제도

제 1 절 개 요

미국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는 주로 限度制限과 公開에 의한다. 이러한 규제는 미국 연방법상 주로 연방선거운동법(Federal Election Campaign Act)과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Act)에서 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자금에 대한 법제는 정치부패사건이나 社會的 變化에 따라 개혁되어 왔다. 최근에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방선거운동법(Federal Election Campaign Act)은 2002년 3월 27일 제정된 선거운동개혁법(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에 의하여 많은 부분 수정¹³⁾이 이루어졌다. 그 수정의 내용은 주로 후원금이나 기부금의 上限을 조정하고 또한 소프트머니를 規制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정치자금에 대한 현행제도를 연방선거운동법을 중심으로 주요 골자와 특징에 대해 살펴본다.

제 2 절 감독기관 : 연방선거위원회 (Federal Election Commission)

정치자금에 관계된 모든 행위를 감독하는 기구로서는 수정된 연방선거운동법에 의하여 1975년 창설된 연방선거위원회(Federal Election Commission)¹⁴⁾가 있다.

13) Public Law No. 107-155.의 개정사항:

“Soft Money” -- i.e., solicitation and use of nonfederal funds by parties, candidates and officeholders, “Electioneering Communications” -- e.g., issue ads, Increased contribution limits, Prohibited contributions -- i.e., from minors and foreign national, Inaugural committees, Coordinated and independent expenditures, The “Millionaire’s Amendment” -- i.e., the increase in contribution limits for candidates facing a wealthy opponent who intends to make large expenditures from personal funds, Fraudulent solicitations, Disclaimers, Prohibited and permitted uses of campaign funds, Civil penalties, Reporting

14) 연방선거운동법 제437조c.

1. 위원회의 임무

연방선거위원회의 주된 임무는 대통령선거후보자에게 國庫補助를 지원하고 支出과 寄附의 제한을 강화하고 정치자금의 수령에 대한 전반적인 공개의 규정을 이행하게 한다.

2.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6인으로 구성되며 大統領이 任命하고 上院이 이를 承認한다. 각 위원은 6년의 임기로 임명된다. 그리고 그 6인 이외에 2인이 2년마다 임명된다. 법률에 의하여 위원은 4명이상이 동일 정당 소속이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위원회의 결정은 최소한 4인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구조는 당파와 무관한 결정을 위한 것이다.

위원회는 1명의 의장과 1명의 부의장을 그 위원(상원사무총장과 하원사무총장을 제외)중에서 1년의 임기로 선출한다. 위원은 그 임기중 1회에 한하여 의장에 취임할 수 있다. 의장과 부의장은 同一政黨소속이어서는 안된다. 부의장은 의장의 부재,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공석이 된 경우 의장으로서 행동한다.

3. 위원회의 권한¹⁵⁾

1) 구체적 권한

연방선거위원회는 구체적으로, 특별명령이나 일반명령으로써 선거위원회가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선서하에 서면보고서 및 답변서를 제출케 하는 권한, 선서 또는 증언을 시키는 권한, 의장 또는 부의장이 서명한 소환장에 의하여 증인을 출석·증언하게 하고 직무수행과 관련된 모든 증거서류를 제출 시키는 권한, 소송절차나 조사에 있어서 선거위원회가 지정하는 사람앞에서 선서증언에 의거하여 증언을 시키고 선서를 집행하며 증언과 증거제출을 강

15) §437d의 내용 참조.

요할 수 있는 권한, 증인에게 법정에서와 마찬가지로의 요금과 여비를 지급할 권한, 위원회의 이름으로 금지명령, 선고, 기타 적절한 구제를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변호하고 상소할 권한, 조언을 제공할 권한, 필요한 경우 서류양식을 개발하고 규칙을 만들고 수정하고 철폐할 권한, 자발적으로 법의 준수를 장려하고 명백한 위법을 보고하기 위하여 조사와 청문을 신속히 실시할 권한을 가진다.

2) 선거위원회의 소환과 명령에 복종시키기 위한 사법명령

선거위원회의 소환이나 명령에 불복할 경우 선거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관할구역의 地方法院은 복종명령을 발할 수 있다. 법원의 명령에 不服하면 법정모독죄로 처벌될 수 있다.

3) 정보 공개 요구권

선거위원회는 어떤 사람도 선거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정부나 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공개할 민사상 의무는 없다.

4) 의회 또는 예산평가위원회에 대한 동시송달

선거위원회가 대통령 또는 예산관리국에게 예산평가서 또는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는 그 사본을 동시에 의회에 송달한다. 또한 의회 또는 의원의 요청에 따라 입법추천·증언 또는 입법논평을 대통령이나 예산관리국에 제출할 때는 동시에 그것을 요청한 의회 또는 의원에게 그 사본을 송달해야 한다. 미연방의 어떤 관리나 기관도 선거위원회에게 그 입법추천이나 증언이나 입법논평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자기에게 제출하여 승인·논평 또는 검토를 받으라고 요구할 권한은 없다.

5) 실행을 위한 유일한 민사구제책

선거위원회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권한은 유일한 민사구제수단이다.

4. 위원회의 의무

선거위원회는 연방선거운동법을 집행하기 위한 필요한 서식에 관련된 양식, 편철 등에 관하여 준비하여야 하며, 제출된 보고서와 명세서를 一般이 閱覽할 수 있도록 48시간 이내에 복사가능한 상태로 해두어야 한다. 또한 접수된 보고서나 명세서는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고서의 제출을 거부하는 후원회의 명단을 작성하여 편찬한다. 또한 공문서와 정보수집활동을 하며, 정치위원회에 대하여 會計監査와 現場調査를 할 수 있다.

명령·규칙·양식의 제정에 관하여 그 설명서를 상원과 하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상원과 하원이 선거위원회가 제출한 명령이나 규칙안을 그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하지 아니하면, 선거위원회가 스스로 제정한다.¹⁶⁾

5. 위원회의 독립성 문제

연방선거위원회는 선거가 어느 정도로 통제되어야 하는가 하는 딜레마로부터 끊임없는 비판의 대상이며, 의장의 임기도 1년에 지나지 않는 등 政策的 方向이 不在한 약한 委員會構造를 가지고 있으며, 의회에 의하여 연방선거위원회의 豫算은 統制를 당한다. 또한 의회 스스로 독립적 단체의 출현을 꺼리는 경향도 있다. 따라서 연방선거위원회가 정치자금개혁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는 비판¹⁷⁾이 있다.

제 3 절 정치위원회

1. 의 의

정치위원회란 연방·주·지방의 각급 정당조직, 각종 선거운동위원회, 후보자의 수권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정치적 결사체로서 일정한도 이상의 정치자금을 조성하고 기부한 실적이 있는 조직의 총칭이다. 연방선거법에 따르

16) §438 참조.

17) Herbert E. Alexander, Rei Shiratiri, *Comparative Political Finance among the Democracies*, Boulder:Westview Pr., 1994., 40-49pp.

면 정치위원회는 연간 총 1000달러를 초과하는 기부금을 받거나 경비를 지출하는 위원회·클럽·협회 또는 단체, 법인이나 노동조합등이 그 회사로부터 분리하여 설립한 연방선거에 관한 개인헌금을 받는 독립기금, 주미만의 정당조직으로 연간 5,000달러를 초과하는 연방선거에 관한 기부를 수령하거나 연중 연방선거에 관한 기부나 지출에 관련되는 연방선거법상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연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5,000달러를 초과하는 지분을 행하거나 연중 1,000달러를 초과하는 연방선거에 관한 기부를 행하거나 또는 연중 1,000달러를 초과하는 연방선거에 관한 지출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¹⁸⁾.

2. 정치위원회의 종류

주요선거운동위원회, 수권위원회, 다수후보자정치위원회등이 있다.

연방직 후보자는 서면으로써 후보자가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주요선거운동위원회를 지정한다¹⁹⁾. 수권위원회는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금을 받거나 경비를 지출하도록 후보자가 권한을 부여한 정치위원회를 말한다²⁰⁾.

3. 수지보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련한 회계에 관하여는 주요선거운동위원회가 종합하여 보고하며, 주요선거운동위원회외의 수권위원회는 주된 운동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이를 주요선거운동위원회가 종합하여 상·하원 사무총장에게 제출한다.

연방선거운동법상 정치위원회는 그 조직에 반드시 회계원²¹⁾을 두어야 하며, 회계원은 당해 정치위원회의 현금상황, 수지상황, 연 200달러를 초과하는 기부·지출명세 기타 사항을 보고서로 제출한다. 이 때 보고서의 내용에는 그 정치위원회가 받은 모든 기부금, 50달러를 초과하여 기부한 자의 성

18) §431(4).

19) §431(5), §432(e)(1) 참조.

20) §431(6).

21) 회계원은 누구라도 될 수 있다. 특별한 훈련도 필요없고, 회계의 기본원칙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충분하다.

명과 주소 및 기부일자와 기부금액, 연간 총 200달러 이상을 기부한 자의 신분증명과 기부일자 및 기부금액, 기부를 한 정치위원회의 증명과 기부일자, 기부금액, 그 자금을 지급받은 자의 성명, 주소, 지불일자, 금액, 목적 매 지불마다 200달러를 초과하는 영수증, 송장, 소인이 찍힌 수표를 포함하여 지불이 행하여진 후보자의 성명 및 후보자가 구하는 공직 등이 포함²²⁾되어야 한다.

보고서의 제출은 상하양원위원선거후보자의 주요선거운동위원회에 대해서는 상원사무총장이나 하원사무총장에게 하며, 또한 주의 사무총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에 연방선거위원회에는 상하양원의 사무총장이 받은 보고서의 사본이 제출된다.

대통령선거후보자의 주요선거운동위원회에 대해서는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하고 보고대상기간 중에 지출한 주의 사무총장에게도 사본을 제출한다. PAC에 대해서는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한다. 정당의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오직 연방상원의원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상원사무총장에게, 연방하원의원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하원사무총장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제출된 보고서는 公共閱覽이 가능하도록 조치되어야 한다.²³⁾

4. 수지보고서의 공개

위원회는 컴퓨터 디스켓이나 다른 적절한 전자매체형태로 제출, 보존되도록 규정을 공포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회에 대한 조사에 이용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나 통지 등을 그 수령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인터넷에서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고서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조치한다.²⁴⁾

보고서는 복사할 수 있게 하는데, 기부의 권고나 상업용 목적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22) §432(c).

23) §432 참조.

24) §434(a)(11).

제 4 절 정치자금의 모금

1. 의 의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지출할 수 있는 주체는 외국인과 법인을 제외한 개인, 기업이나 노동조합의 직접 참여가 금지된 정치위원회, 연방·주·지방정당, 그 후보자이다. 그리고 기부하는 금품에는 금전 뿐 아니라 물품, 서비스 등도 포함된다. 또한 모금행사라든가 선거물품등의 자금모집에 대해서는 순익부분에 한하지 아니하고 매상액의 전액이 기부에 해당하게 된다.

미국에서 정치자금은 연방선거운동법의 규제를 받는 하드머니와 그 규제의 대상이 아닌 소프트머니로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2002년 개정에서 소프트머니를 전면 규제하게 되었다.

2. 정치자금의 기부한도

1) 개인의 기부한도

사인인 개인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데, 개인이 2년의 한 선거주기 중에 할 수 있는 최대 기부액의 총액은 95,000달러로 정해져 있다. 그 총액 제한은 다시 후보자 개인(이 때 후보자의 수는 상관없음)에 대한 선거주기에 총 기부한도가 37,500달러, 전국정당위원회와 PACs에 대한 선거주기에 총 기부한도는 57,500달러로 제한되도록 되어 있다. 연방직선거의 후보자와 그 수권위원회에 대하여는 총 2,000달러, 그 외의 전국정당의 정치위원회에 대하여는 연간 총 25,000달러, 기타 정치위원회에 대해서는 연간 총 5,000달러, 주와 지역의 정치위원회에 대해서는 연간 총 10,000달러까지 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²⁵⁾

2) 복수후보자정치위원회의 기부한도

복수후보자정치위원회²⁶⁾도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다. 다만, 기부대상에

25) §441a(a)(1)과 (3) 참조.

26) 최소한 6개월 이상 등록되었고 기부자가 50명이상이며 주의 정치위원회의 예외로서

따라 그 한도액이 다른 바, 연방직선거의 후보자와 그 수권위원회에 대하여는 연간 총 5,000달러, 수권정치위원회가 아닌 전국정당정치위원회에 대하여는 연간 총 15,000달러, 주나 지역 정치위원회에 대하여는 5,000달러까지 기부할 수 있다.²⁷⁾

3. 정치자금의 기부금지

1) 기업, 노동조합, 국립은행의 기부금지

국립은행이나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창설된 회사가 어떤 공직선거나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는 예비선거나 정당대회, 간부회의 등과 관련하여 기부나 지출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회사나 노동조합이 정·부통령, 상·하의원, 준주 및 보호령의 대표자선거와 관련하여 기부나 지출을 행하는 것도 금지된다.²⁸⁾

2) 정부와 계약관계가 있는 자

미국정부와 용역제공·자재나 보급품 또는 장비의 공급, 토지건물의 매도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 수행에 대한 지급 또는 그 대금의 전부나 일부가 의회의 지출승인된 자금에서 이루어질 경우, 기부가 금지된다.²⁹⁾

3) 외국인

외국인이 직접이나 간접으로 연방, 주, 지방 선거등과 관련하여 기부나 후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약속하거나 또는 기부를 하는 것, 정당위원회나 선거운동매체에 대한 지출이나 독립지출을 하는 것은 모두 금지되어 있다.³⁰⁾

연방직 선거의 5명 이상의 후보자에 대한 기부를 하는 정치위원회를 말한다. 100.5 (e)(3).

27) §441a(a)(2).

28) §441b(a). 노동조합이나 기부금, 지출경비등에 대한 정의는 동조(b)에서 참조.

29) §441c(a).

30) §441e(a).

4) 다른 사람 명의의 기부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기부를 하거나 자기명의를 다른 사람이 정치자금을 기부하면서 사용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또 타인명의를 기부임을 알면서 이를 수령하여서도 안된다.³¹⁾

5) 현금기부

어떤 후보자에게 또는 그 후보자를 위하여 그 후보자의 연방직에 대한 지명 또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100달러를 초과하는 미국화폐 또는 외국 화폐를 기부하여서는 안된다.³²⁾

6) 미성년자의 기부 금지

17세 이하의 자에게 정당위원회나 후보자는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받을 수 없다.³³⁾

4. 소프트머니의 금지

1) 의 의

소프트머니³⁴⁾는 연방선거운동법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않는 모든 정치자금을 말한다. 2002년 개정 전까지 소프트머니는 개인, 기업, 노조에 대하여 제한없이 기부될 수 있었던 바, 정당 소프트머니³⁵⁾, 기업과 노조의 소프트

31) §441f.

32) §441g.

33) 선거개혁법 §324.

34) 선거위원회는 소프트머니를 비연방자금이라고도 한다. 실제로 연방선거운동개혁법에서도 1편과 4편의 제목에서만 소프트머니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위원회가 어떤 경우에는 코멘트하면서 소프트머니라는 용어를 더 선호하는 것도 볼 수 있다. 자세한 것은, Federal Register Part II Federal Election Commission 11 CFR Parts 100, et al., Prohibited and Excessive Contributions: Non-Federal Funds or Soft Money; Final Rule, 2002.7.29.의 용어편을 참조.

35) 정당의 소프트머니에 대하여는 현황에 대한 분석을 해 둔 자료들이 인터넷으로 공개된 것이 많다. 그 중에서 <http://www.opensecrets.org/softmoney/softglance.asp> 등 참조.

머니³⁶⁾, 정책선전에 대한 소프트머니로 나뉜다.

소프트머니에 대한 금지는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온 편법적인 정치자금의 지원과 정경유착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의원과 이익단체들의 반발이 있어서 이 소프트머니에 대한 규제는 98년 말 McCain-Feingold법안이 상원에서 통과하지 못하는 등 여러 번 시도된 끝에, 2002년 선거운동개혁법의 제정으로 처음으로 법률로 통과³⁷⁾된 것이다.

2) 일반규정

정당의 전국위원회나 당해 위원회를 위하여 일하는 공직자, 기관 그리고 당해위원회에 의하여 직·간접으로 창설되거나 운영되거나 지시를 받는 단체는 연방선거운동법에 의하여 그 신고요건이 정해지고 금지되거나 제한이 되는 대상이 아닌 여하한 금전이나 금품 즉 소프트머니를 모집하거나 수수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 기부받거나 후원받거나 이전하거나 지출하여서는 안된다³⁸⁾. 다만, 다음의 예외가 있다. 즉, 주나 지역의 선거와 관련된 후보자나 공직자의 자금모금은 출처의 제한과 FECA의 규정을 준수하여 즉, 개인은 1,000달러, 정치위원회는 5,000달러의 상한 내에서 기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직자나 후보자는 주나 지역의 투표자등록이나 투표독려활동을 위한 소프트머니를 모금할 수 없다. 다만 그 행사에 참석은 할 수 있다. 또한 내국세법 501(c)와 527에 의한 비영리의 투표독려활동조직을 위한 자

36) *Communication Workers of America v. Beck*, 487 U.S.735(1988)에서 연방대법원은 노조는 단체협상과 무관한 어떤 활동에 대한 에이전시 샵 협약상 비노조원인 근로자의 회비로부터 나온 자금을 그 근로자가 반대하는 한 지출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것은 근로자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정치활동에 노조가 지출을 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찾게 되는 한편, 노조는 소프트머니자금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연방선거개혁법의 노조의 소프트머니에 대한 규제는 이 판결을 법률조문으로 만든 것이다(L. Paige Whitaker, *Campaign Finance: Constitutional and Legal Issues of Soft Money*, CRS Issue Brief for Congress, American Law Division, 2002. 4. 16., 3p.)

37) 그러나 2001년 상정되어 2002년 발효된 Public Law 107-155 즉, 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는 현재 AFL-CIO, 미국시민자유협회와 전국총기협회에 의하여, 정책광고에 대한 제한으로서 언론의 자유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이라 하여 피소되어 있다. 또한 공화당전국위원회가 소프트머니기부에 대한 금지를 철폐할 것을 소송으로 주장중이다(<http://www.opensecrets.org/payback/issue.asp?issueid=CFR>).

38) 선거운동개혁법 §323.

금모금은 허용되며, 그 권유가 연방선거활동에 특정된 것이 아닌 한 비영리 활동에 관해서는 제한없이 모금할 수 있다.

3) 정책광고에 대한 소프트머니의 문제

이러한 일반적인 규제 중에서도 정책광고에 대한 소프트머니에 대한 규제는 연방헌법수정 제1조 즉,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소송중인 사안인데, 정책광고에 대한 소프트머니라는 것은 어떤 정책에 대한 옹호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모금된 것을 말한다. 정책의 옹호는 일반적으로 공공에 대하여 어떤 사안의 정책을 표방하는 후보자에 대한 선호와 비선호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영리거나 비영리의 단체가 지출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최근들어 더욱 연방선거에서 선호되는 모금 형태이다. 하급법원들의 지배적인 견해는 연방대법원의 선례가 명시적으로 신원이 명확한 후보자에 대한 선호나 비선호를 표명하는 그러한 커뮤니케이션만이 합헌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명시적으로 선호를 표명하는”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커뮤니케이션은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광고에 대한 소프트머니는 합헌이라는 것이다³⁹⁾.

Buckley v. Valeo⁴⁰⁾에서 연방대법원은 선거운동자금제한이 “신원이 분명한 연방직 후보자의 선호나 비선호를 분명하게 표명하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연방직후보자에 대한 선호나 비선호의 말을 하지 아니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연방선거법의 적용범주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또 Federal Election Commission v. Massachusetts Citizens for Life, Inc.,(MCFL)⁴¹⁾의 판결에서, 어떤 인쇄물이 특정한 후보자의 설명과 사진을 실으면서 그의 정책에 대한 선호를 밝힌 것이라면 그것은 후보자에 대한 선호광고로서 정책선호광고라고 할 수 없고, 연방선거운동법의 제한대상이 된다고 하면서⁴²⁾, 정책선호와 후

39) L. Paige Whitaker, *Campaign Finance: Constitutional and Legal Issues of Soft Money*, CRS Issue Brief for Congress, American Law Division, 2002.4.16., 4p 이하.

40) 424 U.S. 1(1976).

41) 479 U.S. 238(1986).

42) Id. 249-250.

보자선호의 표명에 대한 구분을 하고 있다. 정책광고와 아닌 것의 구분에 대한 판례의 기준은 FEC v. Furgatch⁴³⁾의 것을 참고로 할 만하다. 첫째, 가장 명확하고 분명한 언어로 표현된 것이 아닐지라도, 그 메시지가 오류의 우려나 모호함이 없이 한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표명’하는 것이 된다. 둘째, 그 표명은 행위를 위한 분명한 지향이 있을 때에만 ‘옹호’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어떤 행위가 옹호되는지가 분명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인데, 이 판결의 내용은 1995년 연방선거위원회가 “옹호를 명시함”의 정의를 규칙에 정하면서 반영⁴⁴⁾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에 대해서 연방하급법원들은 더 좁게 해석하는 경향⁴⁵⁾을 보이게 되고, 따라서 “정책광고”의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되었다. 최근 2002년 6월 14일에는 Vermont Right to Life Committee v. Sorrell⁴⁶⁾ 사건에서 결과적으로 정책광고에 대한 공개와 보고를 규정하는 주선거법이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하여 위헌이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선거위원회는, 11 CFR 100.22(b)의 정의가 합헌이라고 보아 “옹호를 표명함”의 정의규정에 대한 개정을 거부하였다.⁴⁷⁾ 정책광고에 대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제가 이번 개정의 내용인 것에 대하여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헌소송이 계류중이다.

5. 위법적인 기부에 대한 조치

정치위원회의 회계원은 모든 기부금이 적법하다는 것을 확인할 책임을 진다.⁴⁸⁾ 회계원은 그 기부금이 위법이라는 의심이 들 때는 그 수령으로부터 10일이내에 기부자에게 반환하거나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⁴⁹⁾

43) 807 F. 2d857(9th Cir. 1987), 864.

44) 60 Fed. Reg. 35292(11C.F.R. 100.22).

45) Maine Right to Life Committee v. FEC, 914 F. Supp. 8., 1996. 이 판례에서 구법원은 FEC가 “합리적인 자”기준을 “옹호의 표명”에 포함시킨 것은 월권한 것이라고 하였다. 법원은 논고하기를, 그러한 기준은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는 영역인 정책광고에 대한 침해라고 하였다.(12면)

46) 216 F. 3d 264 2d Cir. 2000.

47) 63 Fed. Reg. 8363(1998. 2. 19).

48) 11 CFR 103.3(b).

49) 11 CFR 103.3(a).

법정된 상한을 초과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이를 공탁하고, 개인기부자에게 초과부분을 공조한 기부자에게 되돌리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기부가 후보자의 위원회에 행해진 것이면, 기부자가 아직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다른선거에 초과부분을 기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 초과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는 기부가 더 이상 한도초과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재교부서를 수령할 수 있다. 또는 기부자에게 초과부분을 반환하는 방법도 있다.⁵⁰⁾

특정한 선거를 위한 기부가 선거에 관한 위원회의 미해결의 순수부채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순수부채를 초과하는 기부는 위법한 기부로 보아 위와 같이 조치한다.⁵¹⁾

정치위원회는 또한 금지된 출처의 기부일 수 있는 자금을 반환하는 대신 공탁하기로 결정하면, 반드시 그 기부자에게 그 출연이 적법하다는 증거를 최소한 하나 이상 요구하여야 한다. 기부자의 적법성을 결정할 수 없으면, 위원회는 반드시 기부자에게 그 수령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⁵²⁾ 만일 위원회가 공탁될 때 이용할 수 없었던 증거에 의하여 금지된 출처에 의한다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⁵³⁾

제 5 절 정치자금의 지출

1. 독립지출

1) 독립지출의 의미

독립지출이란 신원이 분명한 후보자에 대한 선거에서 그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명시한 선거매체에 대한 지출로서 후보자의 선거와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⁵⁴⁾을 말한다. 이 독립지출은 기부금과는 달리 제한을 받지 않

50) 11 CFR 103.3(b)(3).

51) 11 CFR 110.1(b)(3)(i) and 103.3(b)(3).

52) 11 CFR 103.3(b)(1).

53) 11 CFR 103.3(b)(2).

54) title 11 of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11 CFR). Advisory

는다는 점에서 다른 기부금과 다르다. 다만 그 지출이 독립지출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즉, 109.1(a)상의 후보자, 후보자의 기관, 수권위원회등과 공조하거나 그 승인을 받거나 혹은 권유나 요구 또는 어떤 협의 등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2) 독립지출의 주체

일반적으로, 연방선거와 관련하여 기부를 할 수 있는 개인, 그룹, 위원회는 독립지출을 할 수 있다. 연방선거와 관련하여 기부를 할 수 없는 주체 즉, 기업, 노조, 연방정부와 계약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기업은 역시 독립지출도 할 수 없다. 다만 단 한가지 예외가 있다.

연방대법원은 *Federal Election Commission v. Massachusetts Citizens for Life, Inc. (MCFL)*⁵⁵⁾ 에서 그 예외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인 MCFL은 다음의 세가지 이유로 독립지출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첫째, 당해 지출이 정치적인 사상을 촉진할 목적을 표현하기 위하여 형성된 것이지 영리활동으로 한 것이 아니다. 둘째, 이 기업은 그 수입이나 자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주주나 기타 회원이 없다. 셋째, 그 설립이 기업이나 노조에 의하지 않았고 또한 그러한 단체로부터 기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 외에도 연방대법원은 MCFL의 규모가 작은 점과 공식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도 들고 있다.

3) 독립지출이 아닌 것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명확하게 표명하는 매체에 대한 어떤 지출이 이하의 조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일종의 기부가 되는 것이지 독립지출이라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은 후보자의 선거에 대한 기부의 한도를 적용하게 될 것이다.⁵⁶⁾

Opinions (AOs) issued by the Commission.

55) 479 U.S. 238 (1986).

56) 109.1(c).

① 후보자의 선거에 합류

후보자 선거에 협조하거나 조언을 하는 중에 이루어진 지출, 후보나 그 기관 등의 요구, 권유, 사전 동의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지출은 일종의 기부인 것이지 독립지출이라고 할 수 없다.⁵⁷⁾

② 선거고용인에 의한 지시

후보자의 이익을 위하여 후보자의 위원회의 전·현직 관리자나 고용인에 의한 지시에 따라 혹은 선거운동으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보상을 받는 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루어지는 지출은 독립지출로 보지 않는다.⁵⁸⁾

③ 일반 매각인의 사용

후보자의 지지나 반대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에 관하여 이루어진 지출의 독립성은, 그 매체를 이용한 사람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동일한 조언자나 매각인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로 협조한 것이 되어 상실한 것으로 본다.⁵⁹⁾

④ 후보자의 이익을 위한 권유

후보자의 이익을 위한 권유를 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지출은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자가 후보자의 위원회에 대하여 돈을 모으는 경우에는 일종의 기부라고 본다.⁶⁰⁾

⑤ 후보자 준비 물품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산출되고 준비된 선거운동물품을 배포하거나 재발행하기 위한 지출은 일종의 기부로 보고, 독립지출이 아니다.⁶¹⁾

⑥ 사전 기부는 독립성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독립지출을 하는 개인은 특정 후보자에게 하는 일종의 기부를 한 일이 있다면 동일한 후보에 대하여 독립지출을 하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후보의 예비선거에서 복수후보자위원회가 인력이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

57) 109.1(b)(4)(i) and (c). 참조 AO 198430.

58) 109.1(b)(4)(i)(B), AOs 1983-26, 1980-116, 1979-80.

59) AOs 1982-20, 1979-80.

60) AO 1980-46.

61) 109.1(d).

에, 그 위원회는 후보자의 선거전략, 계획, 필요사항 등을 직접 접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보통선거기간 동안 위원회에 의한 지출은 독립성을 가진 것이라고 간주될 수 없게 된다.⁶²⁾

4) 공지요건

독립지출은 명백하고 인지하기 쉬운 공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공지는 반드시 독립지출을 위하여 지급을 한 개인이나 위원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하고, 후보자나 수권위원회에 의하여 권리를 받은 바 없음을 선언하여야 한다.⁶³⁾

5) 보고요건

① 정치위원회

연방에 등록된 정치위원회는 FEC Form 3X의 Schedule E에 독립지출을 보고하여야 한다. 정치위원회는 200달러를 초과하는 각 독립지출 또는 연간 한 후보에 대하여 독립지출된 총액이 200달러를 넘는 건에 대하여 항목을 작성하여야 한다.⁶⁴⁾

② 기타의 자

기타의 자(개인이나 단체)는 FEC에 대하여 최초보고시기의 마지막에 총 250달러가 넘는 독립지출을 Form 5의 형식으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동년에 추가적으로 독립지출이 있으면 그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⁶⁵⁾

③ 인증

정치위원회에 의하여 사용되는 Schedule E와 기타의 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Form 5 는 독립기준을 준수하였다는 인증이 필요하다. 두 문서는 공증을 받아야 한다.⁶⁶⁾

62) AO 1984-30.

63) 109.3; 110.11(a)(1)(iii).

64) 104.3(b)(3)(vii), 104.4(a).

65) 109.2(a).

66) 104.3(b)(3)(vii)(B), 109.2(a)(1).

④ 24시간 선거전 보고서

선거일전 20일째 날의 전에 행해진 24시간 이상동안의 100달러 이상의 독립지출은 그 지출이 있는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상원의 사무총장이나 연방선거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⁶⁷⁾

6) 독립지출을 한 위원회에 대한 기부

독립지출을 한 위원회에 대한 기부는 그 위원회에 대한 기부자의 상한한계에 따른다. 다만, 기부자가 자신의 위원회에 대한 기부의 실제부분이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지출될 것임을 안다면, 그 기부자는 대신 그 후보자에 관한 선거전 한계에 있어 불리해지게 된다.⁶⁸⁾

2. 대통령 후보자의 경비지출범위

내국세법 제9003조와 제9033조에 따라 지급적격을 가지는 대통령선거후보자는 선거지명운동에 관하여 10,000,000달러를 지출할 수 있는데, 단, 1개월 동안 지출총액이 어느 주의 유권자수에 16센트를 곱한 금액이나 200,000달러 중에서 다액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그리고 선거운동의 경우에는 20,000,000달러까지 지출할 수 있다. 부통령직을 위한 러닝메이트나 그를 위하여 행한 지출도 대통령직선거를 위한 지출로 본다. 또한 지출을 행할 목적으로 조직된 후보자의 후원회 또는 그 대리인이나 후보자가 지출을 허가하거나 요청한 자나 후원회 또는 대리인의 지출도 모두 대통령선거운동의 지출로 본다.⁶⁹⁾ 그리고 이 액수들은 노동부노동통계국의 물가조사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전년도 12개월간의 물가지수와 기준연도의 물가지수와 의 변동률의 차이를 선거위원회에 증명하고 연방등록에 공표하여 이를 반영한다.⁷⁰⁾

67) 104.4 and 109.2(b).

68) 110.1(h).

69) §441a(b).

70) §441a(c).

3. 연방직 선거와 관련한 정치위원회의 경비지출범위

정당의 전국위원회는 그 정당에 가입된 미합중국대통령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합중국 유권자수⁷¹⁾에 2센트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다. 정당의 전국위원회 또는 주요위원회, 하부위원회는 그 당 소속의 후보자의 총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개주에서 유권자수에 2센트를 곱한 금액과 20,000달러 중 다액을 초과하는 지출을 할 수 없다. 하원의원이나 준주나 보호령의 대표자선거에 관하여는 10,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⁷²⁾

4. 국립은행 · 기업 · 노동조합에 의한 지출

국립은행 · 기업 · 노동조합의 지출에 관한 규제는 그 기부에 관한 규제와 같다.⁷³⁾

5. 선거운동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정치자금의 공개

선거운동 커뮤니케이션이라 함은 총선 · 특별선거 · 결선투표 등의 60일전부터 예비선거, 선호투표 및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는 정당의 전당대회나 지방대회의 경우에는 30일전부터 그 후보자가 출마하는 공직을 위하여 신원이 분명한 후보자를 지칭하여 행하는 방송 · 케이블 · 위성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을 말한다. 선거운동매체를 위하여 직접 지출하도록 한 해 총 10,000달러 이상을 지급한 자는 누구나 이하의 정보를 포함한 진술서를 연방선거위원회에 각 공개일⁷⁴⁾의 24시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진술에 위법이 있으면

71) 추정유권자수는 매년 상무장관이 미합중국 전체와 각 주 및 각 의회의원 선거구의 추정유권자수를 증명일자 직후의 7월1일자로 증명하여 연방등록에 공표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권자라 함은 만18세이상의 거주주민을 말한다. (§441a(e) 참조)

72) §441a(d).

73) §441b(a).

74) §434 (f)(4) 공개일-이 조항의 목적상 '공개일'이라 함은-

- (A) 한 사람이 선거운동매체를 생산하거나 발송하는 직접비용의 지급을 총 10,000달러를 초과하여 한 연도 중 첫날
- (B) 그러한 연도의 가장최근 공개일이래 한 사람이 선거운동매체를 생산하거나 발송하는 직접비용의 지급을 총 10,000달러를 초과하여 한 연도 중 다른 날

형벌과 위증죄로 벌한다.

지급한 자의 신원, 그 활동과 지출의 지시를 같이 한 자, 장부관리자, 회계책임자 등의 신원, 지급한 자가 개인이 아닐 경우는 그 법인의 주된 영업소소재지, 진술서에 기재된 기간동안 200달러 이상을 각각 지급한 경우 그 액수와 그러한 지급을 받은 자의 신원, 선거운동매체가 이용된 선거와 후보자의 성명, 그러한 지급이 분리된 은행계좌로부터 된 것이고 그 은행계좌가 미국시민이거나 국적을 가졌거나 혹은 적법한 영주권을 가진 개인에 의하여 단독으로 기부된 기금으로 구성된 것으로 선거운동매체에 직접 그 금액이 사용된 경우에는 전년도에 첫날로 시작하여 공개일에 끝나는 기간동안 총 1,000달러 이상을 기부한 모든 기부자의 성명과 주소 (다만 그러한 분리된 계좌의 기금의 사용에 대하여 선거운동매체외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이외의 규정되지 않은 자금으로부터 된 것일 때에는 전년도에 첫날로 시작하여 공개일에 끝나는 기간동안 총 1,000달러 이상을 기부한 모든 기부자의 성명과 주소 등이 그 보고서의 내용이 된다.⁷⁵⁾

제 6 절 보고서의 공개

이 보고서들은 연방선거위원회(FEC)에 제출하고, 그 내용에는 법률이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그 비용이 누구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인지 각 후보자의 성명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연방선거위원회는 취임위원회에 의하여 제출된 모든 보고서를 위원회 사무실과 인터넷에서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 보고서를 받은 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조치하여야 한다.⁷⁶⁾

75) §434(f).

76) §434(g), (h).

제 3 장 미국 내국세법상 정치자금제도

제 1 절 개 요

대통령의 선거에 관련한 정치자금의 조성과 국고보조 등에 관해서는 내국세법이 이를 정하고 있다. 제95장을 대통령선거운동기금법이라고도 하고, 제96장을 대통령예비선거보조지출계정법이라고도 한다. 이하에서는 내국세법상의 정치자금제도에 관하여 정리한다.

제 2 절 대통령선거운동자금

1. 국고보조금 일반

1) 국고보조금의 연혁⁷⁷⁾

연방선거위원회는 1976년 처음으로 국고보조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예비선거와 본선거에서 수급자격을 갖춘 대통령후보자들은 연방자금을 사용하였고, 정당들은 지명대회를 위하여 국고보조금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대통령선거후보자에 대한 국고지원에 관한 입법은 이미 1907년에 제안이 된 적이 있다. 즉 연두교서에서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 개인의 기부금을 금지하고 연방선거에서 국고지원을 제안한 것이다.

1966년에 의회는 처음으로 국고지원입법을 하였는데 1년 뒤로 유예되었고, 이 법은 미국재무성자금을 대통령일반선거에서 후보자의 정당에 대한 지급을 통하여 후보자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 자금은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연방소득세에서 환급받는 금전 중에서 얼마를 내는 것으로 충당하였다. 보조금방식은 자격있는 후보자에게 이용가능한 공공자금의 액수를 정하였다.

1971년 의회는 비슷한 조항을 제정하여 오늘날 유효한 공공자금의 기초를 만들었다. 1971년 내국세법에 의하면 후보자는 정당보다도 달러반환금

77) <http://www.fec.gov/pages/pubfund>.

기부에 의하여 조성된 공공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동법은 이러한 자금을 지원받은 후보자는 개인의 기부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시키는 제한을 마련하였다.

이에 병행하여 의회는 1971년 연방선거운동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연방직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에 관련된 기부금과 지출에 대한 완전하고 자세한 보고서를 요구하고, 대통령후보자에게도 이를 규정하였다. 1974년 연방선거운동법개정에서는 오늘날의 대통령국고보조에 관한 시스템에 완성되었다. 그러한 개정은 대통령 예비선거와 후보지명대회에도 국고를 보조하도록 확대하였다. 그리고 1976년 의회는 이에 약간의 수정을 하고 1979년과 1984년에는 그 자금제한을 상향조정하였다.⁷⁸⁾

2) 보조금의 수급자격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한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정당대표위원회는 적정선거비용에 관하여 연방선거위원회가 요구하는 증거를 확보하고 동위원회에 이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하고, 동위원회가 요구하는 기록, 장부, 기타 정보를 보유하고 이를 동위원회에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또한 동위원회의 감사와 조사에 응하여야 하며 반납이 요구되는 액수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러한 동의 등의 요건을 갖추면 후보자는 보조금을 수급할 권리를 가지게 되며, 당해 후보자에게 적용되는 지출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예비선거 후보자는 반드시 추가적으로 “한계 요건”을 20개 이상의 주에서 각각 5,000달러 이상을 모금(“Primary Matching Payment”)할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한 후보자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 해의 1월 1일부터 이 모금을 위한 개인 기부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기부금은 대통령 선거일이 있는 연도의 1월 1일이후까지는 조성되지 않는다.

또한 대통령직에 입후보하는 대정당, 소정당 또는 신정당의 후보자는 연방선거위원회에 다음을 문서로 증명하여야 하며, 이는 위증죄의 적용대상이 된다. 즉, 당해 후보자는 그의 개인적 자금 또는 그의 가족의 개인적 자금으

78) Public Law 94-283(1976년 개정), 96-187(1979년 개정), 98-355(1984년 개정).

로부터 그의 대통령선거운동을 위하여 그 정을 알면서 총액 5만달러를 초과하는 지출을 하지 아니할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항의 목적상 부통령직의 후보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개인자금으로부터의 지출은 이러한 정당의 대통령직 입후보자에 의한 지출로 본다.⁷⁹⁾

3) 연방선거위원회에 의한 인증

1차적 인증으로서, 미국의 대통령 및 부통령직입부보를 위한 정당의 후보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 10일 이내에 연방선거위원회는 제9006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있는 후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위해서 제90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전액을 재무장관에게 인증통보하여야 한다. 연방선거위원회의 1차적 인증과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동위원회가 행한 모든 결정은, 동 결정이 제90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위원회에 의한 조사와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및 제90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국적이며 결정적인 처분이 된다.⁸⁰⁾

4) 선거운동기금의 설치

미국 재무성의 장부에 “대통령선거운동기금”으로 명명되는 특별기금을 설치한다. 재무장관은, 수시로, 제60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당해 기금에 충당할 것으로 지정된(직전 대통령선거에 따라 지정) 액수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액수를 당해 기금에 이입하여야 한다. 별도로 세출예산이 계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중에 지정된 액수와 동일한 액수만큼 재무성의 일반예산으로부터 당해 기금에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이 이철되며, 이러한 액수는 회계연도의 제한없이 당해 기금에 계속된다.

정당의 수급자격있는 후보자에 대한 보조를 위한 연방선거위원회로부터 인증통보를 받은 경우, 재무장관은 당해 후보자에 대하여 동위원회가 인증한 액수를 당해 기금으로부터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후보자들에 대하여

79) 내국세법 §9004(d).

80) §9005.

지급된 액수는 당해 후보자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

정당의 수급자격있는 후보자에 대한보조를 위한 연방선거위원회의 인증이 있는 때에, 재무장관이 당해 기금의 자금이 모든 정당의 수급자격있는 후보자들에 대한 보조금의 전액지급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하거나 부족할 수도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재무장관은 각 정당의 수급자격있는 후보자들이 그들의 권리분의 총액에 비례하는 몫(pro rata share)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액수만큼을 보조금 지급시에 유보하여야 한다. 앞 문장의 규정을 이유로 유보된 액수는, 당해 액수가 유보된 모든 수급자격있는 후보자들에게 이러한 액수 또는 그 일부분을 지급할 만한 충분한 자금이 기금에 확보되어 있다고 재무장관이 결정한 때에 지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정당의 수급자격있는 후보자들이 받아야 하는 권리분의 전액지급을 만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기금에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유보된 액수는 각 정당의 수급자격있는 후보자들이 그들의 권리분의 총액에 비례하는 몫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보조금 지급을 위한 충분한 자금이 기금에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재무장관이 결정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든지, 이러한 보조금지급을 행할 목적을 위하여 기타의 다른 자금원(source)으로부터 자금을 전용하여서는 안된다.⁸¹⁾

5) 연방선거위원회의 감사

대통령 선거 후 연방선거위원회는 각 정당의 대통령 및 부통령후보자의 적정선거운동비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고 감사하여야 한다. 만일 보조금이 초과하여 지급된 경우에는 연방선거위원회가 당해 후보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고 당해 후보자는 재무장관에게 초과부분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보는 선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할 수 없다. 그리고 모든 반환금은 재무장관에 의하여 재무부의 일반기금으로 예탁된다.⁸²⁾

81) §9006.

82) §9007.

2. 대통령 후보지명대회를 위한 보조금

1) 계정의 설치

재무장관은 국고보조금계정에 별도의 계정을 마련하여 대정당 및 소정당의 전국위원회를 위한 자금을 준비하여야 한다. 보조할 액수는 재무장관이 법률에 의하여 계산하여 정하지만, 대정당의 경우는 총 40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고, 소정당의 경우는 대정당의 전국위원회가 받을 보조금 액수에 당해 소정당의 후보자가 직전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후보자로 얻은 총 득표수가 대정당들의 대통령후보자들이 직전 대통령선거에서 얻은 득표수의 평균에 대비되는 비율에 상응한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정해진 금액은 연방선거위원회의 인증통보를 받으면 재무장관이 각 정당의 전국위원회에 대하여 지급하게 된다. 이 보조금들은 당해 전국위원회가 사용한다.⁸³⁾

2) 기금의 사용 및 지출한도

이러한 보조금은 대통령후보자지명대회에 참가하는 후보자가 대의원의 경비조달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보조금을 받는 전국위원회를 위하여 대통령후보자지명대회에 관련하여 소요되는 경비와 이러한 경비를 지면하기 위하여 그 수입금이 사용된 대부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기타 이러한 경비의 지면을 위하여 사용된 기금을 회복시키기 위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⁸⁴⁾

그리고 보조금의 지출상한을 정하고 있는데, 대정당의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가 받는 보조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통령후보자지명대회와 관련하여 지출할 수 없다. 또 소정당의 전국위원회는 그 총액으로 대정당의 전국위원회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지출을 대통령후보자지명대회와 관련하여 행할 수 없다. 다만, 연방선거위원회는 대정당이나 소정당의 전국위원회가 그 총액에 있어서 정립된 한도액을 초과하는 지출을 허용

83) §9008.

84) §9008(c).

할 수 있는데, 비정상적이고 예견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하여 대통령후보 지명대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외적인 지출이 필요하다고 연방선거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에만 이를 허용한다.⁸⁵⁾

또한 대통령후보지명대회가 종료되고 당해 정당의 전국위원회가 보조금을 사용하고 잔여금이 생기면, 재무장관은 당해 잔여금을 기금에 이입한다. 그리고 대정당이나 소정당은 연방선거위원회가 요구하는 서식, 방법, 시기에 따라 당해 정당의 전국위원회 계정에 관한 서류를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⁸⁶⁾

3. 의회에 대한 보고

연방선거위원회는 매회의 대통령선거 후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완전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상원과 하원에 제출한다. 그 보고서에는 각 정당의 후보자와 수권위원회에 의하여 소요된 적정선거운동비용을 세부항목별로 정리한 것과 각 정당의 후보자에 대하여 연방선거위원회가 인증한 보조금 액수, 반환금 액수, 대통령선거후보자지명대회와 관련하여 전국위원회가 지출한 경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⁸⁷⁾

그리고 연방선거위원회가 어떤 규칙등을 발한 경우에는 사전에 당해 규정이나 규칙에 관한 이유서를 상원과 하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의회의 어느 한 원도 이유서를 받은 지 30입법일 이내에 부동의를 하지 않으면 연방선거위원회는 그 규칙이나 규정을 발령할 수 있지만 어느 한 원이라도 이에 부동의한다면 이를 발할 수 없다.⁸⁸⁾

4. 사법심사

연방선거위원회가 한 결정, 인증, 기타 조치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은 콜롬비아특별구연방항소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소의 제기는 대

85) §9008(d).

86) §9008(f), (g).

87) §9009(a) 참조.

88) §9009.

상 조치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연방대법원에 한다.⁸⁹⁾

제 3 절 대통령예비선거보조지출계정

1. 대통령예비선거보조지출계정의 설치

예비선거(primary election)란, 결선투표·지명총회를 포함하여 정당의 지명전당대회에 파견한 대표의 선출을 위한 선거 또는 미국대통령직선거후보자지명에 있어서 우선권을 표시하기 위한 선거를 말한다. 재정장관은 내국세법 제9006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운동기금의 계정 외에 별도로 대통령예비선거보조지출계정을 마련하여야 한다.⁹⁰⁾

2. 보조금수급자격

보조금을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적정선거운동비용에 관하여 선거위원회가 요구하는 증거를 수집·제출하고 선거위원회가 요구하는 기록·장부·기타 자료를 보관하고 이를 제출하는 것, 선거위원회의 감사와 조사를 받고 또한 반환금을 반환할 것에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한다.⁹¹⁾ 또한 선거위원회에 후보자는 적정선거운동비용이상을 지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후보자가 대통령직의 입후보를 위하여 정당의 지명을 구하는 중이라는 점, 적어도 20개주의 주민들로부터 받은 기부금이 각각 총 5,000달러를 넘었다는 점, 그리고 그 기부금이 개인당 250달러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후보자가 후보자가 되기를 포기하거나 계속된 두 번째 예비선거에서 그가 실제로 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위원회에 증명하지 않고 투표용지에 이름을 표시하도록 한 경우에 같은 정당의 모든 대통령직 후보자에 대한 총투표수 중에 10퍼센트 미만을 획득하고 그 날로부터 30일이 경과

89) §9011.

90) §9037.

91) §9033.

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이 때 투표율은 예비선거가 한 주 이상에서 같은 날 실시되는 경우에 후보자는 그가 최고의 투표율을 받은 날에 행해진 예비선거에서 받은 투표율을 그가 받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10 퍼센트미만을 득표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였던 자라도 그 다음에 행해진 예비선거에서 총투표 중 20퍼센트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지불을 다시 받을 수 있다.⁹²⁾

3. 보조금수령적격후보자의 권리

보조금을 받을 자격을 가진 모든 후보자는 당해후보자가 지명을 얻고자 하는 대통령선거연도의 직전 연도의 개시 이후에 당해 후보자나 그 수권위원회가 받은 각각의 기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개인당 250달러를 초과하여 이루어진 기부금은 제외된다. 그리고 보조받을 수 있는 총액은 연방선거운동법 제441a(b)(A)에 따라 적용되는 지출한도의 50%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⁹³⁾

4. 적정선거운동비용의 한도

후보자는 그 정을 알면서 고의로 연방선거운동법 제441a(b)(A)의 지출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대통령후보자 지명을 얻기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고의로 그의 개인자금 또는 가족의 개인 자금으로부터 총 50,000달러를 초과하여 지출하여서는 안된다.⁹⁴⁾

5. 조사와 반환

각각의 보조지출기간⁹⁵⁾이 경과한 후에 선거위원회는 보조금을 수령한 각 후보자와 그 수권위원회의 적정선거운동비용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감사

92) §9033.

93) §9034.

94) §9035.

95)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연도로부터 시작하여 후보자가 당의 지명을 구하는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직 후보자를 지명한 날까지를 말한다(§9032(6)).

를 하여야 한다. 보조지출계정으로부터 후보자에게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가 후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초과하였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사실을 후보자에게 통지하고 후보자는 초과액을 재경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후보자에게 지급한 보조금이 유용되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유용된 액수를 후보자에게 통지하고 유용된 액수의 금액을 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⁹⁶⁾

6. 보고와 규칙

선거위원회는 각 보조지출기간의 경과 후에 신속하게 회기 중에 상원과 하원에 완결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각 정당후보자 및 수권위원회가 부담한 적정선거운동비용, 선거위원회가 각 후보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증명한 금액, 반환액과 반환요구이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선거위원회는 이 보조금과 관련한 규칙이나 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데 이를 제정하기 전에 이를 상·하원에 당해 규칙과 명령, 상세한 설명과 입법취지등을 기재한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수령한 각 원이 그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위원회는 이 명령이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⁹⁷⁾

7. 사법심사

이 보조금에 관련한 선거위원회의 처분 등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콜럼비아특별구 연방항소법원에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⁹⁸⁾

96) §9038.

97) §9039.

98) §9041.

제 4 장 미국정치자금제도의 평가

미국의 정치자금제도에 관하여 지적되는 문제점은 대개 2002년 선거운동 개혁법에 의하여 반영이 되기도 하였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여전히 전하다. 예를 들자면 후보자들간의 자금이 불균등하게 배분되는 것, 강력한 정치자금규제기관이 부재한다는 점, 정치자금정보공개에서의 문제점 등이 여전히 개선의 대상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⁹⁹⁾을 짚어보기로 한다.

제 1 절 정치자금분배의 불균등

미국에서는 특이하게도 대통령만이 재임에 관한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의 경우는 재선에 관한 제한이 없고 또한 실제로 재임성공률이 상당히 높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정치자금의 모금에서도 현역의원이 상당한 이점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다.

99) 지적되는 문제점 중에 여기서 다루지 못하는 중요한 쟁점으로는, 정치소외계층과 정치자금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여성과 정치자금기부에 관하여는 Douglas Weber, *SEX, MONEY AND POLITICS : The Gender Gap in Campaign Contributions*, 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 Study. <http://www.opensecrets.org/pubs/gender/index.asp>를 참조.

법을 중립적이라고들 말하지만, 중립을 지향한다고 하는 편이 더 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법이 어떤 소외계층을 고려하지 않거나 입법취지와는 무관하게 소외계층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치자금제도의 문제도 그 예외가 아니다. 기부나 지출의 제한이나 규제 등은 그 자체로는 성에 대한 아무런 함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자금제도가 운영되는 실재를 보면, 여성의 정치자금기부의 행태가 남성과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성의 정치자금기부 행태의 특성을 정치에 참여한 지 100년도 안된 계층의 일시적이고 과도기적인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입법적인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는 것은 여타 소외계층에 대한 고려를 정치자금에 관한 입법에 반영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논의할만한 깊이를 갖추지 못한 까닭에 다른 연구에 미룬다.

<표 1> 2002년 상원의원 선거연도¹⁰⁰⁾

후보자유형	총모금액	인 원	1인당 평균모금액
현역 의원	\$170,788,545	32	\$5,337,142
비현역 후보자	\$57,050,364	64	\$891,412
현직의원이 출마하지 않는 공석의 후임선거	\$87,216,537	40	\$2,180,413
총 계	\$315,055,446	136	\$2,316,584

<표 2> 2002년 하원의원 선거연도¹⁰¹⁾

후보자유형	총모금액	인 원	1인당 평균모금액
현역 의원	\$343,907,930	422	\$814,948
비현역 후보자	\$81,118,748	473	\$171,498
현직의원이 출마하지 않는 공석의 후임선거	\$143,247,285	380	\$376,967
총 계	\$568,273,963	1,275	\$445,705

위의 두 표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로 현역의원이 상원이나 하원이나 모두 현역의원이 아닌 후보들에 비하여 비교도 안될 정도로 많은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거의 결과도 2002년 선거에서 상원은 85%가, 하원은 98%가 재선에 성공하였던 바이다. 거액의 기부금에 제한을 받고 소액다수의 기부자와 정치활동위원회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된 상황은 현직의

100) 2002년 12월 3일 목요일 FEC가 배포한 자료에 근거. 보고서를 제출한 모든 후보가 포함됨.

<http://www.opensecrets.org/overview/incumbts.asp?cycle=2002>의
Overview 2002 Cycle, Incumbent Advantage 편의 표.

Election

101) 上同.

원들에게 보다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다.¹⁰²⁾ 현역의원이 유권자들에게 인지에 있어서도 유리하며 이것이 다시 정치자금의 형성에 유리하게 되고 또 이 정치자금이 재선에 유리하게 작용함으로써 경쟁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뿐 아니라 새로운 세력이나 인물이 의회에 진입하는 벽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제 2 절 연방선거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연방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재 정치자금에 관한 기관으로서 감독권, 법률집행권, 보고서의 수령과 공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그 구성에 있어서나 권한의 행사에 있어서나 철저하게 의회의 감독을 받으며 그 규칙이나 명령의 제정도 의회의 간섭을 받는 점에서 독립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의회도 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는 기관인 만큼 정치자금을 관리하는 기관을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의원들이 감독하는 것을 바람직하게만 볼 수 없을 것이다. 즉 앞에서도 지적한 문제인 선거가 현역의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1976년에는 의회가 연방선거위원회의 예산을 25%나 삭감한 일도 있었다. 이러한 예산의 문제도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방선거위원회의 기능을 주로 대통령선거에 관하여 집중하는 경향¹⁰³⁾도 문제로 지적된다.

제 3 절 수정헌법 제1조와 정치자금

미연방대법원은 1976년 정치자금의 지출의 규제에 관하여 수정헌법 제1조 즉 언론의 자유의 침해라고 판단하여 언론의 자유에 관하여 적용되는 엄정심사기준(exacting scrutiny)¹⁰⁴⁾을 적용한 소위 “버클리 원리(Buckley

102) Daniel Hays Lowenstein, *Election Law*, Durham, NC: Carolian Academic Press. 1995., 659p.

103) 2001 Annual Report의 52p. 등 참조. 여기를 보면 정치자금에 대한 감사가 주로 대통령에 대하여 집중되고 다른 상원이나 하원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지 않음을 볼 수 있다.

104) 엄격심사기준(strict scrutiny)와 같은 말이다.

Principles)”를 확립하였는데, 그 논리는 다음과 같다. 즉 언론은 연방수정 헌법 제1조에 의하여 보호되고, 정치에 관한 자금을 규제하는 것은 언론을 규제하는 것과 같다. 언론은 정부가 그 규제에 관한 “경쟁적 이익”을 가진 경우에만 규제할 수 있다. 우리 선거직 공무원들의 현실적인 부패를 방지하는 것은 경쟁적 이익이다.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기부금은 선거직 공무원의 부패를 야기할 우려를 안고 있고, 그것은 규제의 대상이다. 후보자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사용한 자금은 그러한 부패의 위험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규제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언론을 규제하는 법은 명확하게 무엇을 금지하는지 정하여야 하고, 모호하게 정하여서는 안된다. 모호함의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후보자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쓴 자금은 그것이 후보자의 당선이나 패배를 “명시적으로 옹호하는” 경우에만, 선거운동관련자금이라고 할 수 있다.¹⁰⁵⁾ 이 원리는 현 선거운동자금구조를 후보자에 대한 기부를 제한하면서 개인은 후보자와 무관하게 쓰는 자금을 무제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 독립지출이 선호에 대한 표명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이를 규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것이 어떤 후보자에 대한 명백한 지칭을 하면서도 특정하여 그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도록 사람들에게 절대로 권유하지 않는 광고가 그렇게 많은 이유이다.

연방대법원의 정치자금규제에 관한 접근법은 논쟁의 양쪽 모두로부터 공격을 받아왔다. 선거개혁을 주장하는 많은 이들은 대법원이 자금을 언론이라고 하고 후보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지출된 자금은 부패와 무관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¹⁰⁶⁾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에 관련된 자금을 규제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에서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자체를 전면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혁에 반대하는 많은 이들은 연방대법원이 기부금이 부패를 조장할 것이고 따라서 규제를 필요로 한다고 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¹⁰⁷⁾ 이 판결 이후 판례들에 있어서도 이

105) Buckley v. Valeo, 424 U.S. 1(1976)., *Selected Court Case Abstract 1976-February 2001*, Federal Election Information Division, 17th Edition. 20-23pp.의 내용 참조.

106) 예를 들자면, Nixon v. Shrink Missouri Government PAC, 528 U.S. 377(2000)에서 Breyer판사의 의견. Ginsburg 판사도 같은 의견임.

107) Larry Noble, *Campaign Finance Theology and the Supreme Court*,

기준은 논란¹⁰⁸⁾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아직도 미국 사법부의 정치자금에 관한 규제의 근거나 심사기준에 대해서 아직도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Capital Eye, Vol.VIII. No.3. 그리고, Stephanie Pistorich Manson, *When Money Talks: Reconciling Buckley, the First Amendment, and Campaign Finance Reform*, Washington & Lee Law Review, 2001. summer. 이외에도 Trevor Potter and Kirk L. Jowers, *Issue and Express Advocacy*, 2002. 7.의 내용 참고.

108) FEC v. MCFL 479 U.S. 238(1986), FEC v. Furgatch 807 F. 2d 857(9th Cir.) 등

제5장 결 어

이상에서 미국의 정치자금제도를 법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미국의 정치자금제도는 역사적으로 사회적인 적응성을 추구하여 법제도를 정비해오고 있음을 연혁에서 살필 수 있다. 금전으로 인한 정치의 부패와 민주주의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로 공개와 기부와 지출의 상한제한에 의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규제하고 있음도 보았다. 그 중에서 다수기부자의 소액기부에 의한 자금의 조달방법은 다수의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유도하고 거액의 기부가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정치자금제도도 이런 시스템의 정착을 고려해봄 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치자금의 관리기관이 독립성을 확보하는 문제를 보면, 오히려 우리나라가 헌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마련해 둔 것이 더 선진적이지 않은가 생각된다.

그리고 우리가 유의해서 볼 것은 음성적 정치자금의 규제에 관한 것인데, 소프트머니가 미국에서도 이제까지 음성적 자치자금을 조장하였다고 비판되어 오던 것을 2002년 들어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앞으로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살펴보면 시사를 받는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부 록>

○ 聯邦選舉運動法중 政治資金關係規定

(2002년 11월 6일 발효 선거운동개혁법에 의한 개정반영)

第 2 編 議 會

제 1 장 연방선거운동

제 1 절 연방선거운동자금의 공개

제43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선거”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A) 보통선거, 특별선거, 예비선거 또는 결선투표
 - (B) 후보자 지명권이 있는 정당의 전당대회와 대의원회의
 - (C) 정당의 후보자지명전당대회에 파견할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예비선거
 - (D)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지명에 대한 우선권을 표시하기 위한 예비선거
- (2) “후보자”라 함은 연방의 공직에 대하여 당선 또는 당선되기 위한 지명을 구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당선 또는 지명을 구하는 자로 간주된다.
 - (A) 총 5,000달러를 초과하는 기부금을 받거나 총 5,000달러를 초과하는 경비를 지출한 자
 - (B) 타인이 자기를 위하여 기부금을 받거나 경비를 지출하는데 동의한 결과, 그 타인이 총 5,000달러를 초과하는 기부금을 받거나,

<부 록>

- 총 5,000달러를 초과하는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 동의를 한 자
- (3) “연방의 공직”이라 함은 대통령, 부통령, 미의회의 상원 또는 하원의원, 미국령의 주대의원(Delegate) 또는 보호령대표(Resident Commissioner)의 직을 말한다.
 - (4) “정치위원회”(political committee)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A) 일력년(a calendar year)동안 총 1,000달러를 초과하는 기부금을 받거나 경비를 지출하는 위원회·클럽·협회 또는 단체
 - (B) 본편 제441조b(b)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분리자금(separate segregated fund)
 - (C) 일력년 동안에 총 5,000달러를 초과하는 기부금을 받거나, 일력년동안에 총 5,000달러를 초과하여 본조 (8), (9)항에서 정의된 기부금이나 경비가 아닌 지출을 하거나, 일력년동안에 총 1,000달러 이상의 기부를 하거나 경비를 지출하는 정당의 지방위원회
 - (5) “주된 운동위원회”(principal campaign committee)라 함은 본편 제432조(e) (1)에 의하여 후보자가 지정하고 권한을 부여한 정치위원회를 말한다.
 - (6) “수권위원회”(authorized committee)라 함은 주된 운동위원회 또는 본편 제432조 (e) (1)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금을 받거나 경비를 지출하도록 후보자가 권한을 부여한 정치위원회를 말한다.
 - (7) “관련기구”(connected organization)라 함은 정치위원회는 아니나 직접·간접으로 정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며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체의 기구를 말한다.
 - (8) (A) “기부금”(contribution) 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
 - (i) 연방직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일체의 증여금·예약금·대부금·전도금(advance) 또는 적립금이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 (ii)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부담없이 정치위원회에게 제공된 제3자의 인적 용역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보수를 지급하는 것
 - (B) “기부금”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i) 보수없이 후보자나 정치위원회를 위하여 개인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
- (ii) 비상업적 목적으로 공동사회의 구성원들이 정규적으로 사용하는 교회 또는 공회당을 포함한 부동산 또는 동산의 사용 그리고 개인이 제공하는 초대장·음식·음료수의 누계가치가 어느 한 후보자를 위하여는 1회의 선거에서 1,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개인의 주거지에서나 후보자 또는 정당관련의 활동을 위하여 교회 또는 공회당에서 자발적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개인이 일정한 후보자 또는 정당의 정치위원회에게 제공하는 초대장·음식 그리고 음료수의 비용
- (iii) 판매자의 판매행위의 누계가치가 어느 한 후보자를 위하여는 1회의 선거에서 1,000달러를 초과하지 않고, 정당의 모든 정치위원회를 위하여는 1,000달러를 초과하지 않고, 정당의 모든 정치위원회를 위하여는 일력년에 2,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판매자가 음식이나 음료수의 가격이 적어도 원가이상이지만 통상의 상대가격보다는 적은 가격으로, 어느 후보자의 선거운동이나 정당의 정치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음식이나 음료수의 판매
- (iv) 개인의 지출행위의 누계가치가 어느 한 후보자를 위하여서는 1회의 선거에 있어서 1,000달러를 초과하지 않고, 정당의 모든 정치위원회를 위하여서는 일력년에 2,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어느 후보자나 정당의 어떤 정치위원회를 위하여 행하여진 여행경비에 대한 것으로서 상환되지 않는 지불액
- (v) 그 위원회가 조직된 주에서 시행되는 공직선거를 위하여 3인이상의 후보자에 대한 후보자명부인쇄지·견본투표용지·기타의 인쇄물을 준비·전시·우편배달 기타 배포하는데 있어서 위원회가 부담하는 경비에 대한 주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의 지불액 단, 이 조항이 방송·신문·잡지 또는 유사한 정치적 공공광고 형태로 이 명부를 전시하는 데 있어서 위원회가 부담하는 비용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부 록>

- (vi) 본편의 제441조 b(b)에 의하여 이 회사나 노동조합의 경비로 되지 않는 회사나 노동조합의 지불액 또는 채무.
- (vii) 주은행·연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구 또는 그 자금과 계정이 연방자금보험회사·연방저축 및 대부보험회사·전국신용조합경영회에 의하여 보증된 대부.
단, 수표나 저축계정과 관련되어 행하여지고 준거법 및 통상적인 사업거래에 따라 행하여진 당좌대월은 제외하지만, 그러한 대부는
 - (I) 전체 배서인이나 보증인의 수에 대하여 각 배서인이나 보증인이 부담하는 미지급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배서인이나 보증인에 의한 대부금으로 간주되며,
 - (II) 문서에 의해 증명되고, 만기일 또는 분할상환일에 따라 확실히 상환될 것을 근거로 대부가 이루어져야 하며,
 - (III) 대부기관에게 통상적이며 관례적인 이자율을 부담한다.
- (viii) 다음 각호의 위원회에 대한 또는 위원회를 위한 일체의 법률사무나 회계사무.
 - (I) 사무에 대한 보수를 지불하는 자가 그러한 사무를 제공하는 자의 정식고용주이며 그러한 사무가 연방직에 대한 특정후보자의 선출을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활동으로 특정되지 않는 경우, 정당의 정치위원회에 대한 또는 정치위원회를 위한 것.
 - (II) 사무에 대한 보수를 지불하는 자가 그러한 사무를 제공하는 자의 정식고용주이며 그러한 사무가 오직 이 법 또는 제26편의 제95장·제96장에 따른 것임을 보충하기 위한 것일 경우, 후보자의 수권위원회 또는 기타 다른 정치위원회에 대한 또는 이들을 위한 것. 그러나 그 법률사무나 회계사무에 대하여 정식고용주가 지출하거나 부담한 금액은 본편 제434조(b)에 따라 그 사무를 제공받은 위원회에 의하여 보고되어야 한다.
- (ix) 당해 정당의 후보자를 위하여 자원활동과 관련하여 당해 정치위원회가 사용한 선거운동용구의 비용을 정당의 전국 또는 주

위원회가 지급한 것:

- (1) 그러한 지급이 선거비용구비용을 위한 것이 아니거나, 방송, 신문, 잡지, 빌보드, 우편, 기타 유사한 형태의 일반공공매체나 정치광고를 위한 활동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
 - (2) 그 지급이 이 법률의 제한이나 금지에 따른 기부로부터 이루어진 경우.
 - (3) 그 지불액이 특정한 후보자나 또는 특정한 후보자들을 위하여 지출되도록 지정된 기부금으로부터 나와서는 안된다.
- (x) 기타 다른 후보자에 대한 보수나 참고자료를 포함하여 자발적인 활동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선거운동용구(예 : 편, 차량스티커, 광고지, 소책자, 포스터, 안내판은 포함하나 방송, 신문, 잡지, 광고판, 디렉트 메일(direct mail) 또는 유사한 공공보도수단이나 정치적인 광고형태의 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의 비용을 어떤 공직(주나 지방직 포함) 선거나 후보자지명을 위하여 후보자나 그 수권위원회가 지불한 것. 단, 그 지불액은 이 법의 제한 및 금지사항에 따르는 기부금에서 나와야 한다.
- (xi) 그 정당의 정·부통령후보자지명자들을 위하여 그 위원회가 수행한 투표자등록 및 예상 득표(get-out-the-vote) 활동비용에 대한 정당의 주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지불액. 단,
- (1) 그 지불액이 방송·신문·잡지·광고판·디렉트 메일 또는 유사한 일반적인 공공보도수단이나 정치적인 광고형태로 사용되는 선거운동용구나 선거운동 활동비용을 위한 것이 아니며,
 - (2) 그 지불액이 이 법의 제한 및 금지사항에 따른 기부금으로부터 나와야 하고,
 - (3) 그 지불액이 특정후보자나 후보자들을 위하여 지불되도록 지정된 기부금에서 나오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 (xii) 투표참여(ballot access)의 조건으로서 후보자 또는 그 수권위원회에 의한 지불액 및 투표참여의 조건으로서 정당위원회가 받은 지불액.

<부 록>

- (xiii) 일정한 사례금(본편의 제441조 i 에서 설명)
 - (x iv) 후보자의 중계회계, 신용카드, 주택소유권이나 다른 후보자의 자산신용으로부터 대출한 돈으로서, 상거래에 적합한 조건으로 적법하게 대출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대출을 받은 개인이 후보자의 중계회계, 신용카드, 주택소유권이나 다른 자산신용으로부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대출을 받은 경우.
- (9) (A) “경비”(expenditure)라 함은 다음과 같다.
- (i) 연방직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구매, 지불, 배당, 대부, 전도금, 적립금, 연금 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 (ii) 경비지출을 위한 서면계약, 약속 또는 동의.
- (B) “경비”에는 다음 각호가 포함되지 않는다.
- (i) 그 시설이 어떤 정당·정치위원회 또는 후보자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통제되지 않는 경우에 일정한 발송기관·신문·잡지 또는 기타 정기간행물의 시설을 통하여 배포되는 일체의 신문기사·논평·시설.
 - (ii) 투표 또는 투표등록을 권유하기 위한 초당적 활동.
 - (iii) 어떤 조직체나 법인이 주로 연방직 선거나 후보자지명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조직되지 않은 경우, 그 구성원·주식소유자·간부직원·경영직원에 대한 일정한 조직체나 법인에 의한 홍보. 단, 명백히 특정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명시적으로 주창하는 홍보(명백한 특정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에 대한 명시적인 주창이 아닌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는 제외)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조직체(노동조합 포함)나 법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일정한 선거에서 2,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본편의 제 434조 (a) (4) (A) (i)에 따라, 그리고 일정한 보통선거에 관하여는 본편의 제434조 (a) (4) (A) (ii)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iv) 그 위원회가 조직된 주에서 시행되는 일정한 공직선거를 위하여 3인이상의 후보자에 대한 후보자명단, 인쇄지, 견본투표용지, 기타의 인쇄물을 준비·전시·우편배달 기타 배포하는데

그 위원회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주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의 지불액. 단, 본조항의 방송·신문·잡지 또는 유사한 정치적인 공공 형태로 그 명단을 전시하는데 드는 위원회가 부담하는 비용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v) 본편의 제441조 b (b)에 의하여 그 법인이나 노동조합의 비용으로 되지 않는 법인이나 노동조합의 지불액 또는 채무.
- (vi) 그 후보자를 위한 배포의 권유와 관련하여 후보자나 수권위원회가 부담하는 비용, 이 조항이 제441조a(b)에 의하여 그 후보자에게 적용되는 비용한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후보자의 수권위원회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나 그러한 비용은 제434조 (b)에 따라 보고되어야 한다.
- (vii) 법률사무 또는 회계사무에 대한 보수의 지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한다.
 - (I) 사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자가 그 사무를 제공하는 자의 정식고용주이며, 그 사무가 연방직에 대한 특정 후보자의 선출을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활동으로 추정되지 않는 경우에 정당의 정치위원회에 대한 것이거나 이를 위한 경우.
 - (II) 사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자가 그 사무를 제공하는 자의 정식고용주이며 그 사무가 오직 이 법 또는 제26편의 제95장·제96장에 따른 것임을 보증하기 위한 것일 경우에 후보자 또는 정치위원회에 대한 것이거나 이를 위한 경우.
그러나 그 법률사무나 회계사무에 대하여 정식고용주가 지출하거나 부담하는 금액은 제434조(b)에 따라 그 사무를 제공받은 위원회가 보고하여야 한다.
- (viii) 그 정당의 피지명자들을 위한 자발적인 활동과 관련하여 그 위원회가 사용하는 선거운동구(핀, 차량스티커, 광고지, 소책자, 당지, 유세장안내판)의 비용을 정당의 주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가 지불한 것.
단, (1) 그 지불액이 방송, 신문, 잡지, 광고판, 디렉트 메일

<부 록>

또는 유사한 일반적인 공공보도 수단이나 정치적인 보고와 관련되어 사용되는 선거운동용구나 선거운동·활동비용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2) 그 지불액이 이 법의 제한 및 금지사항에 따른 기부금으로 행하여지고,

(3) 그 지불액이 특정한 후보자나 후보자들을 위하여 지출되도록 지정된 기부금으로부터 나와서는 안된다.

(ix) 그 정당의 정·부통령후보지명자들을 위하여 그 위원회가 수행한 투표자등록 및 예상투표활동의 비용에 대한 정당의 주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지불액.

단, (1) 그 지불액이 방송, 신문, 잡지, 광고지, 디렉트 메일 또는 유사한 일반적인 공공보도수단이나 정치적인 광고형태로 사용되는 선거운동용구나 선거운동·활동비용을 위한 것이 아니며,

(2) 그 지불액이 이 법의 제한 및 금지사항에 따른 기부금으로부터 행하여지고,

(3) 그 지불액이 특정 후보자나 후보자들을 위하여 지출되도록 지정된 기부금으로부터 행하여져서는 안된다.

(x) 다른 정당위원회나 특정 주위원회에 이전되는 투표참여(ballout-access)의 조건으로 정당위원회가 받은 지불액.

(10) “위원회”(commission)라 함은 연방선거위원회를 말한다.

(11) “인”(person) 이라 함은 개인, 조합, 위원회, 협회, 법인, 부동조합, 기타 조직체 또는 사람의 단체를 포함하나 연방정부나 연방정부의 부서(authority) 는 포함되지 않는다.

(12) “주”(state)라 함은 미합중국의 각 주, 콜롬비아특별구, 푸에르토리코연방 또는 미합중국의 속령을 말한다.

(13) “신분증명”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A) 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우편배달주소, 직업 및 고용주의 성명.

(B) 기타 인의 경우에는 성명과 주소.

(14) “전국위원회”(national committee)라 함은 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당을 전국적인 수준에서 매일 운영할 책임을 정당의 내규(by-law)에 의하여 부담하는 기구를 말한다.

(15) “주위원회”(state committee)라 함은 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당을 주의 수준에서 매일 운영할 책임을 정당의 내규에 의하여 부담하는 기구를 말한다.

(16) “정당”(political party) 이라 함은 그 협회·위원회 또는 기구의 후보자로서 연방직의 선거를위한 투표용지에 그 이름이 나타나는 후보자를 지명하는 협회·위원회 또는 기구를 말한다.

(17) “독립비용”(independent expenditure) 이라 함은 이하의 자가 행하는 지출을 의미한다

(A) 명백하게 신원이 확인되는 후보자의 선거나 패배를 명시적으로 옹호하는 자에 의하여

(B) 당해 후보, 후보자의 해당정치위원회, 그 기관이나 정당위원회 나 그 기관의 요청이나 제안에 맞지 않게 이루어진 경우

(18) “명백히 특정된”(clearly identified) 이라 함은,

(A) 문제되는 후보자의 이름이 공표되거나

(B) 그 후보자의 사진이나 초상화가 공표되거나

(C) 후보자의 동일성이 명백한 신원보증서(reference)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를 말한다.

(19) “법”(Act) 이라 함은 1971년에 개정된 연방선거운동법(Federal Election Campaign Act)을 말한다.

(20) 연방선거활동이란-

(A) 일반-‘연방선거활동’이란 함은

(i) 정규적으로 일정이 정해진 연방선거일의 120일 전에서 연방선거일 전일까지의 동안의 선거인등록활동

(ii) 선거인 신원조회, 예상득표활동, 또는 연방직을 위한 후보자가 투표에 나타나는 선거와 관련되는 일반선거활동

(iii) 신원을 정확하게 밝힌 연방직 후보자에 대하여 언급하는 공공매체와 그 직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또는 반대하거나 공격하는 공공매체

<부 록>

- (iv) 연방선거와 관련한 활동기간동안 정당의 주, 구 또는 지역위원회 피고용인이 유상시간의 25퍼센트 이상을 할애하는 업무를 제공하는 것
- (B) 제외되는 활동 - ‘연방선거활동’은 정당의 주, 구 또는 지역위원회가 이하를 위하여 지불하거나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다.
 - (i) 매체활동이 상기(A)(i) 이나 (ii)에 규정된 연방선거활동이 아닐 때 공공매체가 주나 지역의 공직후보자의 명확한 신원에 대해 언급하는 것
 - (ii) 상기(A)문에 규정된 연방선거활동에 지불하도록 된 기부금이 아닌 경우 주나 지역공직의 후보자에 대한 기부
 - (iii) 국가, 구 또는 지역 정치정당대회의 비용
 - (iv) 주나 지역 공직의 후보자 한사람의 이름이나 초상등이 있는 단추, 차량스티커, 야드사인을 포함한 일반대중선거용품의 비용
- (21) 일반선거활동-‘일반선거활동’이라는 함은 정당을 지지하고 후보자나 비연방후보자를 지지하지 않는 선거활동을 의미한다.
- (22) 공공매체-‘공공매체’라 함은 방송, 케이블, 위성방송, 신문, 잡지, 옥외광고시설, 대량우편, 일반공공에 대한 전화뱅크, 기타 형태의 일반공공정치광고의 수단에 의한 매체를 말한다.
- (23) 대량우편- ‘대량우편’이라 함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500여통 이상의 미국우편이나 팩스를 사용한, 30일 이내동안의 우편을 말한다.
- (24) 전화뱅크- ‘전화뱅크’라 함은 30일 이내 동안의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전화를 500회이상 하는 것을 말한다.
- (25) 선거주기-315(i)과 315A와 (26)문의 목적상 ‘선거주기’라 함은 특정한 공직을 위한 가장 최근의 선거일의 다음날로부터 그 공직의 다음 선거일 전날까지를 말한다. 앞문의 목적상 예비선거와 일반선거는 별개의 선거로 본다.
- (26) 개인자금-‘개인자금’이라 함은 다음으로부터 출연된 금전을 말한다.
 - (A) 적법한 주법에 의하여 개인이 후보가 된 당시에 그 후보가 처분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자산으로서, 이하로부터 나온

자산.

- (i) 적법하고 정당한 직함
 - (ii) 공정한 이익
- (B) 후보자의 현재선거주기동안 얻은 수익으로서 이하를 포함한다.
- (i) 정규직업으로부터 얻은 월급과 기타수익
 - (ii) 후보자의 주식이나 기타 투자의 양도로부터 파생된 수익
 - (iii) 후보자가 받은 유산
 - (iv) 선거주기의 시작 전에 확정된 신탁으로부터의 수익
 - (v) 선거주기 시작 후에 후보자를 수혜자로 하는 유증에 의하여 확정된 신탁으로부터의 수익
 - (vi) 선거주기의 시작에 앞서서 후보자가 통상 받아온 개인적 선물
 - (vii) 복권이나 기타 합법적인 확률게임에 의한 수익
- (C) 후보자와 그 배우자에 의하여 공유되는 자산의 지분이 소유권이나 양도증서상 자산의 후보자 지분에 상당한 것 다만 특별한 지분이 소유권이나 양도에 관한 증서에서 증명될 수 없으면 1/2로 본다.

제432조 [정치위원회의 조직]

(a) 회계원(Treasurer) ; 공석 ; 공적권한

모든 정치위원회는 회계원을 두어야 한다. 회계원이 공석중인 기간에는 정치위원회에 의하여 또는 정치위원회를 위하여 기부금을 받거나 지출될 수 없다. 회계원이나 그의 수권대리인의 권한위임없이 정치위원회를 위하거나 대신하여 어떤 경비도 지출할 수 없다.

(b) 기부금 계정 · 분리자금

- (1) 수권정치위원을 위하여 기부금을 받은 자는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기부금을 회계원에게 건내주어야 하며, 기부금액이 50달러를 초과할 때에는 기부금 수령일자, 출연자의 이름과 주소를 회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수권위원회가 아닌 정치위원회를 위하여 기부금을 받은 자는,
 - (A) 기부금액이 50달러이하인 때에는 그 기부금을 지급받은 후 30일 이내에 기부금을 회계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부 록>

- (B) 기부금액이 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을 지급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기부금액·기부금수령일·출연자의 성명과 주소를 회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정치위원회의 모든 자금은 개인의 사적 자금과 분리되어야 하며 혼합되어질 수 없다.
- (c) 보고서
정치위원회의 회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서에 기장하여야 한다.
 - (1) 그 정치위원회에 의하여 또는 이를 위하여 지급받은 모든 기부금.
 - (2) 50달러를 초과하여 기부한 자의 성명과 주소 및 기부일자와 기부금액.
 - (3) 일력년 동안 총 200달러 이상의 기부를 한 자의 신분증명과 기부일자 및 기부금액.
 - (4) 기부를 한 정치위원회의 증명과 기부일자 및 기부금액.
 - (5) 지불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지불일자·금액·목적·매지불마다 200달러를 초과하는 영수증·송장(invoice)·소인이 찍힌 수표를 포함하여 지불이 행하여진 후보자의 성명 및 후보자가 구하는 공직.
- (d) 기록 및 보고서 사본의 보존
회계원은 본조에서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모든 기록 및 보고서를 제출한 후 3년 동안 본 절에서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모든 보고서의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이 절 제434(a) (11)에 따라서 전자매체로 된 보고서에 관해서는 전단에서와 마찬가지로 회계책임자가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형태의 복사본을 보관해야만 한다.
- (e) 주선거운동위원회와 부선거운동위원회, 후보자·후원회의 지정 및 지원.
 - (1) 모든 연방직 후보자(부통령직피지명자는 제외)는 (3)항에 따라 서면으로 그 후보자의 주선거운동위원회로서 정치위원회를 지정하여야 한다. 그 지정한 후보자가 된 후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후보자는 (3)항에 따라 그 후보자의 후원회로서 부정치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그 지정은 본조의 f(1)에 따라 그 후보자의 주선거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2) 선거운동과 관련된 기부금 또는 대부금을 받거나 비용을 지불한 전향의 후보자는 이 법에서는 경우에 따라, 후보자의 대리인 또는 그

후보자의 위원회의 대리인으로서 기부금 또는 대부금을 받거나 지출한 것으로 간주된다.

- (3) (A) 1인 이상의 후보자를 지원하고 있거나 지원하였던 정치위원회는 후원회로 지명될 수 없다.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 정당이 지명한 대통령후보자는 그 정당의 전국위원회를 주선거운동위원회로 지명할 수 있다. 단, 그 전국위원회가 주선거운동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독립된 회계장부를 유지하는 경우에만 그러하다.
 - (ii) 후보자들은 오직 공동모금만을 위하여 설치된 정치위원회를 후원회로 지명할 수 있다.
- (B) 본조에 있어서 “지원”이라함은 후원회가 기타 다른 후보자의 후원회에 하는 1,000달러이하의 기부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 (4) 각 후원회의 명칭에는 (1)의 그 위원회에게 수권한 후보자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후보자가 아닌 정치위원회의 명칭에는 후보자의 성명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 (5) 제441조 b(b)에 의하여 설립된 분리자금의 명칭에는 그 연방기구의 명칭에는 그 연방기구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 (f) 지정서·명세서 및 보고서의 주선거운동위원회에의 지출 및 접수
 - (1)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수권위원회가 작성한 각 지정서·명세서 또는 지불보고서는 후보자의 주선거운동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 (2) 각 주선거운동위원회는 (1)항에서 제출되도록 요구된 모든 지정서·명세서·보고서를 접수해야 하며, 이 법에 따라 이들 서류를 편철해야 한다.
- (g) 상원사무총장에 의한 지정서·명세서·보고서의 제출 및 접수,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조건, 지정서 등의 공공관람 및 보전.
 - (1)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상원의원후보자나 주선거운동위원회가 작성하는 지정서·명세서·보고서는 상원사무총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상원

<부 록>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관리인(custodian) 으로서 그 지정서, 명세서 등을 접수하여야 한다.

- (2) 상원사무총장은 본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일체의 지정서·명세서·보고서의 사본을 가능한 한 즉시(업무일 2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1) 절에 따라 제출되는 지정서, 명세서, 보고서를 제외하고 이 법에 따라 제출이 요구되는 모든 지정서, 명세서, 보고서는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 (4) 이 법 438(a) (4)에 따라서 상원사무총장은 위원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위 절에 따라 접수한 모든 지정서·명세서·보고서를 공공열람에 제공하고, 제438조(a) (5)에 따라 위원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그 지정서·명세서·보고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 (h) 선거운동자금예치소, 지정서·계정의 유지등, 소액현금지출자금, 지출의 기록
- (1) 각 정치위원회는 선거운동자금예치소로서, 1개 이상의 주은행, 연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예치기관 또는 그 예금 및 계정이 연방보험회사·연방저축 및 대부보험회사 또는 전국신용조합 경영회에 의하여 보증된 예치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각 정치위원회는 한 개 이상의 예금계정과 그 위원회가 지정한 예치소에 위원회결정의 기타 계정에 예치되어야 한다((2)항의 소액현금지출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위원회는 본조의 계정에 기한 수표에 의하여서만 지출할 수 있다.
 - (2) 정치위원회는 각 구매 또는 거래에 있어서 개인에게 1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지출을 하기위한 소액현금을 보유할 수 있다. 소액현금지출기록은 본조의 (c) (5)에 따라 유지되어야 한다.
 - (i) 정치위원회의 회계원이 정치위원회를 위하여 이 법이 요구하는 정보자료를 수집하고, 보유하며, 제출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한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모든 보고서 및 기록은 이 법 또는 제26편의 제95장·제96장에 따른 것으로 간주한다.

제433조 [정치위원회의 등록]

(a) 조직명세서

각 수권선거운동위원회는 제432조(e) (1)에 따라 지명된 후 10일 이내에 조직명세서 [명세서; statements] 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41조 b(b)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각 분리자금은 설치된 후 10일 이내에 조직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모든 위원회는 제431조(4)에서 말하는 정치위원회가 된 후 10일 이내에 조직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b) 명세서의 내용

정치위원회의 조직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 (1) 위원회의 명칭 · 주소 · 유형
- (2) 관련조직 또는 관련위원회의 명칭 · 주소 · 관계 및 유형
- (3) 위원회의 회계장부 및 책자 관리자의 성명 · 주소 · 직위
- (4) 회계원의 성명 · 주소
- (5) 위원회가 후보자에 의하여 수권받은 경우, 후보자의 성명 · 주소 · 구하는 공직 · 당가입관계
- (6) 위원회가 사용하는 모든 은행 · 안전예금박스 · 기타 예치소의 명부작성

(c) 명세서의 사항변경

조직명세서에 있어서 이전에 제출한 내용에 일정한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제432조(8)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d) 종료 등의 요건 및 권한

- (1) 정치위원회는 제432조(8)에 따라 더 이상 기부금을 받지 않고 지출을 하지 않으며 그 위원회가 아무런 채무 또는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을 기재한 서면명세서를 제출한 때에만 종료할 수 있다.
- (2) 본항의 어떤 규정도 다음 각 호의 절차에 관한 위원회의 권한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도록 해석될 수 없다.
 - (A) 정치위원회에 대한 지급불능결정
 - (B) 지급불능정치위원회의 강제청산 및 미불채무에 대한 자산의 충당
 - (C) 청산 및 자산충당 후 지급불능 정치위원회의 해산

제434조 [보고요건]

(a) 정치위원회의 회계원의 수입과 지출 : 제출요건

(1) 정치위원회의 각 회계원의 본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 및 지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한 각 보고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2) 정치위원회가 하원 또는 상원의원후보자의 주선거운동위원회인 경우

(A) 그 후보자가 당선 또는 선거지명을 구하는 선거년도에는 회계원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i) 선거사전보고서, 이는 그 후보자가 당선 또는 선거지명을 구하는 선거 전 12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또는 그 선거 전 15일 이내의 우편소인이 찍히면 됨) 그 선거일 전 20일 이내에 완성되어야 한다.

(ii) 총선거사후보고서, 이는 그 후보자가 당선을 구하는 총선거 후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그 총선거후 20이내에 완성되어야 한다.

(iii) 각 사분기 최종일 이내에 완성되어야 한다. 단, 12월 31일에 마감되는 사분기 보고서는 다음해 1월 31일 이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B) 기타의 연도에는 회계원은 4분기로 나누어 보고서를 제출하며, 각 분기의 마지막달의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각 분기의 마지막달까지에 관하여 완성하여야 한다. 다만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분기에 관해서는 다음 년도의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위원회가 대통령후보자의 주선거운동위원회인 경우

(A) 대통령직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i) 회계원은 그 위원회가 그해 1월 1일에 총 100,000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받았거나 경비를 지출한 경우, 또는 그 해에 총 100,000달러이상의 기부금을 받거나 비용을 지출할 것을 예상하는 경우에는 매월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월별 보고서는 매월 마지막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 마지막 날까지 완성되어야 한다. 단, 예외로서 11월, 12월 보고서를 제출하는 대신에 (2) (A) (i)에 따른 선거사전보고서와

- (2) (A) (ii)에 따른 총선거사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 말보고서는 다음해 1월 31일 이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 (ii) 그 밖에 대통령후보자의 주선거운동위원회의 회계원은 (2) (A) (i)의 선거사전보고서, (2) (A) (ii)의 총선거사후보고서, (2) (A) (iii)의 각 사분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iii) 선거가 있는 해에 (3) (A) (ii)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는 위원회가 100,000달러를 초과하여 기부금을 받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회계원은 다음 보고기간부터 (3) (A) (i)에 따른 매월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B) 선거가 없는 해에는 회계원은 다음 보고서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 (i) 매월별 보고서, 이는 매월 말일 이후 2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매월 말일에 완성되어야 한다.
- (ii) 각 사분기별 보고서, 이는 각 사분기 최종일의 15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각 사분기 최종일에 완성되어야 한다.
- (4) 후보자의 후원회 이외의 모든 정치위원회는 (A) 와 (B) 보고서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 (A) (i) 총선거가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해의 각 사분기별 보고서, 이는 각 사분기 최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단, 12월 31일에 끝나는 각 사분기보고서는 다음 해의 1월 31일 이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 (ii) 선거사전보고서, 이는 위원회가 그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금을 받거나 경비를 지출한 선거 시행 전 12일 이내(또는 당해 선거 시행전 15일 이내의 우편소인이 찍히면 됨)에 제출되어야 하며 선거전 20일 이내에 완성되어야 한다.
- (iii) 총선거사후보고서, 이는 그 후보자가 당선을 구하는 총선거 후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그 총선거후20일 이내에 완성되어야 한다.
- (iv) 기타 다른 해에 있어서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기간의 보고서, 이는 7월 31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또한, 7월 1일

<부 록>

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의 보고서, 이는 다음해 1월 31일 이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 (B) 매년의 월별보고서, 이는 매월 말일부터 20일 이내에 제출되고 매월 말일에 완성되어야 한다. 단, 예외적으로 총선거가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해의 11월, 12월에 제출되어야 할 보고서 대신에 (2) (A) (i)의 총선거사전보고서, (2) (A) (ii)의 총선거사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말보고서를 다음해 1월 31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앞의 문단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전국위원회는 (B)문상 요구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5) 이 법에 따라 ((2) (A) (i) 또는 (4) (A) (ii)나 (g) (1)의 경우 제외) 제출되는 지정서·보고서·명세서가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는 경우 미합중국 우편소인은 지정서·보고서·명세서의 제출일로 본다.

- (6) (A) 후보자의 주선거운동위원회는 사무총장·위원회·국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적절하게 그 후보자의 공인된 후원회가 수령한 1,000달러이상의 기부금에 대해서 20일후부터 선거전 48시간이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는 기부금 수령후 48시간이내에 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이름, 사무실, 후보자가 구하고자 하는 공직기부자의 신분 증명 및 기부수령일과 금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B) 개인자금지출의 명시

- (i) 개인자금지출의 정의-이 문에서 ‘개인자금의 지출’이라 함은,

(I) 후보자가 개인자금으로써 하는 지출

(II) 후보자가 개인자금을 가지고 하는 기부나 대부 또는 후보자의 공인된 후원회에 대하여 그러한 자금을 쓰는 대부금

- (ii) 목적의 선언-한 개인이 상원의원직의 후보자가 된 경우에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후보자는 후보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자금지출의 총액에 관한 진술서를 이하에 제출한다. 이때 주의 경쟁과 공정한 선거공식을 초과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I) 위원회

(II) 동일한 선거의 각 후보자

- (iii) 처음 통지-(ii)문에 규정된 후보자가 개인자금으로부터 기타

다른 선거와 관련한 한도액의 2배가 넘는 개인자금지출을 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하에 대하여 통지를 발하여야 한다.

(I) 위원회

(II) 동일한 선거의 각 후보자

(iv) 추가 통지-후보자가 (iii)에 규정된 처음 통지를 제출한 후 그 후보자는 어떤 선거와 관련하여 총한도액이 10000달러를 초과하여 개인자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추가통지를 하여야 한다.

(I) 위원회

(II) 동일한 선거의 각 후보자

이 통지는 그 지출이 있는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v) 내용-(iii)이나 (iv)의 통지는 이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I) 후보자의 성명과 사무실

(II) 각 지출의 일자와 액수

(III) 통지하도록 정해진 지출의 일자와 선거일을 고려하여 후보자가 지출한 개인자금의 총액

(C) 초과기부의 처분의 통지-후보자가 선거에서 지명을 받기위한 선거일자이후에 예정된 다음 정규보고서에는 후보자와 그 공인후원회는 위원회에 대하여 초과기부된 금액과 출처를 밝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후보자나 후보자의 공인된 후원회가 어떻게 그 자금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도 보고하여야 한다.

(D) 강제-이 문항의 보고요건의 강제에 관한 규정은 309항을 보라

(E) 여기서 말하는 통지는 이 법의 기타 다른 보고조건에 첨가된다.

(7) 본항에 따라 제출할 필요가 있는 보고서는 그 서류가 관련되는 연도의 기간 중 빠짐없이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해의 전의 보고서에서 보고한 사항과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그 금액만 이월하면 된다.

(8) 정치위원회가 각 사분기 말일 이후 5일부터 15일까지 기간중에 (2)

(A) (i) 또는 (4) (A) (ii)에 따라 선거사전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2) (A) (iii) 또는 (4) (A) (i)의 각 사분기보고

<부 록>

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 (9) 선거위원회는 특별선거에서 당선 또는 선거지명을 추구하는 후보자의 주선거운동위원회가 제출하는 보고서 및 특별선거에서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를 하거나 경비를 지출하는 정치위원회가 제출하는 보고서의 제출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선거위원회는 각 선거의 선거사전 보고서 및 궐석선거에 대한 선거사후보고서를 각 1통밖에 요구하지 못한다. 선거위원회는 (2) 또는 (4)의 보고서가 본항에서 요구하는 보고일의 10일 이내에 제출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선거에 있어서 위원회의 보고서 제출의무를 면제시킬 수 있다. 선거위원회는 그 선거개시 5일전에 보고서제출일을 설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그 선거 후보자의 주선거운동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10) 부통령직에 입후보하는(정당에 의하여 지명된 자가 아닌 후보자)를 지원하는 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3)호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1) (A) 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보고서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컴퓨터디스켓이나 어떤 다른 적절한 전자매체형태로 제출, 보존되도록 규정을 공포하여야 한다.
(B) 위원회는 이법상 공공의 위원회에 대한 조사에 이용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제출된 선언, 보고서, 통지 등을 그 수령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인터넷에서 일반의 접근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그렇게 한다.)
(C) 이 절에서 정한 규정을 만들 때는 위원회는 규칙에 의하여 보고서가 선언, 보고 등의 방법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한다.(서명을 요구하지 않는 방식) 이렇게 제출된 문서들은 서명된 문서와 같이 취급한다.
(D) 이 절에서 사용되는 보고서란 단어는 위원회에 제출되도록 이 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보고서, 명세서나 지시서를 의미한다.
- (12) 보고서제출을 위한 소프트웨어
(중간생략)

(b) 보고서의 내용

본조의 각 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보고기간의 개시일에 소유하고 있는 현금액수
- (2) 보고기간 및 1년 동안에 있어서 다음 범주에 속하는 모든 수령액총계
 - (A) 정치위원회 이외의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
 - (B) 후원자를 위하여 후보자가 출연한 기부금
 - (C) 정당위원회로부터 받은 기부금
 - (D) 기타 정치위원회로부터 받은 기부금
 - (E) 수권위원회를 위하여 동일 후보자의 다른 수권위원회로부터 받은 것
 - (F) 관련 위원회로부터의 양수금, 그리고 보고위원회가 정당위원회인 경우, 그 위원회가 관련 위원회인가 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정당 위원회로부터의 양수금
 - (G) 수권위원회를 위하여 후보자가 지출하거나 보증한 대부금
 - (H) 기타 모든 대부금
 - (I) 환불금·상환금 및 비용지출에 대한 상계금
 - (J) 배당액 이자 및 기타 수령액
 - (K) 대통령후보자의 수권위원회를 위하여 제26편의 제95장·제96장에 따라 받은 연방자금
- (3)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증명
 - (A) 보고기간동안 보고위원회에 기부를 한 자로서 기부금품이 1년 동안에 총 200달러를 초과하거나 또는 보고위원회가 지정한 그 보다 낮은 금액을 초과하는 자(정치위원회 제외), 기부일 및 기부금액
 - (B) 보고기간동안 보고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위원회와 기부일자 및 기부금액
 - (C) 보고위원회에 자금을 양도한 수권위원회
 - (D) 보고기간 중 보고위원회인 경우에 자금을 양도한 위원회가 관련 위원회인가의 여부와 무관하게 기타의 정당위원회로부터 보고위원회에 대한 자금의 양도·양도일자·양도액
 - (E) 보고기간 중 보고위원회에 대부한 자, 그리고 그 대부의 배서

<부 록>

- 인·보증인의 증명 및 대부 일자·대부금액
- (F) 1년에 200달러를 초과하여 보고위원회에 환불금·상환금 기타 경비지출에 대한 상계금을 제공한 자와 수령일자·수령금액
- (G) 1년동안 총 200달러를 초과하여 보고위원회에게 배당금·이자·기타 금액을 제공한 자 및 수령일자·수령액
- (4) 보고기간 및 1년동안의 모든 지출의 총액 및 다음 범주에 속하는 모든 지출
- (A) 후보자 또는 위원회 경상비에 충당한 비용
- (B) 수권위원회를 위하여 동일후보자가 수권한 다른 위원회에게 한 양도금
- (C) 관련위원회에게 한 양도금과 보고위원회가 정당위원회인 경우, 그 위원회가 관련위원회인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정당위원회에게 한 양도금
- (D) 수권위원회를 위하여 후보자가 지불하고 보증한 대부금의 상환금
- (E) 기타 모든 대부금의 상환금
- (F) 기부금·상환금 및 기타 기부금·상계금
- (G) 수권위원회를 위한 기타 다른 지출
- (H) 수권위원회이외의 정치위원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금액
- (i) 다른 정치위원회에 대한 기부금
- (ii) 보고위원회가 지출한 대부금
- (iii) 독립비용
- (iv) 본편의 제441조(d)에 의한 경비
- (v) 기타 다른 지출
- (I) 대통령후보자의 수권위원회를 위하여 제441조a(b)의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 지출
- (5) 다음 각 호의 자의 성명 및 주소
- (A) 보고위원회가 후보자 또는 위원회 경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1년에 총 200달러를 초과하는 금품을 지불받은 자 및 지불일자·금액·목적
- (B) 보고위원회로부터 자금을 양수받은 수권위원회

- (C) 보고기간 동안 보고위원회로부터 자금을 양수받은 관련위원회, 보고위원회가 정당위원회인 경우, 그 정당위원회가 관련위원회인 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보고위원회로부터 다른 정당위원회로의 자금 이전 및 그 이전일·이전금액
 - (D) 보고기간 동안 보고위원회로부터 기부금상환금을 받은 자 및 상환일자·금액
 - (E) 그 기부금이 본항의 (3) (A)에 따라 보고된 경우 보고위원회로부터 기부금상환금 및 기타 기부금상계액을 받은 자 및 그 지불일자·금액
- (6) (A) 수권위원회를 위하여 (5)에 해당하는 지출은 아니나, 1년에 총 200달러를 초과하는 지출을 수령한 자의 성명·주소·지출일자 및 금액
- (B) 기타 다른 정치위원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의 성명 및 주소
- (i) 보고기간 동안 보고위원회로부터 기부금을 수령한 정치위원회 및 기부일자
 - (ii) 보고기간 동안 보고위원회로부터 대부금을 수령한 자 및 그 일자·금액
 - (iii) 보고기간 동안 보고위원회에 의한 독립경비와 관련하여 1년에 총 200달러를 초과한 경비를 수령한 자 및 그 독립비용금액·지출일자·목적, 또한 그 후보자가 구하고자 하는 공직 명칭뿐만 아니라 독립경비가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한 것인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것인지를 나타내는 설명서, 그 독립경비가 후보자·수권위원회 또는 수권위원회의 대리인의 요청에 의하거나 이들과 협력·상의하여 행하여졌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위증벌을 받을 조건으로 기재한 증명서
 - (iv) 보고기간 동안 제441조a(d)의 경비와 관련하여 보고위원회로부터 경비를 수령한 자 및 경비의 이익이 귀속되는 후보자가 구하고 있는 공직과 그 지불일자·금액·목적
 - (v) 본항 또는 앞의 (5)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보고기간 중에 보고위원회로부터 1년에 총 200달러를 초과하여 경비를 수령한 자

<부 록>

및 수령일·금액·목적

- (7) 보고기간과 1년동안 그 정치위원회에 대한 모든 기부금의 총계 및 기부금 상계액을 제외한 총 기부금, 그리고 그 정치위원회가 지출한 모든 경상비의 총계 및 경상비 상계액을 제외한 총 경상비
 - (8) 그 정치위원회가 부담하는 채무액과 그 성질 및 그 채무가 보고액 보다 적게 결정된 경우 그 채무가 소멸된 상황과 그 지불한 대가에 관한 설명서
- (c) 기타 다른 정치위원회에 의한 명세서 : 제출 : 내용 : 지수
- (1) 1년에 총 200달러를 초과하여 독립경비를 지출하는 자(정치위원회 제외)는 자신이 수령한 모든 기부금에 관하여 본조의 (b) (3) (A)의 내용을 포함하는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 (2) 본항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명세서는 본조의 (a) (2)에 의하여 제출되어야 하며 다음 각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A) 독립경비가 관계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한 것인지, 반대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를 나타내는 본조의 (b) (6) (B) (iii)에서 요구하는 자료
 - (B) 그 독립경비가 후보자·수권위원회 또는 그 대리인과의 협력·상의에 의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증벌을 조건으로 기재한 증명서
 - (C) 독립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명세서를 제출한 자에게 200달러를 초과한 금액을 기부한 자의 신분증명
 - (3) 위원회는 본조 (b) (6) (B) (iii)에 의해 보고되는 것을 포함하여 후보자 개인별로 각 후보자에 의하여 또는 그를 위하여 만들어진 모든 독립경비를 개별적으로 나타내는 지수를 신속히 작성 할 책임이 있으며, 또한 그 지수를 선거전에 적절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발표할 책임이 있다.
- (e) 정치위원회-
- (1) 전국과 의회 정치위원회-정당의 전국위원회, 정당의 전국의회선거위원회 그리고 기타 위 위원회들의 하부위원회는 보고기간동안에 모든 영수증과 지급금을 제출하여야 한다.

- (2) 제323조가 적용되는 기타 정치위원회
 - (A) 일반-이 법상 적용되는 기타보고서요건에 부가하여 323(b) (1) 조가 적용되는 정치위원회는, 310(20) (A) 조에 규정된 활동동에 지출된 모든 금액의 영수증과 지급금의 총액에 대한 보고서를, 그것이 5000달러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하여야 한다.
 - (B) 주와 지역정당에 의한, 연방선거활동에 지출이 승인된 특정 비연방금액의 특별공개
- (3) 항목별 기재- 정치위원회가 연간 200달러가 초과되는 총액을 모집한 사람으로부터 이 항이 적용되는 영수증이나 지급금명세서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정치위원회는 (3) (A),(5) 와 (b)항의(6)문에서 요구되는 방식으로 그러한 자에 대한 보고서를 개별적으로 구별하여 항목별로 기재한다.
- (4) 보고기간- 이 조문상 제출되어야 하는 보고서의 제출기간은 (a) (4) (B)항상의 정치위원회에 요구되는 기간과 같다.
- (f) 선거운동매체의 공개
 - (1) 요구되는 진술-선거운동매체를 위하여 직접 지출하도록 한 해 총 10,000달러이상을 지급한 자는 누구나 (2)문에 규정된 정보를 포함한 진술서를 위원회에 각 공개일의 24시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진술서의 내용-이 조항상 제출될 것이 요구되는 각 진술서는 이하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진술에 위법이 있으면 형벌과 위증죄로 벌한다.
 - (A) 지급한 자의 신원, 그 활동과 지출의 지시를 같이 한 자, 장부관리자, 회계책임자 등의 신원
 - (B) 위의 자가 개인이 아닐 경우는 그 법인의 주된 영업소소재지
 - (C) 진술서에 기재된 기간동안 200달러 이상을 각각 지급한 경우 그 액수와 그러한 지급을 받은 자의 신원
 - (D) 선거운동매체가 이용된 선거와 후보자의 성명
 - (E) 그러한 지급이 분리된 은행계좌로부터 된 것이고 그 은행계좌가 미국시민이거나 국적을 가졌거나 혹은 적법한 영주권을 가진 개인에 의하여 단독으로 기부된 기금으로 구성된 것으로 선거운동

<부 록>

매체에 직접 그 금액이 사용된 경우에는 전년도의 첫날로 시작하여 공개일에 끝나는 기간동안 총 1000달러 이상을 기부한 모든 기부자의 성명과 주소. 이 조항이 그러한 분리된 계좌의 기금의 사용에 대하여 선거운동매체외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F) 그 지급이 (E)에서 규정되지 않은 자금으로부터 된 것일 때에는 전년도에 첫날로 시작하여 공개일에 끝나는 기간동안 총 1000달러 이상을 기부한 모든 기부자의 성명과 주소

(3) 선거운동 매체--이 항의 목적상

(A) 일반- (i) '선거운동매체'라 함은 여하한 대중방송매체·케이블·또는 위성 매체로서-

(I) 연방직을 위한 신원이 분명한 후보자를 지칭하고;

(II) 이하의 시일 내에 행해진 것으로-

(aa) 당해 후보자가 추구하는 공직의 일반, 특별, 결선 투표의 60일 전에

(bb) 그 공직의 후보자를 지명할 예비나 선호투표나 정당의 정당 대회등으로부터 30일이전에

(III)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아닌 공직의 후보자를 지칭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경우에는 관련유권자단을 그 목표로 한다.

(ii) (i)문이 헌법상 불충분한 규정으로서 사법결정이 되면, '선거매체'라는 용어는 당해 공직의 후보자에 관한 방송, 케이블, 위성 방송을 모두 통칭한다. 이 규정은 연방규정코드 11편의 100.22(b)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B) 예외- '선거매체'라 함은 다음은 제외한다.

(i) 정당이나 정치위원회나 후보자가 소유하거나 조정하는 시설이 아닌 한, 뉴스내용, 논평, 사실 등에 나타나는 커뮤니케이션

(ii) 이 법상 독립지출이나 지출을 구성하는 커뮤니케이션

(iii) 위원회의 규정에 의거하여 후보자의 논쟁이나 포럼을 구성하는 커뮤니케이션이나 순전히 포럼이나 토론을 위하여 만들어진 위원회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으로 토론이나 포럼을 후원하는 개인

을 위하여 만들어진 커뮤니케이션

(iv) 위원회가 규정할 규칙상 면제되는 기타 커뮤니케이션

(C) 관련 유권자단을 목표로 함-이 문의 목적상 신원이 분명한 연방직 후보자를 지칭하는 커뮤니케이션이 '관련 유권자단'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그 커뮤니케이션이 최소한 50,000명 이상의 수신인을 가졌을 때 이에 해당한다.

(i) 하원의원이나 기타 지역구의 대표의 후보자가 대표하려고 하는 지역구에서

(ii) 상원의 경우는 그 주에서

(4) 공개일-이 조항의 목적상 '공개일'이라 함은-

(A) 한 사람이 선거운동매체를 생산하거나 발송하는 직접비용의 지급을 총 10,000달러를 초과하여 한 연도 중 첫날

(B) 그러한 연도의 가장최근 공개일이래 한 사람이 선거운동매체를 생산하거나 발송하는 직접비용의 지급을 총 10,000달러를 초과하여 한 연도 중 다른 날

(5) 지급의 계약-조항의 목적상 사람이 지급을 하겠다는 계약을 행한 경우에는 지급을 한 것으로 본다.

(6) 다른 요건과의 조화-이 조항상 보고의 기타 다른 요건은 이 법률의 다른 보고요건에 부가된 것으로 본다.

(7) 내국세법과의 조화-이 조항은 1986년 내국세법의 목적상 정치활동이나 선거활동의 정의에 변경이나 영향을 주도록 해석하여서는 안된다.

(g) 특정지출의 보고시기

(1) 총1,000달러지출

(A) 최초보고-사람(정치위원회를 포함) 이 총 1000달러이상의 독립지출을 하거나 그 계약을 한 때에는 그로부터 20일 이후, 24시간 이상, 선거일전 24시간 이내에 지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B) 추가보고들-위(A)문상의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최초보고서와 관련된 동일한 선거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총 1000달러 이상의 독립지출을 하거나 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추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록>

- (2) 총 10,000달러의 지출
 - (A) 최초보고-사람(정치위원회포함) 이 선거일 전 20번째날을 포함하여 그때까지 총10,000달러이상을 독립지출을 하거나 그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지출에 관하여 보고서를 48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 (B) 추가보고들-위(A)문상의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그 자가 다시 동일한 선거에서 추가적으로 총 10,000달러이상을 독립지출하거나 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각 48시간 이내에 추가보고를 하여야 한다.
- (3) 제출기관;내용-이 조항상의 보고서는
 - (A) 위원회에 제출하고,
 - (B) 그 내용에는 (b) (6) (B) (iii)항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그 비용이 누구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인지 각 후보자의 성명도 포함하여야 한다.
- (4) 총 1000달러지출의 보고시기-(a) (5)문에도 불구하고 (1)문상의 진술이 위원회에 송달되거나 기타 그 통지를 수령할 당사자들에게 도착하여야 하는 시간은 영수증을 첨부한 진술서를 제출한 시간으로 본다.
- (h) 취임위원회로부터의 보고-연방선거위원회는 법률 36편 510장상 취임 위원회에 의하여 제출된 모든 보고서를 위원회 사무실과 인터넷에서 일방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 보고서를 받은 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제435조 (삭 제)

제436조 (삭 제)

제437조 [전당대회 재정에 관한 보고]

- (1) 주 또는 소행정구역에서 정·부통령직후보자 지명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전국 정당직원들과 교섭함에 있어서, 주 행정세분구역 또는 사람의 집단을 대표하는 각 위원회나 기타 조직

- (2) 정·부통령직후보자지명대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전국정당을 대표하는 각 위원회 또는 기타 조직은, 대회종결 후 60일 이내에(그러나, 정·부통령선거인이 선출되는 날의 20일 이전)에 위원회에게 자금 출처 및 지불목적을 나타내는 양식으로 상세하게 작성한 완전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37a조 (삭 제)

제437b조 (삭 제)

제437조c [연방선거위원회]

(a) 설립 : 위원자격 : 임기 : 결원 : 보수 : 자격요건 : 의장 및 부의장

- (1) 연방선거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의결권이 없는 직무상의 상원사무총장, 하원사무총장 또는 그들이 지명하는 자와 상원의 조언과 동의에 의해 대통령이 지명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항에 따라 임명되는 선거위원회위원 중 4명 이상이 동일정당에 소속되어서는 아니된다.
- (2) (A)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최초로 임명된 자를 제외하고 6년으로 한다.
- (i) 동일정당에 속하지 않은 2명의 위원은 1977년 4월 30일까지의 임기로 임명된다.
 - (ii) 동일정당에 속하지 않은 2명의 위원은 1979년 4월 30일까지의 임기로 임명된다.
 - (iii) 동일정당에 속하지 않은 2명의 위원은 1981년 4월 30일까지의 임기로 임명된다.
- (B)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후임자가 위원으로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행한다.
- (C) 임기만료외에 결원보충을 위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D) 위원회의 위원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본래 임명된 것과 같은 방

<부 록>

법으로 보충된다.

- (3) 위원은 경험, 성실성, 공정함과 정확한 판단력을 기준으로 하여 선출되며, 상원사무총장과 하원사무총장을 제외한 위원들은 지명시 연방정부의 행정, 입법 또는 사법부의 공직자 또는 직원으로 선출되거나 임명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위원은 다른 사업이나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으로 지명시 다른 사업이나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지명 후 늦어도 90일 이내에 그 활동을 종결하거나 청산하여야 한다.
 - (4) 위원(상원사무총장과 하원사무총장을 제외)은 행정별표의 IV등급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다.
 - (5) 위원회는 1명의 의장과 1명의 부의장을 그 위원(상원사무총장과 하원사무총장을 제외) 중에서 1년의 임기로 선출한다. 위원은 그 임기 중 1회에 한하여 의장에 취임할 수 있다. 의장과 부의장은 동일정당 소속이어서는 안된다. 부의장은 의장의 부재, 근무불능 또는 공석이 된 경우 의장으로서 행동한다.
- (b) 집행 : 시행 : 정책수립 : 민사상 강제외 사법권독점 : 연방직선거에 대한 의회의 권한과 기능
- (1) 선거위원회는 이 법과 제26편 제95장·제96장에 관하여 이를 집행하고 준수되도록 하고 정책을 수립한다. 위원회는 그 규정을 민사상으로 강제하는 관할권을 독점한다.
 - (2) 이 법의 어느 조항도 의회 또는 그 위원회의 연방직선거에 대한 조사 및 정보획득상의 감독권, 감독 및 징계권한 및 기능을 제한하거나 감소시키도록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 (c) 의결요건 : 권한임무
-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권한 및 의무의 행사에 관한 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투표에 따라 행한다. 위원은 그 의결권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게 부여된 의무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단, 위원회가 본편 제437조d(a)의 (6) (7) (8) 또는 (9)에 따라 제소하기 위해 위원4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d) 회의, 선거위원회는 매월 1회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e) 활동준칙 : 인감의 신고 : 주된 사무소

선거위원회는 그 활동에 관한 준칙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법원에 의해 확인된 직인을 가지며, 주된 사무소를 컬럼비아특별구 또는 그 주변에 설치하여야 한다(단, 미국내 어디에서든지 회의를 소집하고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f) 사무국장 및 일반고문 : 임명 및 보수 : 인원의 채용과 보수 및 사무국장의 보조직원채용 : 연방기관 및 부서의 보조인원과 시설의 사용 : 소송에 관한 변호

(1) 선거위원회는 위원회에 의하여 임명되는 1명의 사무국장과 1명의 일반고문을 둔다. 사무국장의 실질급료는 행정별표의 IV등급의 기본급의 비율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된다. 일반고문의 실질급료는 행정별표의 V등급의 기본급의 비율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된다. 선거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무국장은 경합적 업무에의 지명에 관한 U.S.C. 제5편의 규정과 관계없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보조직원을 채용하여 그의 급료를 정할 수 있다.

(2) 선거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무국장은 U.S.C. 제5편3109조(b)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범위에서 임시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그러나 종합별표(5 U.S.C. 532)의 G.S-15등급에 해당하는 실질기본급 상당의 일급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3) 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거위원회는 미합중국의 다른 행정기관과 부서의 인원과 시설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행정기관이나 부서의 장은 선거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는 보상을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인원·시설 기타 지원을 선거위원회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출정하여 변호할 수 있다.

(A) 선거위원회에 고용된 변호사나

(B)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임시로 고용한 고문변호사에 의한 다. 고문변호사의 임시고용은 경쟁직 임명에 관한 U.S.C. 제5편

<부 록>

의 규정에 관계없이 할 수 있으며, 그의 보수는 본편 제53장의 종장Ⅲ 및 제51장의 규정에 관계없이 정할 수 있다. 임시로 고용된 고문변호사의 보수는 선거위원회가 직원보수지급을 위해 마련한 자금에서 지불된다.

제437조d [선거위원회의 권한]

(a) 구체적 권한

선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1) 어느 누구에게나 특별명령이나 일반명령으로써 선거위원회가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선서하에 서면보고서 및 답변서를 제출케 하는 권한
- (2) 선서 또는 증언을 시키는 권한
- (3) 의장 또는 부의장이 서명한 소환장에 의하여 증인을 출석케하여 증언케하고 직무수행과 관련된 모든 증거서류를 제출시키는 권한
- (4) 소송절차나 조사에 있어서 선거위원회가 지정하는 사람앞에서 선서 증언에 의거하여 증언을 시키고 선서를 집행하며 (3)항과 같은 방법으로 증언과 증거제출을 강요할 수 있는 권한
- (5) 증인에게 법정에서와 마찬가지로의 요금과 여비를 지급할 권한
- (6) 이 법 및 제26편 제95장, 제96장의 규정을 실행하기 위하여 그의 일 반고용을 통하여 위원회의 이름으로(금지명령, 선고, 기타 적절한 구제를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본편 제437조 g(a) (8)에 따라 제기된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하고 상소할 권한
- (7) 본편 제437조f에 따라 조언을 제공할 권한
- (8) 이 법과 제26편 제95장, 제96장의 규정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U.S.C. 제5편 제5장의 규정에 따라 서류양식을 개발하고 규칙을 만들고 수정하고 철폐할 권한
- (9) 자발적으로 법의 준수를 장려하고 명백한 위법을 법준수기관에 보고하기 위하여 조사와 청문을 신속히 실시할 권한

(b) 선거위원회의 소환과 명령에 복종시키기 위한 사법명령

본조(a)에 따라 발행한 선거위원회의 소환이나 명령에 불복할 경우 선거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관할구역의 지방법원은

복종명령을 발할 수 있다. 법원의 명령에 불복하면 법정모독죄로 처벌될 수 있다.

(c) 정보 공개에 대한 민사상 의무

어떤 사람도 선거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다른 사람(위원회 또는 미국 정부 제외)에게 정보를 공개할 민사상 의무는 없다.

(d) 의회 또는 예산평가위원회에 대한 동시송달 : 입법추천·증언 또는 입법논평의 사전제출

(1) 선거위원회가 대통령 또는 예산관리국에게 예산평가서 또는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는 그의 사본을 동시에 의회에 송달하여야 한다.

(2) 선거위원회가 의회 또는 의원의 요청에 따라 입법추천·증언 또는 입법논평을 대통령이나 예산관리국에 제출할 때는 동시에 그것을 요청한 의회 또는 의원에게 그 사본을 송달해야 한다. 미국의 어떤 관리나 기관도 선거위원회에게 그 입법추천이나 증언이나 입법논평을 의회에 제출하기전에 자기에게 제출하여 승인·논평 또는 검토를 받으라고 요구할 권한은 없다.

(e) 실행을 위한 유일한 민사구제책

본편 제437조g(a) (8)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조(a) (6)에 따라 선거위원회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권한은 이 법의 규정을 실행하는 유일한 민사구제수단이다.

제437e조 (삭 제)

제437조f [자문]

(a) 개인·후보자 또는 후원자의 요청 : 주제 : 답변시기

(1) 이 법 제26편 제95장, 제96장 또는 위원회가 정한 명령 또는 규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특정거래나 행위에 관해서 완전한 서면요청을 받으면 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그 거래나 행위에 관해서 서면으로 자문의견서를 그 사람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만일 60일 기간중 어떤 후보자나 그 후원회가 그 정당과 관련된 연방직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자문을 구해오면 위원회는 완전한 서면요청

<부 록>

을 받은 후 20일 이내에 그 요청사항에 대한 자문을 제공해야 한다.

(b) 명령·규칙의 최초의 제안 및 자문에 적용될 절차

이 법이나 제26편 제95장, 제96장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규에 관하여 선거위원회는 본편 제438조(d)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명령 또는 규칙으로서만 처음으로 제안할 수 있다. 자문성격의 의견은 위원회 또는 그의 피용자가 본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발할 수 없다.

(c) 자문을 신뢰할 수 있는 자 : 선의의 신뢰자에 대한 보호범위

(1) 선거위원회가 본조(a)에 따라 제공한 자문은 다음과 같은 사람에게 의하여 신뢰될 수 있다.

(A) 자문이 제공된 것과 관련된 특정거래 또는 행위에 관계된 자

(B) 자문이 제공된 것과 관련된 특정거래 또는 행위와 모든 중요한 점에 있어서 구별이 안되는 특정거래나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자

(2) 다른 법규정과 관계없이 (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의 규정 또는 사실인정을 신뢰한 자, 또는 이것을 신뢰하여 선의로 행위한 자는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이 법이나 제26편 제95장, 제96장에서 규정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d) 요청의 공개 : 일반관계자에 의한 논평서의 제출

위원회는 본조(a)에 따른 자문요청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문을 제공하기 전에 선거위원회는 요청서공개 후 10일 이내에 관계자가 제출한 논평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제437조g [시행]

(a) 행정적·사법적 처리 및 소송절차

(1) 이 법 또는 제26편 제95장, 제96장의 규정 위반이 발생했다고 믿는 자는 선거위원회에 고소할 수 있다. 그 고소는 서면으로 하고, 고서자의 서명과 서약이 있고 공증되어야 하고 위증벌을 조건으로 하고, U.S.C. 제81편, 제1001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선거위원회는 고소 접수 후 5일 이내에 고소장에 범법자로 주장된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선거위원회는 기각투표 이외의 어떤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그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통지 후 15일 이내에 그 고소를 근거

로 그에게 소송이 제기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서면으로 증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선거위원회는 신분을 밝히지 않는 자의 고소만을 근거로하여 본조에 따른 어떤 조사를 하거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2) 선거위원회가 (1)항에 따른 고소접수나 정상적인 감독임무 수행과정 중 획득한 정보를 근거로 어떤 자가 이 법 또는 제26편 제95장, 제96장을 위반했거나 위반하려고 한다는 것을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위원 중 4명의 찬성으로 결정한 경우, 선거위원회는 의장이나 부의장을 경유하여 그 주장된 위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통지에서는 그 위반주장에 관한 사실상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선거위원회는 본조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나 회계감사를 포함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3) 선거위원회의 일반고문은 피고에게 자기가 (4) (A) (i)의 상당한 이유에 관한 투표를 진행하도록 선거위원회에게 건의했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그 통지에서 일반고문은 그 사건에 있어서 자기의 입장을 말하는 개요서를 포함해야 한다. 피고는 그 개요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사건의 법적 사실적 문제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고 일반고문의 개요서에 답하는 개요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 개요서는 선거위원회의 비서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선거위원회는 (4)항에 따른 절차를 밟기 전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
- (4) (A) (i) (ii)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위원회가 위원 중 4명의 찬성으로 어떤 자가 본 법이나 제26편 제95장, 제96장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려고 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 선거위원회는 최소한 30일간 상담·화해·설득등 비공식 방법으로 그 위반을 바로 잡거나 예방하고 관계당사자와 조정협정을 맺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선거위원회는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동안 위반의 교정 또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수 있다. 선거위원회는 위원 중 4명의 찬성이 없으면 본조항에 따른 조정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조정협정은 이에 위반하지 않는 한 선거위원회로 하여금 (6) (A)에 따른 민사소송제기를 포함하여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완전한 장치이다.

<부 록>

- (ii) (i)에 관한 선거위원회의 규정이 선거 직전 45일 기간 중에 일어난 경우, 선거위원회는 적어도 15일 동안 (i)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그 위반을 교정 또는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B) (i) (A)에 따라 선거위원회가 시도하는 조정작업과 관련하여 선거위원회 또는 어떤 사람이 취하는 조치나 그 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피고와 선거위원회의 서면동의없이 선거위원회가 공표할 수 없다.
 - (ii) 선거위원회와 피고 사이에 조정협정이 합의되면 선거위원회는 선거위원회 및 피고가 연명한 조정협정을 발표하여야 한다. 선거위원회가 어떤 자가 이 법이나 제26편 제95장, 제96장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경우, 선거위원회는 그 결정을 공표하여야 한다.
- (5) (A) 선거위원회가 이 법 또는 제26편 제96장의 위반이 있었다고 믿을 경우, (4) (A)에 따라 체결하는 조정협정 속에 조정협정에 관련되는 자는 5,000달러, 또는 그 위반에 관련된 기부금이나 결비중에 상당한 금액에서 다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 (B) 선거위원회가 이 법 또는 제26편 제95장, 제96장을 알면서 고의로 위반했다고 믿을 경우, (4) (A)에 따라 체결되는 조정협정 속에 그 해당된 사람은 10,000달러 또는 그 위반에 관련된 기부금이나 경비의 200%에 상당한 금액 중 다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또는 320조 위반이고 위반에 관련된 총액의 300%이상이고 50,000달러이하인 경우이거나 위반에 관련된 1000%인 경우) .
 - (C) 선거위원회가 위원 중 4명의 찬성으로 본조(d)에 따라야 하는 이 법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제26편 제95장, 제96장을 고의로 위반하였거나 위반하려고 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 선거위원회는 (4) (A)의 제한조건에 관계없이 미합중국 법무장관에게 그러한 명백한 위반사실을 알릴 수 있다.
 - (D) 어떤 자가 선거위원회와 (4) (A)에 따라 조정협력을 체결한 경

우에도 선거위원회는 만일 그가 조정협정의 어떤 규정을 위반했다고 믿을 경우 (6) (A)에 따라 그 구제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선거위원회가 민사소송에서 구제를 받기 위하여서는 선거위원회는 다만 그가 조정협정의 요건을 전부 또는 일부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대입 하면 된다.

- (6) (A) 선거위원회가 이 법 또는 제26편 제95장·제96장의 위반을 (4) (A)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교정하거나 방지할 수 없을 경우, 선거위원회는 위원 중 4명의 찬성으로 임시 또는 영구금 지명령·제지명령 또는 기타 적절한 명령(5,000달러와 그 위반에 관련된 기부금이나 경비에 상당한 금액 중 다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벌금을 과하는 것을 포함)을 포함하여 구제를 위한 소송을 피소자가 발견되거나, 거주지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관할 미합중국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B) (A)에 따라 선거위원회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있어서 관계자가 이 법 또는 영구금지명령이나 제지 명령인 경우) 위반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적절히 보이면 법원은 5,000달러와 그 위반사건에 관련된 기부금 또는 경비에 상당한 금액 중 다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의 벌금을 포함하여 임시 또는 영구 금지명령·제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 (C) (A)에 따라 선거위원회가 제기한 구제를 위한 민사소송에 있어서 선거위원회가 관계자가 이 법 또는 제26편 제95장·제96장을 알면서 고의로 위반했다고 각입한 사실에 대해 법원이 결정을 내리면 법원은 10,000달러와 그 위반에 관련된 기부금 또는 경비의 200%에 상당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벌금을 과할 수 있다.(또는 320조위반의 경우에 그 위반금액이 300%이상이 고 50,000달러 이하거나 위반금액의 1000%인 경우)
- (7) (5)항 및 (6)항에 따른 소송에 있어서 미합중국 지방법원에 출두를 요구하는 증인에 대한 소환장은 다른 지방에도 영향이 미친다.
- (8) (A) (1)항에 따라 제출한 고소에 대한 선거위원회의 기각명령이나 고소제출 이후 120일 동안 선거위원회가 그에 대한 조치거부에 불복한 이후 당사자는 컬럼비아특별구의 미합중국 지방법원에 청원을

<부 록>

제기할 수 있다.

- (B) (A)에 따른 청원은 선거위원회가 고소를 기각했을 경우 기각후 60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C) 본절(paragraph)에 따른 소송절차에 있어서 법원은 고소의 기각이나 조치거부가 법에 배치 된다고 선언하고 선거위원회로 하여금 30일 이내에 그 선언에 따를 것을 지시할 수 있으며 만일 불이행시에는 고소인은 원래의 고소에 포함된 위법을 교정하기 위하여 고소인의 이름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9) 본항에 따른 지방법원의 판결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고등법원이 내린 지방법원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긍정 또는 보류판결의 U.S.C. 제28편, 제1254조에 규정된 사건이송명령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미합중국 대법원에서 심리하게 된다.
- (10) 본항에 따라 제기되는 소송은 법원소송사건일람표에 기재되어야 하는데(본항이나 본편 제437조h에 따라 제기되는 다른 소송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소송사건에 앞서 기재된다.
- (11) 선거위원회가 조사결과 어떤 자가 (6)항에 따른 소송절차에서 나온 법원의 명령을 위반했다고 결정한 경우 선거위원회는 법원에 대하여 그 자를 민사모독죄로 판결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며, 만일 그 자가 알면서 고의로 위반했다고 믿으면 형사모독죄로 판결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12) (A) 본조에 따라 행한 통지 또는 조사는 그 통지를 받은 사람이나 조사대상자의 서면동의 없이는 선거위원회 또는 다른 누구도 공표할 수 없다.
 - (B) 선거위원회의 위원, 종업원 기타 누구든지 (A)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원, 종업원 기타 누구든지 알면서 고의로 (A)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5,000달러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 (b) 강제소송제기전 보고서 제출불이행자에 대한 통지 : 미제출자 및 보고서의 공표
관련된 선거직전에 제434조(a) (2) (A) (iii)에 따라 요구된 보고서 또

는 제434조(a) (2) (A) (i)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본조(a)에 따른 소를 제기하기 전에 선거위원회는 그 자에게 요구된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통지해야 한다. 통지 후 업무일 4일 동안 만족스런 반응이 없으면 선거위원회는 본편 제438조(a) (7)에 따라 선거전에 그 자의 명단과 제출하지 않은 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c) 명백한 위반에 관한 법무장관의 보고

선거위원회가 어떤 명백한 위반을 법무장관에게 보고하면 법무장관은 그 명백한 위반에 관하여 취한 조치를 보고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후 최종처분이 있을 때까지 30일 마다 보고를 전달해야 한다.

(d) 형벌 : 변호 : 위반의 감정

(1) (A) 기부금, 후원금, 또는 지출금의 조성, 수수, 보고에 관한 이법의 규정을 그 정을 알면서 고의로 위반한 자는 ,

(i) 연간 총25,000달러이상을 위반한 자는 미연방법 18편의 의거하여 벌금형을 받거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양자를 병과할 수 있다.

(ii) 연간 총 2000달러이상 25,000달러미만을 위반한 자는 미연방법 18편에 의거하여 벌금형이나 1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양자를 병과할 수 있다.

(B) 제441조b(b) (3)을 알면서 고의로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본항의 형벌을 1년에 총 250달러이상의 위반사건에 적용되어야 한다. 제441조b(b) (3)의 위반은 본편, 제441조c(b) · 제441조f 또는 제441조g의 위반과 통합될 수 있다.

(C) 본편, 제441조h를 알면서 고의로 위반했을 경우 관련된 기부금 또는 경비[지출액]가 1,000달러 이상이면 아니건 관계없이 본항의 형벌이 적용된다.

(D) 연간 총 10,000달러 이상의 액수로 320조를 그 정을 알면서 고의로 위반한 자는

(i) 그 액수가 25,000달러이하인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형

(ii) 그 액수의 300%이상의 벌금이나 50,000달러이하의 벌금 혹

<부 록>

은 그 위반의 100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iii) (i)문상의 징역형과 (ii)문상의 징역형을 병과할 수 있다.

- (2) 이 법이나 제26편 제95장·제96장의 규정위반으로 제기된 형사소송에서 피고는 (a) (4) (A)에 따라 피고와 선거위원회간에 결합된 조정협정을 증거로 제시하여 그것이 위반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아직도 유효하다고 증언함으로써 그가 그 주장된 위반을 행할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 (3) 이 법 또는 제26편 제95장, 제96장의 규정위반으로 제기된 형사소송에 있어서 수소법원은 위반의 중대성을 숙고하고 유죄판결시 피고에게 부과될 형벌의 적정여부를 생각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A) 소송이 제기된 위반내용인 특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a) (4) (A)에 따라 피고와 선거위원회 사이에 체결된 조정협정의 내용인지 여부
 - (B) 그 조정협정이 유효인지 여부
 - (C) 피고가 관련위반사건에 관하여 조정협정에 따랐는지 여부

제437조 h [사법심사]

선거위원회, 어느 정당의 전국위원회 또는 대통령직 선거에 있어서 투표권이 있는 자는 관할연방지법원에 이 법의 어느 규정의 합헌성을 해석하는데 적절한 선언적 재판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방법원은 즉시 이 법의 합헌성에 관한 모든 문제를 연방 순회지방법소법원에 증명하여 그 판결을 하고, 재판관 전원이 배석하여 심리한다.

제438조 [행정적 규정]

(a) 선거위원회의 의무

선거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의무가 있다.

- (1)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식을 만들고
- (2) 부기와 보고에 관한 통일된 방식을 권고하는 책자를 준비하고 출판하여 본 법에 따라 보고서와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된 모든 사람

에게 제공하고

- (3) 이 법의 목적과 일치되도록 편철·부호화·교차색인의 체실을 개발하고
- (4) 선거위원회는 제출된 보고서와 명세서를 접수한 후 48시간 이내에 공공열람이 가능하게 하고 복사신청자가 자비로 복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복사된 내용은 정치위원회의 이름과 주소를 사용하여 선거위원회로부터 기부금을 얻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자에 의해 기부금을 얻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팔 수 없다. 정치위원회는 기부자의 이름과 주소가 위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특정한 보고서에 10개의 가명의 명단을 첨부함으로써 제출된 각 보고서에서 그 가명을 사용할 수 있다. 상하원 사무총장 또는 선거위원회는 이 명단을 공적 기록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 (5) 그 지정서·보고서와 명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단 하원의 후보자에게만 관련된 지정서·보고서 및 진술서는 접수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6) (A) 이 법에 따라 제출된 지정서·보고서 및 명세서의 누적인 색인을 편찬하여 보존하고, 그 색인들을 정기적으로 출판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구입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B) 복수의 후보자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와 명세서의 분철된 누적인 색인과 그 색인속의 복수 후보자위원회의 명단을 편찬하여 보존하고 개정해야 하며
(C) 복수후보자위원회의 명단을 편찬·보존하고, 그 명단을 개정하여 매월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7) 이 법이 요구하는 보고서제출을 거부하는 후원회의 명단을 준비하여 정기적으로 출판해야 하며
- (8) 본보의 (d) 조항에 따라 이 법의 규정을 실행하기 위하여 명령·규칙 및 양식을 제정해야 하며
- (9) 선거위원회는 이 법에 그 임무를 수행하는 활동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와 입법건의안과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치를 매년 7월 1일 이전에 대통령과 의회의 양원에 전달해야 한다.

<부 록>

(10) 선거위원회는 연방선거행정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절차조사를 위한 전국적인 지휘장소(clearing house)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선거위원회는 본질의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 본질에서 작성된 보고서와 연구서는 일반인에 대하여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연방정부의 기관 및 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무료로 복사가 허용되어야 한다.

(b) 회계감사 및 현장조사

선거위원회는 본편 제434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된 정치위원회에 대해서 회계감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편 제95장, 제96장에 따라 후보자나 후원회가 받은 지불금액의 증명·지불금액의 수령 및 사용에 관한 회계감사와 현장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선거위원회는 회계감사와 현장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지정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가 이 법의 실질적인 준수를 위해서 요구되는 적합요건(threshold requirements)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하여 선발된 선거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서 내부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 준수를 위한 시발요건은 위원회가 확립한다. 선거위원회는 위원 중 4명의 찬성으로 선거위원회가 확립한 시발요건을 충족하는 어떤 위원회에 대하여 회계감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 회계감사는 찬성투표 후 30일 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단, 본항에 따라 후보자의 후원회에 대한 회계감사는 그 위원회가 수권된 선거 후 6월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c) 공문서규정과 정보수집활동

본조의 (a) (1)에 따라 선거위원회가 규정한 공문서 양식과 본조에 따른 위원회의 정보수집활동은 U.S.C. 제44편, 제3512조의 규정에 따라서는 안된다.

(d) 명령·규칙 또는 양식 : 반포 적용절차 등

(1) 선거위원회는 본조 또는 이 법의 다른 규정에 따라 명령·규칙 또는 양식을 제정하기 전에 상원과 하원에 본항에 따라 명령·규칙 또는 양식에 관한 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설명서에서는 제안된 명령·규칙 또는 양식을 설명하고 상세한 설명과 입법취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 (2) 상·하원이 본조에 따라 선거위원회가 제출한 명령 또는 규칙안을 제출 후 30일 입법기간 내에 결의로써 승인하지 않은 경우, 선거위원회는 그 명령·규칙 또는 양식을 제정할 수 있다.
- (3) 본항에서 “입법기간”이라 함은 상원에 제출된 설명서에 관하여는 상원이 회기 중인 역일을, 하원에 제출된 설명서에 관하여는 하원이 회기 중인 역일을 말한다.
- (4) 본항에 있어서 “명령” 또는 “규칙”이라함은 하나의 분리가능한 법령을 시행하는 규정 또는 일련의 상호관련된 규정을 말한다.
- (5) (A) 그 명령·규칙 또는 양식에 관계있는 결의안을 상원의 심의로부터 면제하는 동의안 또는 그 결의안에 대한 심의절차를 밟도록 하는 동의안은 가장 우선하여 다루어지며 토론없이 결정된다.
(B) 하원의 위원회가 어떤 양식·명령 또는 규칙과 관련있는 결의안을 보고하면(비록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이전의 동의가 부결되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그 결의안을 심의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는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동의안은 우선적으로 다루어지며 미해결로 남겨져서는 안된다.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상정할 수 없고, 동의안을 의결하거나 부결한 투표를 재심사하도록 하는 동의안을 제출할 수 없다.
- (e) 명령 또는 규칙에 대한 선의의 신뢰의 보호범위
다른 법률규정에 관계없이 본조의 규정에 따라서 선거위원회가 제정한 명령과 규칙을 신뢰한 자와 그 명령과 규칙에 따라 선의로 행위한 자는 그 행위의 결과로서 이 법 또는 제26편 제95장, 제96장에 규정한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다.
- (f) 선거위원회와 내국세청의 명령·규칙 및 양식의 반포 : 공조를 위한 의회에의 보고
선거위원회와 내국세청은 그 명령·규칙 및 양식을 제정함에 있어서 상호일치하는 명령·규칙 또는 양식을 반포하는데 상의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선거위원회는 본항을 준수시키기 위하여 취한 조치를 의회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제439조 [주공무원에게 제출된 설명서 : 특정한 주의 정의 : 주공무원의 의무]

- (a) (1) 이 법에 따라 어떤 자에 의해 제출되도록 요구된 각 보고서와 설명서의 사본은 특정한 주의 주장관(또는 동등한 주공무원), 곤란한 경우에는 주선거운동보고서를 관리하도록 주법에서 규정한 그 주공무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그 주의 최고행정공무원은 그러한 공무원을 임명하고 그 임명을 선거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 (2) 본항에 있어서 “특정한 주”(appropriate state)라 함은 다음과 같은 주를 말한다.
 - (A) 정·부통령직 후보자선거를 위한 지명운동과 관련된 설명서와 보고서에 관해서는 후보자를 위해서 경비를 지출한 주이며
 - (B) 의회에 있어서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직 또는 준주나 보호령대표자직의 후보자의 선거지명운동이나 선거운동과 관련된 설명서와 보고서에 관해서는 후보자가 당선을 구하는 주이다. 단, 후원회 이외의 정치위원회에 대해서는 그 주에서 당선을 구하는 후보자에게 적용되는 보고서부분을 제출하는 것만이 요구될 뿐이며 주장관은 이를 보존해야 한다.
- (b) 주장관(또는 동등한 주공무원)과 본조의 (a) (1)에 따라 임명된 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가 있다.
 - (1) 이 법에 따라 제출이 요구된 모든 보고서와 설명서를 수령하여 순서대로 보관한다.
 - (2) (제출된 원본이나 마이크로필름 등에 의한 복사본으로) 그 보고서와 설명서를 접수 후 2년동안 보존한다.
 - (3) 제출된 각 보고서와 설명서는 가능한 한 빨리(접수 후 48시간이내) 공중열람 및 정상적인 업무시간에 복사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자의 비용부담으로 보고서 또는 설명서를 필사나 복사기로 복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 (4) 각 후보자에 관한 모든 보고서와 설명서의 현재의 목록을 편찬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439조a [일정한 목적을 위한 기부금의 사용]

(a) 허가된 사용- 후보자가 수락한 기부금과 공직에 있는 개인의 활동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후원금으로서 수수한 기타 후원금은 후보자나 개인이 이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1) 후보자나 개인의 연방직선거와 관련한 공인된 지출
- (2) 연방공직자의 의무와 관련된 통상적이고 필요한 비용
- (3) 1986년 내국세법의 170(c)항에 규정된 조직에의 기부
- (4) 상한없이 정당의 전국, 주, 지방위원회에 송금

(b) 사용의 금지-

(1) 일반- (a)항에 규정된 기부금이나 후원금은 개인이나 사적 용도로 전환될 수 없다.

(2) 전용- (1)문의 목적상 기부나 후원은 그 기부금이 연방공직자의 직무와 무관하거나 후보자의 선거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이하의 경우와 같은 개인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에는 전용된 것으로 본다.

- (A) 주택저당, 임대료나 사용료 등
- (B) 의복 구입
- (C) 선거와 무관한 차량비용
- (D) 컨트리클럽 회원권
- (E) 휴가나 선거와 무관한 여행비용
- (F) 일상식료품
- (G) 강습료
- (H) 선거와 무관한 각종 스포츠, 콘서트, 극장 등 유흥비용
- (I) 헬스클럽이나 기타 여가활동비용

제439b조 (삭 제)

제439조c [비용지출의 승인]

1975년 6월 30일에 끝나는 회계연도 동안에 5,00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법과 제26편의 제95장, 제96장에 따라 그 임무를 수행

<부 록>

하도록 선거위원회에게 비용지출이 승인된다. 1976년 6월 30일까지 6,000,000달러, 1976년 7월 1일부터 1976년 9월 30일까지 1,500,000달러, 1977년 9월 30일까지, 9,000,000달러, 1978년 9월 30일까지 7,811,500달러가 선거위원회가 비용지출할 수 있도록 승인된다.

제440조 (삭 제)

제441조 (삭 제)

제441조a [기부금과 경비의 제한]

(a) 기부금의 제한

- (1) 2 U.S.C.§441a (i) 와 315A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자도 다음 금액을 초과하여 기부를 하지 못한다.
 - (A) 연방직선거에 관한 후보자와 그의 수권정치위원회에 대해서는 총계 2,000달러
 - (B) 어느 후보자의 수권정치위원회는 아니나 전국적인 정당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정치위원회에 대해서는 1년에 총계 25,000달러
 - (C) 기타의 정치위원회((D)에서 규정한 위원회는 제외)에 대해서는 1년에 총계 5,000달러
 - (D) 정당의 주위원회에 의하여 창설되고 유지되는 정치위원회에 대하여는 연간 총 10,000달러
- (2) 어느 복수후보자 정치위원회도 다음 금액을 초과하여 기부할 수 없다.
 - (A) 연방직선거에 관한 후보자와 그의 수권정치위원회에 대해서는 총계 5,000달러
 - (B) 어느 후보자의 수권정치위원회는 아니나 전국적인 정당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정치위원회에 대해서는 1년에 총계 15,000달러
 - (C) 기타의 정치위원회에 대해서는 1년에 총계 5,000달러
- (3) 홀수연도의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이듬해 짝수연도의 12월 31일에 끝나는 기간동안 어떠한 자도 이하의 금액 이상을 기부할 수 없다.
 - (A) 후보자와 후보자의 수권위원회의 경우는 37,500달러

- (B) 37,500달러 이하의 금액을 전국정당의 정치위원회가 아닌 정치위원회에 대한 기부금으로 낼 수 있는 경우에는 57,500달러
- (4) (1)과 (2)의 기부금의 제한은 동일한 정당의 전국·주·지역 또는 지방위원회(그 하부위원회 포함) 인 정치위원회 사이의 양도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에 있어서 “복수후보자 정치위원회”라 함은, 6개월 이상기간 동안 본편의 제433조에 따라 등록했으며, 50명 이상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았고, 어느 주의 정당조직을 제외한 5명 이상의 연방직 후보자에게 기부를 했던 정치위원회를 말한다.
- (5) (1)과 (2)에서 규정한 제한에 있어서 회사·노동조합 또는 개인 및 이들의 양친·보조자·지부·부·과·지점과 개인의 집단에 의해 설립되고 재정지원을 받고 통제받으며 관리되는 정치위원회들이 한 모든 기부금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단일한 정치위원회가 기부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 (A) 본문의 제한은 공동기금조성활동으로 마련된 자금을 정치위원회들 사이에 양도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B) (1)과 (2)에 규정된 제한에 있어서 정당의 전국위원회나 주위원회에 의하여 설립되고 재정 지원을 받고 관리되고 통제되는 단일한 정치위원회가 한 모든 기부금은 단일한 정치위원회가 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C) 본문의 제한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연방직의 지명 또는 당선을 구하는 후보자의 주선거운동위원회와 다른 연방직의 지명 또는 당선을 구하는 그 후보자의 주선거운동위원회 사이의 자금의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i) 후보자가 실제로 그 두 개의 공직의 지명 또는 당선을 구할 때 그러한 양도가 행해지지 않는 경우
 - (ii) 사람들에 의한 기부금에 있어서 이 법의 제한이 그 양도금을 초과하지 않은 때
 - (iii) 후보자가 제26편 제95장, 제96장에 따라 자금을 받기 위하여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

<부 록>

부·과 또는 지방조직이 한 개 이상의 분리자금을 설치하고 재정지원을 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경우에 모든 분리자금을 (1)과 (2)의 제한조건에 따르게 하기 위해 단 한 개의 분리자금으로 취급한다.

- (6) 본항의 (1)과 (2)에 의하여 부과된 후보자에 대한 기부금제한은 각 선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미합중국 대통령을 위한 선거(대통령에 대한 보통선거 제외)가 실시되는 해에는 모든 선거를 하나의 선거로 간주한다.
- (7) (A) 후보자가 그를 대신하여 기부금을 받을 권한을 준 정치위원회에게 후보자 이름으로 이루어진 기부는 후보자에게 한 기부로 간주된다.
 - (B) (i) 후보자, 그의 수권정치위원회 또는 그들의 대리인의 요구나 제의로 협력·협의 또는 협조를 한 자에 의해 이루어진 지출은 그 후보자를 위한 기부금으로 간주된다.
 - (ii) 정당의 전국, 주, 지역위원회의 요구나 제안으로 협력하거나 상담하여 개인(후보자나 그 수권위원회는 제외)이 행한 지출은 당해정치위원회가 한 기부금으로 본다.
 - (iii) 후보자, 그의 선거운동위원회 또는 그의 수권대리인이 준비한 방송·서면·그림, 그밖의 형태의 선거운동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급·배부 또는 출판하는데 조달된 자금은 본절을 위한 경비로 간주한다.
- (C) 이하의 경우에,
 - (i) 개인이 선거운동매체를 위하여 지급을 한 경우와
 - (ii) 그러한 지급이 후보자나 후보자의 수권위원회와 협조하에 한 것이거나 또는 연방, 주, 지역 정당이나 그 위원회 또는 그 기관이나 사무관 등과 협력하에 한 것인 경우
그러한 지급이나 그 계약은 선거운동매체나 그 정당에 의하여 후원되는 후보에 대한 기부로 취급하거나 후보자나 그 정당에 의한 지출로 본다.
- (D) 미합중국 부통령직 선거를 위하여 어느 정당의 지명을 받은 후보

자에게 또는 그를 위하여 행한 기부는 미합중국 대통령선거를 위한 후보자 또는 그를 위하여 행한 기부로 간주된다.

- (8) 본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제한에 있어서 어떤 자가 직접·간접으로 특정 후보자에게 행한 기부와 어떤 방법으로 용도가 지정되거나 중개인을 통하여 후보자에게 인도된 기부금은 모두 그 사람이 후보자에게 한 기부금으로 취급된다. 그 중개인은 그 기부금의 원출처 및 의도한 수취인을 위원회와 의도한 수취인에게 알려야 한다.
- (b) 미합중국 대통령후보자의 경비지출의 범위
 - (1) 제26편 제9003조(지불적격요건) 또는 제26편 제9033조(지불적격)에 따라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지불을 받을 적격있는 미합중국대통령직 후보자는 다음 금액을 초과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 (A) 대통령직 선거지명획득운동의 경우 10,000,000달러 단, 1개월에 있어서 지출총액이(본조의 (e)에서 증명되는) 그 주의 유권자수에 16센트를 곱한 금액 또는 200,000달러 중 다액을 초과할 수 없다.
 - (B) 대통령선거운동의 경우 20,000,000달러
 - (2) (A) 미합중국 부통령직선거를 위하여 정당의 지명을 받은 후보자가 행한 또는 그를 위해서 행한 지출은 미합중국대통령직선거를 위하여 그 정당의 후보자가 행한 또는 그를 위하여 행한 지출로 간주된다.
 - (B) 다음의 사람 또는 기관이 행한 지출은 부통령후보자를 포함한 후보자를 위하여 행한 지출이다.
 - (i) 지출을 행할 목적으로 조직된 후보자의 후원회 또는 기타대리인
 - (ii) 지출을 행하는 것을 후보자가 허가하거나 요청한 사람·후원회 또는 대리인
- (c) 물가지수 상승에 기인한 지출범위의 확대
 - (1) (A) 1976년부터 매년초 노동부노동통계국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전년도 12개월간의 물가지수와 기준연도의 물가지수와의 변동률의 차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증명하고 연방등록에 공표한다.
 - (B) (C)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2002년 이후의 연도에는,

<부 록>

- (i) (a) (1) (A), (a) (1) (B), (a) (3), (b), (d), (h)항에 의하여 확정된 제한은 (A)문에 의거하여 결정된 비율의 차이에 의하여 증액될 수 있다.
 - (ii) 위에 의하여 증액된 금액은 당해연도동안 유효하다.
 - (iii) (i)문상 조정이후의 금액이 100달러의 배수가 아니면 그 액수는 가장 가까운 100달러의 배수가 되는 금액으로 한다.
- (C) (a) (1) (A), (a) (1) (B), (a) (3), (h)의 제한의 경우에 증액은 홀수년도에만 하도록 하고 그러한 증액이 증액된 해의 앞의 해의 마지막 보통선거날 다음 날로부터 다음 보통선거일에 끝나는 기간인 2년간 유효하도록 한다.
- (2) (1)에 있어서
- (A) “물가지수”라 함은 노동통계국에서 매월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1년 평균을 말한다.
 - (B) “기준연도”라 함은
 - (i) (b) 와 (d)의 목적상 1974년과
 - (ii) (a) (1) (A), (a) (1) (B), (a) (3), (h)의 목적상 2001년
 - (d) 연방직후보자의 총선거운동과 관련된 전국위원회·주위원회 또는 주위원회의 하부위원회의 지출
- (1) 지출액제한 또는 기부금제한에 관한 다른 법규정에 관계없이 정당의 전국위원회, 하부위원회를 포함한 주위원회는 후보자의 총선거운동을 위하여 본항의 (2), (3) 그리고 (4)의 범위에서 지출을 할 수 있다.
- (2) 정당의 전국위원회는 그 정당에 가입된 미합중국대통령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2센트에 합중국의 유권자수(본조(e)에서 증명됨)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할 수 없다. 본절에 의한 지출액은 미합중국대통령후보자의 주선거운동위원회로서 일하는 정당의 전국위원회가 행한 다른 모든 지출액에 합산한 금액이다.
- (3) 정당의 전국위원회 또는 주위원회위 하부위원회를 포함한 주위원회는 그 당에 가입된 연방직후보자의 총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개주에서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지출을 할 수 없다.

- (A) 오직 1인의 의원만 낼 수 있는 주에서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선거를 위한 후보자의 경우, 다음 두가지 중 다액
 - (i) 2센트×유권자수(본조(e)에서 증명)
 - (ii) 20,000달러
- (B) 하원의원·준주나 보호령의 대표자의 선거후보자의 경우, 10,000달러
- (4) 정당에 의한 독립지출 대 통합지출-
 - (A) 일반- 정당이 후보자를 지명한 날이나 그 다음날이후 정당의 어떠한 위원회도 다음의 지출을 해서는 안된다.
 - (i) 선거주기동안 후보자에 관한 독립지출(301(17) 조에 정의) [(2 U.S.C. §431(17)]을 하게 된 선거기간의 여하한 때라도 후보자에 관하여 이 항상 통합지출을 해서는 안된다.
 - (ii) 선거주기동안 후보자에 관하여 이 항상의 통합지출을 하게 된 때 이후 선거주기중 어느 때라도 후보자에 관하여 독립지출을 하여서는 안된다.
 - (B) 적용- 이 문의 목적상 전국정당에 의하여 창설되고 유지되는 모든 정치위원회(의회선거위원회도 포함) 와 주정당에 의하여 창설되고 유지되는 모든 정치위원회(주위원회의 하부위원회도 포함) 는 하나의 위원회로 본다.
 - (C) 전용- 후보에 관하여 이 항에 의거 통합지출을 한 정당의 위원회는 선거주기중에 이 항상 통합지출을 하게 위하여 후보에 관하여 독립지출을 했거나 하려고 하는 정당의 위원회에 금전을 양도하거나 권한을 이양하거나 자금을 양도받거나 할 수 없다.
- (e) 추정유권자수의 증명 및 공표
1975년 1월 첫 주 그리고 그 후 매년 상무장관은 미합중국·각 주 및 각 의원선거구의 추정유권자수를 증명 일자 직후의 7월 1일자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증명하여 주고 연방등록에 공표하여야 한다. “유권자”라 함은 만18세 이상의 거주주민을 말한다.
- (f) 기부와 지출의 금지
후보자나 정치위원회는 본조의 규정에 위반함을 알면서 기부금을 받거나

<부 록>

또는 지출을 해서는 안된다. 정치위원회의 임원이나 종업원을 본조에 따른 기부 또는 지출의 한계를 위반함을 알면서 후보자를 위하여 또는 그가 사용하도록 기부금을 받거나 후보자를 위하여 지출을 해서는 안된다.

(g) 복수의 주에 지출하는 경비를 각 주에 있어서의 후보자의 지출범위에 귀속

선거위원회는 대통령지명을 구하는 후보자가 2개이상의 주에서 사용할 경비를 그 경비지출이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주의 유권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각 주의 지출범위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h) 상원의원후보자

이 법의 다른 규정에 관계없이 공화당 또는 민주당의 상원의원선거운동위원회 또는 정당의 전국위원회 또는 이러한 위원회들의 합동체가 총계 35,000달러 미만의 금액을 선거의 해에 미상원의원지명후보자나 선거후보자에게 기부할 수 있다.

(i) 개인자금으로부터 지출에 대한 회답허가의 증가된 한계

(1) 증가-

(A) 일반- (2)문에 따라 상원의원선거의 후보자에 관하여 상대개인자금액수가 한계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a) (1) (A)항 상의 제한은 증액된 상한으로 한다.

(B) 한계액수-

(i) 주간 경쟁과 공정한 선거공식- 이 항에서 (A)항에 규정된 후보자에 관한 선거주기중의 상한액수는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I) 150,000달러

(II) 투표연령인구에 0.04달러를 곱한 금액

(ii) 투표연령인구- 이 항에서 '투표연령인구'라 함은 상원의원선거 후보자의 경우에 그 후보자소속 주의 투표연령인구를 말한다.

(C) 상향조정된 제한- (ii)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A)문의 목적상 상대개인자금총액은

(i) 상한 금액의 2배이며 4배이하-

(I) 상향조정되는 상한은 적용되는 상한의 3배가 된다.

- (II) (a) (3)항상의 상한은 기부금이 (A)문상 증액된 상한으로 후보자가 이를 수령해도 되는 기간동안에 기부된 것이면 후보자에 관하여 기부된 기부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 (ii) 상한 금액의 4배이며 10배이하-
 - (I) 적용되는 상한의 6배로 상향조정된 금액
 - (II) (a) (3)항상의 상한은 후보자가 그 기부금을 수령하여도 되는 기간 중에 (A)문상의 상향조정된 한계액내에서 기부금이 기부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iii) 상한 금액의 10배-
 - (I) 상한 금액이 적용되는 상한의 6배가 될 것.
 - (II) (a) (3)항상의 상한은 기부금이 (A)문상 증액된 상한으로 후보자가 이를 수령해도 되는 기간동안에 기부된 것이면 후보자에 관하여 기부된 기부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 (III) 정당의 주나 전국위원회에 의한 지출에 관한 (d)항상의 상한은 적용하지 않는다.
- (D) 상대개인자금금액- 상대개인자금금액은 이하의 초과금액으로 한다.
 - (i) 동일한 선거에서 반대후보자가 쓴 개인자금의 최대총지출액
 - (ii)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쓴 개인자금의 총액이상
- (E) 후보자의 선거자금을 위한 특별규정
 - (i) 일반-(D) (ii) 상 개인자금의 지출 총금액을 결정하는 목적상 후보자의 수권위원회의 총수령이익을 포함한다.
 - (ii) 총수령이익- (i)의 목적상 '총수령이익'이라 함은 이하의 초과액을 말한다.
 - (I) 선거주기동안 후보자의 수권위원회의 총수령액의 50%상당액(후보자 개인자금으로부터의 기부금은 제외) 으로 선거와 관련하여 지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통선거가 있기 전래의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정해진 것.
 - (II) 선거주기동안 상대후보자의 수권위원회의 총수령액의 50%상당액(후보자 개인자금으로부터의 기부금은 제외) 으로 선

<부 록>

거와 관련하여 지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통선거가 있기 전해
의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정해진 것.

(2) 상향조정된 상한액 기준으로 기부금을 수령하는 시기

(A) 일반- (B)항에 따라, 이하의 조건으로 후보자와 후보자의 수권위
원회가 기부금을 받지 아니하고 (1)문상 상향조정된 상한하에 정
당위원회는 지출을 하지 아니한다--

(i) 304(a) (6) (B)항상 상대개인자금금액의 통지를 후보자가 수
령한 때까지

(ii) 그러한 기부금의 범위에서 앞서 수령한 기부금의 총액과 선거
주기동안에 이 항상 상향조정된 정당지출을 한 것을 더하여 이
상대개인자금액수의 110%가 초과되는 경우

(B) 상대후보자의 사퇴의 효과- 상대후보자가 후보직을 사퇴한 날부
터 상대후보자에게 기부된 것을 기준으로 상향조정된 상한액수의
한도에서 후보자와 후보자의 수권위원회는 기부금을 받아서는 안
되고, 정당은 상향조정된 상한상 어떤 지출도 하여서는 안된다.

(3) 초과기부금의 처분-

(A) 일반- (1)문상 증액된 상한에서 후보자와 후보자의 수권위원회가
수령한 기부금총액은 그 기부가 관련된 선거에서 그렇지 않은 경
우라면 지급되지 않았을 것은 최소한 선거일 50일 전에 이하의
(B)문에 정해진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B) 기부자에게 반환- 후보자나 후보자의 수권위원회는 그 기부를 한
사람에게 초과기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j) 개인대출금의 상환-2002년 초정당선거개혁법의 발효일 이후에 선거와
관련하여 개인대출을 받은 바가 있으면 후보자나 후보자의 수권위원회
는, 250,000달러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후보자나 그 수권위원회
에게 기부된 금전으로부터 대출된 것을 그 선거일 이후에 상환하여서는
안된다.

제441조b [국립은행 ·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의한 기부 또는 지출]

(a) 국립은행 또는 의회의 법률을 근거로 조직된 회사가 어떤 정치직의

선거 또는 어떤 정치직에 대한 후보자를 선출하는 예비선거나 전당대회 또는 간부회의와 관련하여 기부 또는 지출을 하는 것은 위법이다. 또 회사나 노동조합이 정·부통령선거인 또는 의회에서의 상·하의원, 준주 및 보호령의 대표자가 선출되는 선거와 관련하여 또는 상기공직에 대한 후보자선출을 위하여 개최된 예비선거·전당대회 또는 간부회의와 관련하여 기부 또는 지출을 행하는 것은 위법이다. 또 후보자·정치위원회 또는 기타의 자가 알면서 본조에 의해 금지된 기부금을 수령하거나, 또는 회사 또는 국립은행의 간부직원이나 이사 또는 노동조합의 간부직원이 본조에 의하여 금지된 회사·국립은행 또는 노동조합에 의한 기부 또는 지출을 승인함은 위법이다.

- (b) (1) 본조에 있어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종업원이 참여하여 불평·노동쟁의·노임·임금비율·작업시간·작업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주와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교섭을 벌일 목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대리인이나 종업원대표위원회 등의 모든 종류의 조직을 말한다.
- (2) 본조와 제15편 제79조1(h)에 있어서 “기부금 또는 지출경비”라 함은 301조에서 규정한 용례의 기부금이나 지출을 포함하고, 본조에서 언급한 공직의 모든 선거와 관련하여 또는 선거운동매체에 관련하여 후보자·선거운동위원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 직접·간접의 지불액·배당금·대부금·전도금·예금·현금·용역 기타 재산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단, 국립 또는 주립은행이 해당 은행법 및 규칙에 따라 정상업무과정에서 행한 금전의 대부는 제외) . 단, 다음 열거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 (A) 회사가 그 주주·임원 또는 관리인 및 그들의 가족에게 또는 노동조합이 그의 회원·가족에 대하여 어떤 문제에 대하여 통신하는 경비
 - (B) 회사가 그의 주주·임원·직원 및 가족을 목표로 하는 또는 노동조합이 그 조합원과 가족을 목표로 하는 초당적 등록비 및 투표참가운동경비
 - (C) 회사·노동조합·회원조합·협동조합 또는 자본주식없는 회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할 별도의 분리자금에 대하여 한 기부금의

<부 록>

설치·관리·모금

(3)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위법이다.

- (A) 그 자금이 폭력·직장차별·재정보복이나 그러한 사실의 강박으로 얻은 돈이나 또는 이자·요금·기타 노동조합가입조건 또는 취직조건에 의한 돈이나 또는 모든 상업거래에서 얻은 돈으로 기부 또는 지출을 행하는 것
- (B) 어떤 자가 종업원에게 그러한 자금을 기부할 것을 권유하면서 그 자금의 정치적 목적을 알려 주지 않는 것
- (C) 어떤 자가 종업원에게 그러한 자금을 기부할 것을 권유하면서 그 당시에 종업원에게 기부를 거부해도 보복을 받지 않고 기부를 거부할 권리를 알려주지 않는 것

(4) (A) (B),(C),(D)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위법이다.

- (i) 법인이거나 또는 법인이 설치한 분리자금이 그 주주·임원 또는 관리직원과 그들 가족이외의 사람들에게 기부를 권유하는 것
 - (ii)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이 설치한 분리자금이 그 조합원 및 그들의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기부를 권유하는 것
- (B) 회사나 노동조합 또는 회사나 노동조합이 설치한 분리자금이 1년에 2회에 걸쳐 서면으로 주주·임원·관리직원·종업원 또는 그들의 가족에게 기부를 권유하는 것은 본조에 따라 위법이 되지 않는다. 본절(B)에 의한 권유는 주주·임원·관리직원 또는 종업원의 주소지로 우편으로 하여야 하며, 권유하는 회사·노동조합 또는 분리자금은 누구든 50달러 또는 그 이하의 기부를 하며, 누구는 기부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없게 되어있어야 한다.
- (C) 본항은 회원조합·협동조합·자본주식없는 회사 또는 그러한 단체가 설치한 분리자금이 그 소속원들에게 기부를 권유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 (D) 본항은 업종별협회나 그 협회가 설치한 분리자금이 주주·임원·관리직원과 그들의 가족에게 기부를 권유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다. 다만, 그러한 권유는 회원회사의 별도의 승인을 받되 회원회사는 업종별협회의 권유를 1년에 한 번 이상 승인해서는 안된다.

- (5) 다른 법에 관계없이 법률이 회사에게 주주·임원 또는 관리직원에 대하여 허용한 자진기부권유방법 또는 회사가 설치한 분리자금에 자진기부토록 하는 방법은 노동조합에게도 그 또는 자본주식없는 회사 또는 그들이 설치한 별도의 분리기금이 그 조합원이나 회원들에게 그 자금에 기부하라고 권유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 (6) 자진기부를 권유하는 방법과 자진기부토록 만드는 방법을 이용하는 회사 및 그 자회사·분점·계열회사 분점들은 그들 회사에서 일하는 회원의 노동조합에게 그 방법을 서면요청서와 소요경비만을 받고 이용케 하여야 한다.
 - (7) 본조에 있어서 “임원 또는 관리직원”이라 함은 시간제가 아닌 월급제로 지급되며, 정책수립·경영·전문지식 또는 감독책임을 진 회사에 고용된 개인을 말한다.
- (c) 선거운동매체에 관한 규정
- (1) 적용대상 선거운동매체- 이 항의 목적상 ‘적용대상 선거운동매체’라 함은 이 조의 (a)항에 규정된 실체에 의하여 행해지는 선거운동매체나 이 항의 (a)에서 규정하는 실체에 의하여 후원되는 자금을 사용하는 기타 사람에 의하여 행해지는 선거운동매체를 의미한다.
 - (2) 제외- (1)문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 선거운동매체’에는 미국시민이나 미국국적자 또는 적법한 연주권자인 개인에 의하여 직접 제공된 자금에 의하여 배타적으로 지불된 매체인 경우일 때는 501(c) (4) 조직이나 이 법 304(f) (2) (E)항에 의거하여 조직된 정치조직(내국세법 527(e) (1)에 규정)에 의한 매체는 제외한다. 앞문의 목적상 ‘개인이 직접 제공한’ 것에는 이 조문의 (a)항에 규정된 실체가 출처인 자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 (3) 특별운영규칙-
 - (A) (1)문상 정의-선거운동매체는, (a)항에 규정된 실체가 직접이나 간접으로 매체의 비용의 어느 액수라도 지불을 한 경우에는, (a)항에 규정된 실체에 의한 것으로 다룬다.

<부 록>

- (B) (2)문상의 예외- (a)항에 규정된 여하한 실체로부터 자금을 받거나 사업활동으로부터 출연받은 501(c) (4)항 조직은, 개인만이 기부한 분리회계로부터 매체에 대하여 그 조직이 지급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매체에 대하여 그 자금으로부터 지불한 것으로 본다.
- (4) 정의와 규정- 이 항의 목적상
 - (A) '501(c) (4) 조직'이라 함은-
 - (i) 1986년 내국세법의 501(c) (4)항에 규정되고 501(a) 상 면세대상인 조직과
 - (ii) (i)문에 규정된 조직으로서 그 지위의 결정을 위하여 내국세의 적용을 받는 조직을 말한다.
 - (B) 지불에 대한 계약을 한 것은 지불을 한 것으로 취급한다.
- (5) 내국세법과의 조정-이 항의 어느 것도 1986년 내국세법에서 금지하는 활동을 한 경우에는 1986년 내국세법 501(a)항상 면세되는 조직으로 보지 않는다.
- (6) 대상 매체에 대한 특별규정-
 - (A)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2)문은 당해 문에 규정된 조직에 의하여 하게 되는 대상 매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B) (A)문의 목적상 '대상을 가지는 매체'라 함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 전파된 선거매체나 케이블이나 위성에 의한 매체 그리고 대통령이나 부통령직 외의 공직에 대한 후보자를 언급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관련선거인단에 대해 그 대상을 삼은 것이 된다.
 - (C) 정의- 이 문의 목적상 매체는 304(f) (3) (C) 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관련선거인을 대상으로' 한다.

441조c [정부계약체결자의 기부]

(a) 금지사항

- (1) 미합중국 또는 그 부 또는 청과 용역제공·자재·보급품 또는 장비의 공급, 토지건물의 매도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그 계약수행에 대한 지급 또는 그러한 자재·보급품·장비·토지 또는 건물

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의회의 지출승인된 자금에서 이루어질 경우, 계약협상개시부터

(A) 계약수행완료 또는

(B) 자재·보급품·장비·토지 또는 건물공급을 위한 협상완료 또는 공급완료 중에서 보다 나중에 완료된 것 사이에 직접·간접으로 금전 기타 가치물을 정당·위원회·공직후보자 또는 누구에게든지 정치적 목적으로 또는 사용하도록, 기부하거나 그런 기부를 하겠다고 명백히 또는 암시적으로 약속하는 것은 위법이다.

(2) 그 기간동안에 그 사람에게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알면서 기부를 권유하는 것은 위법이다.

(b) 분리자금

본조는 회사·노동조합·회원조합·협동조합 또는 자본주식이 없는 회사가 어떤 자를 연방직에 대한 지명이나 당선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별도의 분리자금을 설립·관리 또는 그 자금에 대하여 기부를 권유하는 것은 본편 제441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자금의 설립, 관리 또는 그 자금에 대한 기부의 권유가 위법이 되지 않는 한 방해되지 않으며 위법으로 되지 않는다.

(c) “노동조합”의 정의

본조에 있어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본편 제441조b (b) (1)에서 정의한 것과 같다.

제441조d [설명서 및 권유서의 공시 및 배부 : 신문·잡지 지면난에 대한 자금청구]

(a) 정치위원회가 대중방송매체, 신문, 잡지, 옥외광고시설, 우편, 그리고 기타 일반공공정치광고등의 매체를 위하여 대금을 지불할 때나 어떤 개인이 방송국·신문·잡지·옥외광고시설·직접우송 또는 기타 형태의 일반대중정치선전수단을 통하여 기부금을 권유할 때나 선거운동매체에 대한 지불을 한 때에는 언제든지 그 통신기관은,

(1) 만일 후보자·후원회 또는 대리인을 위하여 통신비가 지급되고 이들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 그 수권정치위원회가 통신비를 지불했다

<부 록>

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야 하고

- (2) 만일 타인이 지불했으나 후보자·그의 수권정치위원회 또는 그의 대리인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 통신비가 그러한 타인에 의해 지불되었고 그 수권정치위원회에 의하여 승인되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야 하고
 - (3) 만일 후보자·후보자의 수권정치위원회 또는 그의 대리인의 승인을 받지 못했을 경우, 통신비를 지불한 사람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웹주소와 함께 그 통신이 후보자나 그의 위원회에 의하여 승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 (b) 후보자나 후보자의 대리인에게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사용될 신문·잡지의 지면을 파는 사람은 그 지면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청구하는 요금과 비교하여 초과되는 요금을 청구해서는 안된다.
- (이하 생략)

제441조e [외국인에 의한 기부와 후원]

- (a) 금지-이하와 같은 경우는 위법이다.
- (1) 외국인이 직접이나 간접으로-
 - (A) 연방, 주, 지방 선거와 관련하여 기부나 후원을 할 명시적 묵시적 약속을 하거나 금전 기타 물건을 기부하거나 후원하는 것
 - (B) 정당의 위원회에 대한 기부나 후원
 - (C) 선거운동매체에 대한 지출, 독립지출 혹은 지급을 하는 것
 - (2) 외국인으로부터 (1)문의 (A)나 (B)항에 규정된 기부나 후원을 모집하거나 수락하거나 수령하는 것
- (b) 본조에 사용된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자를 말한다.
- (1) 제22편 제611조(b)에 정의된 외국인 본인. 단, “외국인”에는 미국 시민으로 된 자나 국적법상 미국국적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 (2) 미국시민이 아닌 자 또는 제8편 제1101조(a) (20)에 정의된 바 법적으로 영주권이 인정되지 않은 자

제441조f [타인명의로의 기부의 금지]

누구든지 타인명의로 기부를 행하거나, 자기명의로 기부를 하는데 사용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또 타인명의로의 기부를 알면서 수락해서는 안된다.

<부 록>

제441조g [현금기부에 관한 제한]

어떤 후보자에게 또는 그를 위하여 그 후보자의 연방직에 대한 지명 또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100달러를 초과하는 미국화폐 또는 외국 화폐를 기부해서는 안된다.

제441조h [선거운동권한의 허위표시]

(a) 일반- 연방공직의 후보자나 또는 그의 종업원 또는 대리인은 누구든지

(1) 다른 후보자나 그의 정당·종업원 또는 대리인에게 해가 되는 일에 관해서 이들을 위하여 또는 대신하여 말하고 쓰고 행동한다는 식으로 자기 자신 또는 자신의 위원회 또는 자기 통제하의 조직을 허위로 표시해서는 안된다. 또한

(2) (1)의 규정을 위반하는 계획·음모·기도를 알면서 고의로 참가하거나 참가를 공모해서도 안된다.

(b) 부정한 자금권유- 누구든지 이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모집할 목적으로 후보자나 정당 혹은 그 고용인이나 기관을 위하여 연설, 발표문 기타 행위에서 부정하게 대리하는 일

(2) 그 정을 알면서 고의로 (1)과 같은 행위에 공모하거나 참여하는 일

제441조i [초과사례금 수납]

(a) 선거직 또는 임명직 공무원이나 연방정부부서의 고용원으로 있는 자는 2,000달러 이상의 사례금을 받을 수 없다(단, 그 자신이나 배우자·측근자의 여비와 생계비 및 대리인으로서의 보수나 수수료로 받은 것은 제외한다) .

(b) 선거직 또는 임명직 공무원이나 연방정부부서의 고용원이 또는 이들을 대신하는 자가, 자선단체에 기부한 사례금 또는 그 일부는 본조에 따라 수납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c) 어느 일력년(calendar year) 동안에 받은 사례금의 총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그 년도말에 반환한 금액은 제외한다.

(d) 본조의 (a)의 (2)에 있어서 사례금은 그것을 받은 해에만 받은 것으

로 취급한다.

개혁법 323조 정당의 소프트머니

(a) 전국위원회-

- (1) 일반- 정당의 전국위원회는 이 법상 신고요건이 정해지고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것이 아닌 여하한 자금이나 금품을 모집하거나 수수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 기부받거나 후원받거나 이전하거나 또는 지출하여서는 안된다.
- (2) 적용- (1)문에 의하여 확립된 금지는 여하한 전국위원회, 당해위원회를 위하여 행위하는 공직자, 기관 그리고 당해위원회에 의하여 직접 혹은 간접으로 창설되거나 출연되거나 운영되거나 지휘를 받는 단체에 관하여 적용된다.

(b) 주, 구, 지역 위원회-

- (1) 일반- (2)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구, 지역 정당위원회나 그 기관이 연방선거활동을 위하여 지출하거나 지급한 금액은 이 법상의 신고요건대상, 제한, 금지대상인 자금으로부터 행해진다.

(2) 적용-

- (A) 일반- 301(20) (A) 조의 (i) 이나 (ii)문에도 불구하고, (B)항에 따라, (1)문은 이하의 금액에서 할당된 당해활동을 위하여 지출된 금액의 범위에서 당해조문에 규정된 활동을 위하여 정당의 주, 구, 지역 위원회가 지출하거나 지불한 금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i) 이 법의 금지, 제한 신고요건에 따르는 기부금으로만 구성된 금액

- (ii) 이 법의 제한, 금지 신고조건에 따르지 않는 기타 금액

(B) 조건- 이하의 경우에는 (A)문이 적용된다-

- (i) 연방직 후보자의 명확한 신원에 대한 언급이 없는 활동

- (ii) 주나 지방 공직의 명확한 신원의 후보자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매체외의 방송, 케이블, 통신위성매체를 위한 비용으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

<부 록>

- (iii) (A)문에 규정되어 지출된 금액이 주법에 따라 기부된 금전으로부터 지출되고 (㉠)문의 요건에 맞는 경우 단, 누구든지 그러한 지출이 있는 당해 연도에 정당의 주, 구, 지역위원회에 대하여 10,000달러 이상을 기부하여서는 안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iv) 당해지출이나 지불을 하는 주, 구, 지역위원회에 의하여 모집된 자금에서만 지출되는 금액으로 다음으로부터 당해위원회에 제공되는 자금은 제외된다.
 - (I) 정당당의 기타 주, 구, 지역위원회
 - (II) 정당의 전국위원회
 - (III) 위 (I)과 (II) 위원회의 기관
 - (IV) 위 (I)과 (II) 위원회의 창설, 출연, 운영, 통제를 받는 단체
- (C) 전국정당, 연방후보자, 공직자의 개입과 정당들간의 합작의 금지- (e)항에도 불구하고 (B) (iii)항상 지출되도록 특별히 지정된 금액은 이하의 경우에만 이 항의 요건을 충족한다.
 - (i) (a)나 (e)에 규정된 누구든지의 이름으로나 그 자에 의하여 모금, 수령, 지시, 이전 또는 지출되지 않는 금액인 경우
 - (ii) 정당의 2개 이상의 주, 지역, 구의 위원회에 의하여 합동으로 자금모집활동을 통해 모금, 수수, 지시받지 않는 금액인 경우
- (c) 자금모집 비용- 연방선거활동을 위하여 지출되거나 지급되는 비용의 일부나 전부가 (a)나 (b)에 규정된 자에 의하여 지출된 금액은 이 법의 제한, 금지, 신고요건에 따라야 한다.
- (d) 면세 조직- 정당의 전국, 주, 구, 지역위원회와 그 기관, 그 출연, 운영, 통제등에 따르는 단체 등은 이하를 위한 기부금을 모집하여서는 안 되고 직접 후원금을 지출하여서도 안된다.
 - (1) 1986년 내국세법 501(c)에 규정된 조직으로 동법 501(a)에 의하여 면세대상이고, 연방선거와 관련하여 지출을 하는 것
 - (2) 동법 527에 규정된 조직.
- (e) 연방후보-
 - (1) 일반- 후보자, 연방공직자, 후보자나 연방공직자의 기관, 기타 그에 의하여 설립, 출연, 운영, 통제를 받는 단체는 이하의 행위를 하여

서는 안된다.

(A) 이 법상의 금지, 제한, 신고요건에 따르지 아니하는 금전을 모금, 수수, 지시, 이전, 지출.

(B) 이하의 경우가 아니면 연방선거외의 선거에 대하여 자금을 쓸 수 없다.

(i) 315(a) (1),(2),(3)문상 정치위원회와 후보에 대한 기부금으로 허용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자금의 경우가 아닐 때

(ii) 연방직선거에 관련한 기부금조성에 의하여 이법상 금지된 출연자로부터의 자금이 아닌 경우가 아닐 때

(2) 주법- (1)문은 당해문에 규정된 개인에 의한 자금의 모금, 수수, 지출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 개인이란 주법상 자금의 모금, 수수, 지출이 허용된 경우에 주나 지역의 공직 후보자이거나 있던 자를 말한다.

(3) 자금모금 행사- (1)문이나 (b) (2) (C)에도 불구하고 연방공직자나 그 후보자는 정당의 주, 구, 지역 위원회의 자금모금행사에 참석, 연설, 출현할 수 있다.

(4) 특정모금의 허용-

(A) 일반 모금- 이항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1)문에 규정된 개인은 내국세법의 501(c)에 규정되고 501(a)에 의하여 면세되는 조직을 위하여 어떻게 쓰일 것인지에 대하여 특정하지 않은 일반 모금을 할 수 있다.

(B) 특정 모금- (A)에서 허용된 일반모금에 추가적으로, (1)문에 규정된 개인은 301(20) (A) 조의 (i),(ii)문에 규정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을 얻기위함을 명시하여 모금할 수 있다. 혹은 이하의 경우에 주로 그러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조직된 실체를 위하여 모금할 수 있다.

(i) 개인을 위하여만 모금된 것인 경우

(ii) 연간 누구든지 모금한 금액이 20,000달러를 넘지 않을 것

(f) 주의 후보-

(1) 일반- 당해 조문에서 규정한 주나 지역의 공직 후보자나 공직자, 또

<부 록>

는 그 기관은 그 자금이 이 법의 제한, 금지, 신고요건에 따르는 경우가 아니면 301(20) (A) (iii)에 규정된 매체를 위한 지출을 해서는 안된다.

- (2) 특정 매체의 예외- (1)문은 주나 지역의 선거와 관련하여 매체가 개입하고 그 선거에 관련한 후보자나 공직자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경우에는 당해문에 규정된 개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41조 (삭 제)

미성년자로부터의 기부금지

개혁법 324항 17세이하의 자에게 정당위원회나 후보자는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받을 수 없다.

제442조 [기술지원·기타 용역확보·여비조달권한 및 그 비용의 지불]

1971년의 연방선거운동법에 따라 그 의무수행을 위해 1972년 7월 1일부터 상원사무총장에게 다음과 같은 권한이 주어졌다.

- (1) 기술지원을 확보하는 권한
- (2) 상원의 상임위원회가 본편(title) 제72조a(i)에 따라 용역을 확보하는 것과 같은 방식·조건 및 적절한 범위에서 기술자·전문가·상담원 및 그들의 조직으로부터 수시로 필요에 따라 용역을 확보하는 권한
- (3) 연방정부기구와 의사운영 및 집행위원회(the Committee on Rules and Administration)의 사전동의하에 배상을 전제로 그러한 기구의 인적 용역을 사용하는 권한
- (4) 공식적인 여비를 조달하는 권한

본절의 규정을 실행하기 위한 지출은 상원사무총장이 승인한 “상원의 부수비용”(Contingent Expenses of the Senate) 이란 제하의 “잡비항목”에 포함된 자금에서 한다. 1971년의 [수정] 연방선거운동법의 권한으로 상원사무총장이 받은 잡비수령액으로서 국고로 옮겨진다.

제 2 절 일반규정

제451조 [규제산업체에 의한 신용대부의 확대 ; 규칙]

민간항공국, 연방통신위원회 및 주간통상위원회는 1972년 2월 7일부터 90일 이내에, 연방직후보자 또는 그를 대신하는 자에게 연방직선거지명 후보 또는 선거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될 물건이나 용역에 관한 무보증신용대부의 확장에 관한 규칙을 통신국이나 위원회가 지정한 자가 공표하여야 한다.

제452조 [선거활동을 위한 일정한 연방자금의 사용금지]

1964년 경제기회법(the Economic Opportunity Act : 42 U.S.C. 2701 et seq.)을 위해 설치된 자금은 연방직선거결과에 영향을 주는 활동, 유권자등록활동을 직접·간접으로 재정지원하기 위해서 또는 선거와 관련된 지역사무행정(the Community Services Administration)의 관리나 고용원의 봉급을 지불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없다.

제453조 [효 령]

- (a) 일반-(b)항에 따라 이 법의 규정과 이 법에 따라 제정된 규칙은 연방직선거에 관해서는 주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b) 주와 지방 정당위원회-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나 지역의 정당위원회는 주법에 따라 어떤 자금이 금지나 제한 또는 당해 위원회의 사무실건물을 매입하거나 건설하는 비용에 대한 이 법의 신고요건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등해 자금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454조 [일부무효]

이 법의 일부규정이거나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이 법의 적용이 무효인 경우에도, 이 법의 유효인 다른 부분과 다른 사람 또는 사건에 대한 이 법의 적용은 그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부 록>

제455조 [출소기간]

- (a) 누구든지 위반일로부터 5년이내에 기소되거나 고발되지 아니하는 한 이 장 제1절의 규정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거나 처벌되지 아니한다.
- (b)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1) 이 조 (a)항에서 규정된 출소기간은 이 조의 효력발생일의 전·중·후에 행해진 위반행위에 적용된다.
 - (2) 1974년 12월 31일에 시행되는 이 장 제1절의 규정에 대한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어떠한 행위나 누락도 1974년연방선거운동법의 시행당시에 당해규정에 대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이를 이유로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별표) 새로운 기부금 한계

	후보자나 후보자 위원회에 대한 기부(한선거당)	전국정당위원회에 대한 기부(연간)	PACs, 주/ 지역 정당 이나 기타 정치 위원회에 대한 기부 (연간)	총액제한
개인기부 한도	총액제한에 따라 2,000\$	총액제한에 따라 정당위원회당 2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주나 지역 정당위원회당 10,000\$ ○ 총액제한에 따라 각 PACs나 기타 정당위원회당 5,000\$ 	2년의 선거주기동안 95,000\$: 후보자들에 대하여 선거주기당 37,500\$ ○ 전국정당위원회와 PACs에 대하여 선거주기당 57,500\$ (모든 전국정당 위원회에 대한 한 선거주기당 기부 한도는 20,000\$에서 57,500\$이고, 한 선거주기당 PACs에 대한 한도는 37,500\$)
복수후보 위원회 기부한도	5,000\$	15,000\$	5,000\$	제한 없음
기타 정치위원회 기부한도	1,000\$	20,000\$	5,000\$	제한 없음

○ 內國稅法중 政治資金關係規定

第95章 大統領選舉運動基金

제9001조 [명칭]

이 장은 “대통령선거운동기금법(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Fund Act)”이라 한다.

제9002조 [용어의 정의]

(1) “수권위원회”라 함은 미국의 대통령과 부통령에 입후보하는 후보자에 관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비의 지출을 수반할 수 있도록 당해 후보자가 서면으로 권한을 부여한 정치위원회를 의미한다. 이러한 수권은 당해 정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보되어야 하며, 그 수권상의 사본은 당해 후보자에 의하여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수권의 철회도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수권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통보되고, 제출되어야 한다.

(2) “후보자”라 함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인을 의미한다.

(A) 미국의 대통령직 또는 미국의 부통령직 선거를 위하여 대정당(major party)에 의하여 지명 된 자, 또는

(B) 10개이상의 주에서 투표용지(election ballot) 위에 그의 성명을, 대통령직 또는 부통령직 선거를 위한 정당의 후보자로 등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또는 투표용지위에 그를 지지하기로 서약한 선거인들의 성명을 등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이 조의 (6) · (7)호 및 제9004조(a)항(2)호의 목적상, “후보자”라는 용어는, 직전(preceding) 대통령선거에 관하여, 당해 선거에서 대통령직을 위한 대중의 표(popular votes)를 얻은 개인을 의미한다. 이 “후보자”라는 용어에는 2개이상의 주에서 미국의 대통령직 또는 부통령직에의 당선노력을 현실적으로 중지한

개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3) “위원회”라 함은 1971년의 연방선거운동법 제309조(a)항(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연방선거위원회를 의미한다.
- (4) “수급자격있는 후보자(eligible candidate)”라 함은 제9003조에 규정된 이 장에 의한 보조금(payments)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한 모든 적용가능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및 부통령에 입후보하는 정당의 후보자를 의미한다.
- (5) “기금”이라 함은 제90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대통령선거운동기금을 의미한다.
- (6) “대정당(major party)”이라 함은 대통령선거에 관하여, 그 정당의 대통령후보자가 직전대통령선거에서 모든 대통령후보자들이 득표한 총투표수의 25퍼센트이상을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서 득표한 정당을 의미한다.
- (7) “소정당(minor party)”이라 함은 대통령선거에 관하여, 그 정당의 대통령후보자가 직전대통령선거에서 모든 대통령후보자들이 얻은 총투표수의 5퍼센트이상 25퍼센트 미만을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서 투표한 정당을 의미한다.
- (8) “신정당(new party)”이라 함은 대통령선거에 관하여, 대정당 또는 소정당이 아닌 정당을 의미한다.
- (9) “정치위원회”라 함은
1인 또는 그 이상의 개인의 연방, 주 또는 지방의 선거공직에의 지명이나 당선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주기위한 지도를 할 목적으로 기부금을 받거나 지출을 행하는 위원회, 협회 또는 조직(법인체여부는 불문)을 의미한다.
- (10) “대통령선거”라 함은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electors) 선거를 의미한다.
- (11) “적정선거운동경비(qualified campaign expense)”라 함은
 - (A) 다음과 같이 지출이 수반된 경비, 즉
 - (i) 대통령직에 입후보하는 정당의 후보자가 그의 당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또는 부통령직에 입후보하는 당해 정당의 후보자의 당

<부 록>

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또는 이 두가지 경우를 위하여 수반한 경비

(ii) 부통령직에 입후보하는 정당의 후보자가 그의 당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또는 대통령직에 입후보하는 당해 정당의 후보자의 당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또는 이 두가지 경우를 위하여 수반한 경비

(iii) 대통령직 및 부통령직에 입후보하는 정당의 후보자들의 수권위원회가 이러한 공직후보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당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반한 경비

(B) 지출보고기간(expenditure report period ; 제(12)호에서 정의됨) 안에 수반되거나, 이러한 기간개시전에 지출이 수반된 것으로서 동기간중에 사용될 부동산, 용역 또는 시설에 관한 경비

(C) 당해 경비의 지출수반 또는 지급이 행하여 지는 곳에서 연방법 또는 주법의 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비를 의미한다.

후보자 또는 수권위원회가, 경우에 따라, 당해 후보자 또는 위원회를 위하여 지출을 수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자가 수반한 경비는 당해 후보자 또는 수권위원회에 의하여 수반된 경비로 간주되어야 한다. 미국의 대통령 및 부통령선거를 위한 정당소속 후보자의 수권위원회가 또한 연방, 주 또는 지방선거공직에 입후보하는 1인 이상의 다른 후보자의 당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출을 수반한 경우, 이러한 다른 개인의 당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이러한 위원회가 수반한 지출은 연방선거위원회가 그 규정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당해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자의 당선을 추진하여 수반된 경비로 간주되어야 한다.

(12) 대통령선거에 관한 “지출보고기간(expenditure report period)”이라 함은

(A) 대정당 경우에는, 선거전 9월 1일부터 개시되어(또는, 그보다 초기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연방의 대통령선거를 위하여 그 후보자를 지명하는 전국지명대회일로부터 개시) 대통령선거일후 30일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 (B) 대정당이 아닌 정당의 경우에는, (A) 목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선거를 위한 최단지출보고기간을 가지는 대정당의 지출보고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의미한다.

제9003조 [보조금의 수급자격요건]

(a) 총 칙

제900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받을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하여는,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한 정당의 대통령후보자는, 서면으로 -

- (1) 당해 후보자의 적정선거운동경비에 관하여 연방선거위원회가 요구하는 증거를 확보하고, 동위원회에 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하여야 한다.
- (2) 동위원회가 요구하는 기록·장부 기타 정보를 유지하고, 동위원회에 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하여야 한다.
- (3) 제9007조의 규정에 의한 동위원회의 검사(audit) 와 조사(examination)에 응하여야 하며,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이 요구되는 액수를 납부할 것을 동의하여야 한다.

(b) 대정당

제900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받을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하여는,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한 대정당의 후보자들은, 위증죄의 벌칙하에서, 연방선거위원회에 다음을 증명(certify) 하여야 한다.

- (1) 당해 후보자 및 그 수권위원회는 제90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들이 받을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초과하여 적정선거운동경비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 할것이라는 점
 - (2) 당해 후보자 및 그 수권위원회는 제9006조(c) 장의 적용으로 인하여 기금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에 부족액이 있어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정선거운동경비의 지변을 위한 기부금을 받지 아니하였고, 또한 받지 아니할 것이라는 점
- 이러한 증명은 연방선거위원회가 규정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대통령선거일전의 일정시후까지 하여야 한다.

<부 록>

(c) 소정당 및 신정당

제900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하여는,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한 소정당 및 신정당의 후보자들은, 위증죄의 벌칙하에서, 연방선거위원회에 다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 (1) 당해 후보자 및 그 수권위원회는 제90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정당의 후보자가 받을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초과하여 적정선거운동경비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 할 것이라는 점.
- (2) 당해 후보자와 그 수권위원회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이러한 후보자와 그 수권위원회의 적정선거운동경비가 제9006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후보자가 기금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정도의 범위안에서만 적정선거운동경비를 지변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수령·지출 또는 보유할 것이라는 점.

이러한 증명은 연방선거위원회가 규정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대통령선거일전의 일정시각까지 하여야 한다.

(d) 후보자에 의한 철회

입후보한 개인이 제9002조(2)호의 마지막 문장의 규정이 적용되는 결과로서 후보자로 볼수 없게 된 경우, 이러한 개인은-

- (1) 제900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더 이상 받을 자격이 없다. 다만, 이러한 개인이 2개이상의 주에서 미국의 대통령직 또는 부통령직에의 당선을 능동적으로 추진하던 기간중에 비용지출이 수반된 적정선거운동경비를 지변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 조에 의한 보조금을 받을 자격을 가진다.
- (2) 그가 후보자로 간주될 수 없게된 날 이후, 실행가능한한 신속히, 제90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수령한 보조금중 적정선거운동경비의 지변에 사용되지 아니한 액수와 동일한 액수를 재무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9004조 [보조금수급자격이 있는 후보자의 권리]

(a) 총 칙 (In general)

이 장의 규정에 따라-

- (1)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한 각각의 대정당의 수급자격있는 후보자들은, 총액에 있어서 제2편 제441조의 a(b)항(1)호(B) 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들에게 적용되는 지출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액수와 동일한 액수를 제900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다.
- (2) (A)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한 소정당의 수급자격있는 후보자들은 제 900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총액에 있어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대정당에게 인정된 액수에 당해 소정당의 대통령후보자가 직전 대통령선거에서 얻은 총득표수가 대정당들의 대통령후보자들이 직전 대통령선거에서 얻은 총득표수의 평균에 대비되는 비율에 상응하는 액수만큼 받을 수 있다.
(B) 만일 대통령직에 입후보한 1개 또는 그 이상의 정당(대정당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의 후보자가 직전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였고, 당시 모든 대통령후보자들이 얻은 총득표수의 5퍼센트 이상 25퍼센트 미만의 득표를 그가 한 경우에는, 당해 후보자와 그의 부통령직 러닝메이트는, 제9003조(a)항 및 (c)항의 규정의 준수를 조건으로, 제900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있는 후보자로 취급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그는 직전 대통령선거에서 그가 얻은 총득표수를 고려하여(A) 목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산정된 액수를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만일, 이 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당의 수급자격있는 후보자가 보조금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액수는(A) 목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분(amount of the entitlement) 만큼 감액되어야 한다.
- (3) 대통령선거에서 부속대통령후보자가 총투표수의 5퍼센트 이상을 얻은 소정당 또는 신정당의 수급자격있는 후보자들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대정당에게 인정된 액수에 당해 선거에서 당해 후보자가 얻은 득표수가 당해 선거에서 대정당들의 대통령후보자들이 얻은 총득표수의 평균에 대비되는 비율에 상응하는 액수만큼 제900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2)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있는 후보자들의 경우, 이 호의 규정에 의하

<부 록>

여 인정되는 액수는, 만일 있다면 앞의 문장의 규정에 의한 권리분을 초과하는 액수까지로 제한되어야 한다.

(b) 한도액

대통령선거에 관하여 (a)항(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정당의 수급자격있는 후보자들에 대한 보조금의 총액은 다음 각호 중의 적은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1) 당해 수급자격있는 후보자와 그들의 수권위원회에 의하여 수반된 적정선거운동경비에서, 당해 후보자나 위원회에 의하여 수령·지출 또는 유보된 적정선거운동경비를 지변하기 위한 기부금의 액수를 공제한 액수,

(2) (a)항(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정당의 수급자격있는 후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에서 이 항 (1)호에 규정된 기부금의 액수를 공제한 액수

(c) 제 한

정당의 수급자격있는 후보자들은 (a)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받을 수 있다.

(1) 당해 수급자격있는 후보자 또는 그들의 수권위원회에 의하여 수반된 적정선거운동경비를 지변하기 위한 경우

(2) 이러한 적정선거운동경비를 지변하기 위하여 그 수입금(proceeds)이 사용된 대부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또는 그밖에 이러한 적정선거운동경비의 지변을 위하여 사용된 기금(이러한 후보자 또는 위원회에 의하여 수령·지출된 적정선거운동경비의 지변을 위한 기부금이 아닌 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경우

(d) 개인자금으로부터 지출

제900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하여는, 대통령직에 입후보하는 대정당, 소정당 또는 신정당의 후보자는 연방선거위원회에 다음을(문서로) 증명(certify) 하여야 하며, 이는 위증죄의 적용대상이 된다. 즉, 당해 후보자는 그의 개인적 자금 또는 그의 가족의 개인적 자금으로부터 그의 대통령선거운동을 위하여 알면서 (knowingly) 총액 5만달러를 초과하는 지출을 하지 아니할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항의 목적상, 부통령직에 입후보한 대정당, 소정당 또는 신정당의 후보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개인자금으로 부터의 지출은 이러한 정당의 대통령직 입후보자에 의한 지출로 간주되어야 한다.

(e) 가족의 정의

(d)항의 목적상, “가족”이라는 용어는 후보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 이복(이부) 형제, 자매 이복(이부) 자매 및 이러한 자들의 배우자를 의미한다.

제9005조 [연방선거위원회에 의한 인증]

(a) 1차적 인증

미국의 대통령 및 부통령직입부보를 위한 정당의 후보자가 제9003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한 모든 적용가능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 10일 이내에 연방선거위원회는 제9006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있는 후보자에 대한 보조금지급을 위해서 제90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전액을 재무장관에게 인증통보(certify) 하여야 한다.

(b) 인증 및 결정의 중국성

(a)항의 규정에 의한 연방선거위원회의 1차적 인증과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동위원회가 행한 모든 결정은, 동 결정이 제90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위원회에 의한 조사와 검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및 제90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국적이며 결정적인 처분이 된다.

제9006조 [수급자격있는 후보자에 대한 보조금]

(a) 선거운동기금의 설치

이 규정에 의하여 미국 재무성의 전기상에 “대통령선거운동기금”으로 명명되는 특별기금을 설치한다. 재무장관은, 수시로, 제60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당해 기금에 충당할 것으로 지정한(직전 대통령선거에 따라 지정) 액수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액수를 당해 기금에 이입하여야 한다. 별도로 세출예산이 계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부 록>

중에 위와 같이 지정된 액수와 동일한 액수만큼 재무성의 일반예산으로부터 당해 기금에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이 이철되며, 이러한 액수는 회계연도의 제한없이 당해 기금에 계속된다.

(b) 기금으로부터의 보조금

정당의 수급자격있는 후보자에 대한 보조를 위한 연방선거위원회로부터 제9005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통보를 받은 경우, 재무장관은 당해 후보자에 대하여 동위원회가 인증한 액수를 당해 기금으로부터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후보자들에 대하여 지급된 액수는 당해 후보자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

(c) 기금의 부족액

정당의 수급자격있는 후보자에 대한 보조를 위한 제9005조의 규정에 의한 연방선거위원회의 인증이 있는 때에, 재무장관이 당해 기금의 자금이 모든 정당의 수급자격있는 후보자들에 대한 보조금의 전액지급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하거나 부족할 수도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재무장관은 각 정당의 수급자격있는 후보자들이 그들의 권리분의 총액에 비례하는 몫(pro rata share)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액수만큼을 보조금 지급시에 유보하여야 한다. 앞 문장의 규정을 이유로 유보된 액수는, 당해 액수가 유보된 모든 수급자격있는 후보자들에게 이러한 액수 또는 그 일부분을 지급할만한 충분한 자금이 기금에 확보되어 있다고 재무장관이 결정한 때에 지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정당의 수급자격있는 후보자들이 받아야 하는 권리분의 전액지급을 만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기금에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유보된 액수는 각 정당의 수급자격있는 후보자들이 그들의 권리분의 총액에 비례하는 몫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지급되어야 한다.(b)항 및 제9008조(b)항(3)호 와 제9037조(b)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을 위한 충분한 자금이 기금에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재무장관이 결정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든지, 이러한 보조금지급을 행할 목적을 위하여 기타의 다른 자금원(source) 으로부터 자금을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007조 [조사 및 검사 ; 반환금]

(a) 조사 및 검사

매회의 대통령선거후, 연방선거위원회는 각 정당의 대통령 및 부통령후보자의 적정선거운동경비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b) 반환금

(1) 제90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수급자격있는 후보자들에 대하여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분이 제90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연방선거위원회가 결정한 경우에는, 동위원회는 당해 후보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후보자는 재무장관에게 그 초과부분과 동일한 액수를 반납하여야 한다.

(2) 정당의 수급자격있는 후보자 및 그들의 수권위원회가 제90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정당의 수급자격있는 후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초과하여 적정선거운동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연방선거위원회가 결정한 경우에는, 동위원회는 이러한 초과액수를 당해 후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후보자는 그 초과액수와 동일한 액수를 재무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 대정당의 수급자격있는 후보자 또는 그들의 수권위원회 적정선거운동경비((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된 액수에 관련된 적정선거운동경비가 아닌 것)를 지변하기 위하여 기부금(제9006조(c)항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기금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받은 기부금은 제외)을 받았다고 연방선거위원회가 결정한 경우에는, 동위원회는 이와같이 수령한 기부금의 액수를 당해 후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후보자는 이러한 액수와 동일한 액수를 재무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4) 제90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수급자격있는 후보자에게 지급된 보조금중 어떠한 액수라도 다음과 같은 목적, 즉

(A) 이러한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되는 적정선거운동경비를 지변하기 위하여, 또는

(B) 이러한 적정선거운동경비를 지변하기 위하여 그 수입금이 사용된

<부 록>

대부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또는 그밖에 이러한 적정선거운동경비의 지변을 위하여 사용된 기금(적정선거운동경비의 지변을 위하여 수령·지출된 기부금은 제외)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되었다고 연방선거위원회가 결정한 경우에는, 동 위원회는 이와같이 사용된 액수를 당해 후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후보자는 이러한 액수와 동일한 액수를 재무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5) 어떠한 액수가 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로부터 징수되는 다른 반환금에 추가되는 때에, 제90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가 수령하는 보조금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어떠한 액수도 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수급자격있는 후보자로부터 징수될 수 없다.

(c) 통보

선거일후 3년이 경과한 대통령선거에 관하여는, 연방선거위원회는 어떠한 통보도 (b)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할 수 없다.

(d) 반환금의 예탁

(b)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장관이 받은 모든 반환금은 재무장관에 의하여 재무부의 일반기금(general fund)에 예탁되어야 한다.

제9008조 [대통령후보지명대회를 위한 보조금]

(a) 계정의 설치

장관은 제9006조(a)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유지하는 다른 계정에 추가하여, 각각의 대정당 및 소정당의 전국위원회를 위한 별도의 계정을 대통령선거운동기금속에 유지하여야 한다. 장관은, (b)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의 이러한 전국위원회가 받을수 있는 액수와 동일한 액수를 각각의 이러한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이러한 예탁금은 제60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납세자)이 지정한 액수로부터 인출되어야 하며, 이는 제9006조(a)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있는 후보자를 위한 계정속으로 이입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b) 기금으로부터의 보조금에 대한 권리분

(1) 대정당

이 조의 규정에 따라, 대정당의 전국위원회는 (3)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 액수는, 대통령후보지명대회에 관하여, 총 40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2) 소정당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소정당의 전국위원회는 (3)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 액수는, 대통령후보지명대회에 관하여, (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전국위원회가 받을 수 있는 액수에 당해 소정당의 대통령후보자가 직전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후보자로서 얻은 총득표수가 대정당들의 대통령후보자들이 직전 대통령선거에서 얻은 총득표수의 평균에 대비되는 비율에 상응하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3) 보조금

(g)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방선거위원회로부터 인증통보를 받은 경우, 장관은 이 항의 규정에 의한 그 권리분의 수령을 선택한 대정당 또는 소정당의 전국위원회에 대하여 (a)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되는 당해 계정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조금은 (c)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전국위원회에 의하여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한도액

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정당 또는 소정당의 전국위원회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은 해당 위원회를 위하여 지정된 계정으로부터 지급되며, 그 액수는 당해 보조금지급 당시에 당해 계정속에 있는 액수로 제한되어야 한다.

(5) 권리분의 조정

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립된(established) 권리분은 미국법전(U.S.C) 제2편 제441조의 a (b)항 및 제441조의 a (d)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립된 지출한도액이 이 편 제441조의 a (c)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부 록>

(c) 기금의 사용

(b)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보조금의 어떠한 부분도 대통령후보지명대회에 참가하는 후보자 또는 대의원의 경비를 지변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보조금은 다음 경우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 (1) 이러한 보조금을 받는 전국위원회에 의하여 또는 이를 위해서 대통령후보지명대회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경비(예탁금의 지급을 포함한다)를 지변하기 위한 경우, 또는
- (2) 이러한 경비를 지변하기 위하여 그 수입금이 사용된 대부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또는 그밖에 이러한 경비의 지변을 위하여 사용된 기금(당해 위원회가 받은 이러한 경비를 지변하기 위한 기부금은 제외)을 회복시키기 위한 경우

(d) 지출한도

(1) 대정당

(3)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정당의 전국위원회는 그 총액에 있어서 (b)항(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지출을 대통령후보지명대회와 관련하여 행할 수 없다.

(2) 소정당

(3)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정당의 전국위원회는, 그 총액에 있어서, (b)항(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정당의 전국위원회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지출을 대통령후보지명대회와 관련하여 행할 수 없다.

(3) 예외

연방선거위원회는 대정당 또는 소정당의 전국위원회가 그 총액에 있어서, 이 항 (1)호 또는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립된 한도액을 초과하는 지출을 행할 수 있도록 허용(authorization) 할 수 있다. 이러한 허용은, 비정상적이고 예견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하여, 대통령후보지명대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원회에 의한 예외적인 지출이 필요하다고 연방선거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법률서비스 또는 회계서비스의 제공

이 조의 목적상, 정당의 전국위원회에 대하여 또는 이를 위하여 법률서비스(Legal services) 또는 회계서비스를 제공한 자에게 정당의 전국위원회가 아닌 자(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정규고용자인 경우)가 그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대통령후보지명대회경비의 한도액에 관련하여, 이러한 전국위원회에 의하여 또는 이를 위하여 행하여진 지출로 취급되어서는 아니된다.

(e) 보조금의 수급가능시기

대정당 또는 소정당의 전국위원회는 (b)항(3)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당해 정당의 대통령후보지명대회가 개최되는 해의 전년도 7월1일부터 받을 수 있다.

(f) 기금에 대한 이입

대통령후보지명대회가 종료되고, 당해 정당의 전국위원회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액수를 지급받은 후, 당해 전국위원회의 계정에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장관은 당해 잔여금을 기금에 이입하여야 한다.

(g) 위원회에 의한 인증

대정당 또는 소정당은 연방선거위원회가 요구하는 서식, 방법 및 시기에 따라 당해 정당의 전국위원회 계정에 관한 서류(Statement)를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서류에는 동위원회가 요구하는 추가적인 정보와 함께 제2편 제433조(b)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위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받은 경우, 연방선거위원회는 동위원회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를 신속히 심사(verify)하고, (b)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러한 위원회가 받을 수 있는 액수의 전액을 당해 위원회에 지급할 수 있도록 장관에게 이를 인증통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증은 대통령후보지명대회가 개최되는 해의 12월 31일 이전에 연방선거위원회가 행하는 조사와 검사의 대상이 된다.

(h) 반환금

연방선거위원회는 제9007조(b)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위원회가 수급자격

<부 록>

있는 후보자로부터 반환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정당 또는 소정당의 전국위원회에게 반환금을 요구할 수 있는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제9007조(c)항 및 제9007조(d)항의 규정은 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위원회가 요구한 반환금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제9009조 [의회에 대한 보고 ; 제규칙]

(a) 보고서

연방선거위원회는 매회의 대통령선거후 실행 가능한 한 신속히, 다음 사항을 나타내는 완전한 보고서(full report) 를 상원과 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각 정당의 후보자 및 그들의 수권위원회에 의하여 수반된 적정선거 운동경비(연방선거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세부사항으로 기술된 것)
- (2) 각 정당의 수급자격있는 후보자에 대한 보조금을 위하여 제9005조의 규정에 따라 동위원회에 의하여 인증된 액수
- (3) 제90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된 바가 있는 경우, 당해 후보자들이 요구받은 반환금의 액수와 각각의 사유
- (4) 대통령후보지명대회와 관련하여, 대정당 또는 소정당의 전국위원회에 의하여 수반된 경비
- (5) 각각의 이러한 위원회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제9008조 (g)항의 규정에 따라 연방선거위원회에 의하여 인증된 액수
- (6) 제9008조(h)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된 바가 있는 경우, 당해 위원회들이 요구받은 반환금의 액수와 각각의 사유
이 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각각의 보고서는 상원의 문서(a senate document) 로 프린트되어야 한다.

(b) 제규칙등

연방선거위원회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동위원회에게 부여된 기능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와 검사(제9007조 (a)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조사와 검사에 추가되는 것) 또는 수사를 행하기 위하여, 또한 필요한 장부, 기록 및 정보의 유지와 제출을

요구하기 위하여, (c)항의 규정에 따라 제 규정과 규칙을 발할 권한을 가진다.

(c) 제규칙의 심사

- (1) 연방선거위원회가 (b)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이나 규칙을 발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당해 규정이나 규칙에 관한 이유서(statement)를 이 항의 규정에 따라 상원 및 하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서류에는 제안된 규정이나 규칙을 명시하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증명과 정당화사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 (2) 의회의 어느 1원도 이러한 이유서를 받은 후 30입법근무일(legislative days) 이내에 이러한 이유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안된 규정이나 규칙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부동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방선거위원회는 이러한 규정이나 규칙을 발령할 수 있다. 하원의 위원회가 이러한 규정이나 규칙에 관한 어떠한 결의가 있었음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후 언제든지 당해 결의에 대한 심의를 진행시키기 위한 동의(move)를 할 수 있다(같은 취지인 중전의 동의가 부동의된 경우라 하더라도 가능하다). 당해 동의는 최상의 특전이 부여되며, 토론될 수 없다. 당해 동의에 대한 개정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당해 동의가 가결 또는 부결되게 된 투표를 재심의하기 위한 동의는 할 수 없다. 연방선거위원회는 이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양원중 1원으로부터 부동의된 어떠한 규정이나 규칙도 이를 발할 수 없다.
- (3) 이 항의 목적상, “입법근무일(legislative days)”이라는 용어는 의회의 양원이 개회중에 있지 아니한 날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4) 이 항의 목적상, “규정 또는 규칙”이라는 용어는 하나의 분리가능한 법의 지배를 천명하는 규정 또는 일련의 상관규정들을 의미한다.

제9010조 [사법절차에 있어서의 연방선거위원회의 참여]

(a) 고문에 의한 출석

연방선거위원회는 제9011조의 규정에 따라 제기되는 소송에 대하여, 경쟁채용직의 임용을 규율하는 미국법전 제5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위원

<부 록>

회가 임용하고 제5편 제51장 및 제53장 제3절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위원회가 보수를 정할 수 있는, 동위원회사무처에 고용된 변호사 또는 고문에 의하여, 법정에 출석·방어할 권한이 있다.

(b) 일정지급액의 환수

연방선거위원회는 (a)항에 규정된 변호사와 고문을 통해서, 연방지방법원에 출석하여 제9007조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조사와 검사 결과 재무장관에게 반납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액수의 환수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

(c) 선언적 구제 및 금지명령적 구제

연방선거위원회는 (a)항에 규정된 변호사와 고문을 통하여 이 부편(Subtitle; 대통령선거운동에 대한 보조) 또는 제6096조의 규정이 미치는 민사문제에 관하여 연방법원에 출석하여 선언적 구제 또는 금지명령적 구제조치를 구할 수 있다. 연방선거위원회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이 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는 미국법전 제28편 제2284조의 규정에 따라 3인으로 구성되는 합의부에 의하여 심리·결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불복은 대법원에 하여야 한다.

(d) 재판에 대한 불복

연방선거위원회는 미국정부를 대리하여 심리를 위한 사건이송명령(certiorari)을 대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이 항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출소하는 조치에 관하여 내려진 판결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제9011조 [사법심사]

(a) 연방선거위원회에 의한 인증, 결정, 또는 기타의 조치에 대한 심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연방선거위원회가 행한 인증, 결정 또는 기타의 조치는 이해관계인이 컬럼비아특별구연방고등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에 제기한 청구에 의해서 동법원에 의한 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제기되는 어떠한 청구도 청구대상이 되는 연방선거위원회의 인증, 결정, 또는 기타의 조치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b) 이 장을 시행하기 위한 소송

- (1) 연방선거위원회, 정당의 전국위원회 및 대통령선거에 투표할 자격이 있는 개인은, 선언적 판결 또는 유지명령적 규제를 위한 소송등 이장의 규정을 시행 또는 해석함에 있어서 필요한 적절한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다.
- (2) 연방지방법원은 이 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며, 이 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을 수 있는 행정적 구제 또는 기타의 구제수단을 모두 이행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동등한 관할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러한 소송은 미국법전 제28편 제2284조의 규정에 따라 3인으로 구성되는 합의부에 의하여 심리·결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불복은 대법원에 하여야 한다.

제9012조 [벌칙] (생략)

제9013조 [시행일] (생략)

第96章 大統領豫備選舉補助支出計定法

제9031조[명칭]

이 장은 “대통령예비선거보조지출계정법”(Presidential Primary Matching Payment Account Act) 이라고 한다.

제9032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수권위원회”(authorized committee) 란, 미국 정·부통령을 위한 정당의 후보자들에 관해서, 이 후보자들의 선거진행비용을 조달하는 권한을 후보자들이 서면으로 위임한 정치위원회를 말한다. 수권서의 사본은 후보자가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권의 철회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수권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통보, 제출되어야 한다.

<부 록>

- (2) “후보자”(candidate)란, 미국 대통령이 되기 위한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지명을 구하는 자를 말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후보자를 위한 지명을 구하는 자로 간주된다.
- (A) 후보지명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 1개의 주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 자
 - (B) 기부금을 받거나 적격선거운동비용의 지출을 수반하는 자
 - (C) 타인이 그를 대신하여 기부금을 받거나 선거운동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수락한 자
- “후보자”의 개념 속에는, 미국 대통령선거지명을 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2개주이상에서 실제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 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 (3) “위원회”(commission)란 제2편 제437조c(a) (1)에 의한 연방선거위원회를 말한다.
- (4) “기부금”(contribution)이란, 제9034조(a)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A) 예비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선물, 예약금, 대부금, 전도금, 예금 기타 경제적 가치있는 것이 주어진 경우, 대통령선거년도의 바로 전해의 시작과 더불어 또는 그 후에 주어 진 선물, 예약금, 대부금, 전도금, 예금 기타 경제적 가치있는 것.
 - (B) 법적인 유효·무효를 불문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기부를 행할 계약·약속 혹은 동의
 - (C) 다른 위원회로부터 정치위원회가 양수하여 수액한 자금
 - (D) 후보자 또는 위원회 이외의 자가 후보자나 위원회에 부담을 주지 않고 제3자의 인적 용역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한 것.
 - (E) 다음 사항은 제외된다.
 - (i) (D)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아무 보상없이 후보자를 위하여 개인이 행한 인적 용역의 가치
 - (ii) 제9037조에 따른 지불액
- (5) “보조지출계정”(matching payment account)이란, 제9037조(a)에 따른 대통령예비선거보조지출계정을 말한다.

- (6) “보조지출기간”(matching payment period) 이란, 대통령직의 총선거가 실시된 해로부터 시작되어 후보자가 당의 지명을 구하는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직 후보자를 지명한 날에 종료된다.
 - (A) 이러한 당이 대통령직 후보자를 지명한 날
 - (B) 그 기간 동안에 다수당이 개최한 마지막 전당대회의 최종일
- (7) “예비선거”(primary election) 란, 결선투표·지명총회를 포함하여 정당의 지명전당대회에 파견한 대표의 선출을 위한 선거 또는 미국 대통령직선거후보자지명에 있어서 우선권을 표시하기 위한 선거를 말한다.
- (8) “정치위원회”(political committee) 란, 미국 대통령직선거를 위한 어떤 자의 지명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기부금을 받거나 일정한 선거운동비용을 부담하는 개인·위원회·협회 또는(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을 말한다.
- (9) “적정선거운동비용”(qualified campaign expense) 이란, 재산취득·지급액·배당금·대부금·전도금·예금 또는 현금 기타 경제적 가치 있는 것으로서
 - (A) 지명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후보자나 그의 위원회가 부담하는 것.
 - (B) 그러나 비용부담에 있어서 국법이나 주법을 침해한 부담액이나 지급액은 제외한다.
이 항에 있어서 후보자나 수권위원회를 대신하여 이 비용을 부담하는 권한을 후보자나 위원회로부터 특별히 위임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이 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면 그 비용은 후보자나 위원회가 부담한다.
- (10) “주”(State) 란, 미국의 각주와 콜럼비아 특별구를 말한다.

제9033조 [보조금수급자격]

(a) 요건

제9037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자격을 갖추려면 다음 사항에 서면으로 동의해야 한다.

- (1) 적정선거운동비용에 관하여 선거위원회가 요구하는 증거를 수집·제

<부 록>

출하는 것.

(2) 선거위원회가 요구하는 기록, 장부 기타 자료를 유지하여 제출하는 것.

(3) 제9038조에 따라 선거위원회가 하는 조사와 검사를 받고 동조가 요구하는 일정한 금액을 반납하는 것.

(b) 비용의 한계·내용공고·기부금의 최저한

제9037조에 따라 보조금을 수령하려면, 후보자는 위원회에 다음 사항을 증명해야 한다.

(1) 후보자나 그 수권위원회는 제9035조에 따라 지출한도를 넘어선 적정선거운동비용을 지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2) 후보자는 대통령직의 입후보를 위하여 정당의 지명을 구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

(3) 후보자는 적어도 20개 주의 주민들로부터 받은 기부금이 각각 총 5,000달러를 초과하였다는 것.

(4) (3)의 경우에 어느 한 사람당 기부금액이 250달러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것.

(c) 지급의 중단

(1) 일반원칙 : (2)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은 자에게는 제 9037조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A) 그 자가 제9032조(2)의 마지막 문장을 적용한 결과로 후보자가 되기를 중지한 때.

(B) 계속된 두번째 예비선거에서 그가 실제로 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위원회에 증명하지 않고서 투표용지에 이름을 표시하도록 놓아 둔 경우에, 같은 당의 모든 대통령직 후보자에 대한 총투표 수 중 10% 미만 밖에 획득하지 못하고 그 날로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경우

(2) 적정선거운동비용, 장관에게 지불 ; 제9037조에 따라 지급을 받는 데 있어서, (1)에 의하여 부적격인 후보자는 이 후보자가 (1)에 의해 부적격으로 되기 전에 부담한 적정선거운동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9037조에 따라 지급을 계속 받을 수 있다.

- (3) 투표율의 계산 : (1) (B)에 있어서 관련된 예비선거가 한 주 이상에서 같은 날 실시되는 경우에 후보자는 그가 최고의 투표율을 받은 날에 행해진 예비선거에서 받은 투표율을 그가 받은 것으로 취급한다.
- (4) 적격의 회복
- (A) 어떤 자가 (1) (A)의 적용결과로 제9037조에 따라 지불받을 적격이 없는 경우에 선거위원회는 그가 2개주 이상에서 미국 대통령직에 대한 입후보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그를 후보자로 결정할 수 있다. 선거위원회는 그가 (a)에 따라 수급적격의 회복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결정을 해야 한다.
- (B) (1) (B)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 (B)에 따라 지급이 중단되었던 후보자는 지급중의 계기가 되었던 선거일 후에 행해진 예비선거에서 동당의 후보자에 대한 총투표중 20%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1) (B) 가 없었더라면 그가 수령했을 금액을 포함하여) 지불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제9034조 [보조금지급에 대한 적격후보자의 권리]

(a) 총 칙

제9033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자격있는 모든 후보자는 제903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당해후보자가 지명을 얻고자 하는 대통령선거년도 직전년도의 개시이후에 당해후보자 또는 그의 수권위원회가 받은 각각의 기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개인당 250달러를 초과하여 이루어진 기부금액은 제외된다. 이 항과 제9033조(b)에 있어서 “기부금액”이란, 성명과 주소에 의해 기부를 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에 의한 헌금을 말하며 제9032조(4)의 (B),(C),(D)에 의한 예약금·대부금·전도금·예금 기타 경제적 가치있는 것은 제외한다.

(b) 한도액

(a)에 따라 후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총액은 제2편 제441조a(b) (A)에 따라 적용되는 지출한도의 5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부 록>

제9035조 [적정선거운동비용의 한도]

(a) 지출한도액

후보자는 고의로 제2편 제441조a(b) (1) (A)에 의한 지출한도를 초과하여 적정선거운동비용을 지출해서는 안된다. 또한 대통령후보자가 되기 위한 지명을 얻기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고의로 그의 개인자금 또는 가족의 개인 자금으로부터 총액 50,000달러를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다.

(b) 가족의 정의

(a)에 있어서 “가족”이란, 후보자의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형제·의복형제·자매 및 그들의 배우자를 말한다.

제9036조 [선거위원회의 확인]

(a) 최초의 확인

후보자가 제9037조에 따라 지불을 받기 위해서 제9033조에 따라 적격을 회복한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는 제9034조에 따라 후보자가 받을 권리가 있는 지불금 전액을 제9037조의 후보자에게 지불가능함을 확인해야 한다.

(b) 결정의 종국성

(a)에 따른 선거위원회의 최초의 확인과 본장의 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제9038조에 따른 위원회의 조사 및 검사와 제9041조에 따른 사법심사를 제외하고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이다.

제9037조 [적격후보자에 대한 지급]

(a) 계정의 설치

장관은 제90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대통령선거운동기금에 있어서 동조에 따른 계정외에도 대통령예비선거보조지출계정이란 별도의 계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장관은 제9006조(c) 및 제9008조(b) (3)에 의한 기금이 지불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결정을 한 후, 그 이용가능 금액을 제9033조에 따라 후보자가 지불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지출계정에 적립해야 한다.

(b) 보조지출계정(matching payment account) 으로부터의 지급

보조지출기간이 시작되기 전을 제외하고 제9036조에 의한 선거위원회의 증명을 받는 즉시 장관은 선거위원회가 증명한 금액을 보조지출계정으로 부터 후보자에게 이전해야 한다. 동일당의 후보자에게 이전을 함에 있어서, 장관은 (a)에 따라 이용가능한 기금의 공평한 분배를 해야하고 공평한 분배를 함에 있어서는 이 증명을 수납한 순서를 고려해야 한다.

제9038조 [회계검사·조사와 반환]

(a) 검사와 조사

각각의 보조지출기간이 경과한 후 선거위원회는 제9037조에 따라 보조금을 수령한 각 후보자와 그의 수권위원회의 적정선거운동비용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검사를 해야 한다.

(b) 반환

(1) 보조지출계정으로부터 후보자에게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가 제90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초과했다고 판단한 경우 위원회는 그 사실을 후보자에게 통지하고 후보자는 초과액을 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선거위원회가 보조지출계정으로부터 후보자에게 지급한 보조금이 다음과 같은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에 유용되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후보자에게 유용된 액수를 통지하고 후보자는 유용된 액수와 동액의 금액을 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A) 그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된 적정선거운동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B) 사용한 대부금의 이자상환을 위해서 또는 기타 선거운동비용을 지불하기 위하여 사용한 자금을 반환하기 위하여(수령하여 지출한 선거운동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기부금 제외)

(3) 보조지출계정에서 후보자가 받은 금액은 지출이 수반된 적정선거운동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모든 채무의 청산을 위하여 보조지출기간 종료후 6월이 지나지 않는 기간동안에 그 지급이 유보될 수 있다. 모든 채무가 청산된 후, 당해후보자의 계정속에 지출되지 아니한 잔여액 -보조지출계정으로부터 수령한 총액이 당해후보자의 계정으로

<부 록>

예치된 적립금총액에 대한 동일한 비율로 지출되지 아니한 총잔액에 해당하는 액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조지출계정에 반환되어야 한다.

(c) 통지

선거위원회는 보조지출기간이 끝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보조지출기간에 대하여 (b)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수 없다.

(d) 반환금액의 적립

(b)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이 받은 금액은 보조지출계정에 적립되어야 한다.

제9039조 [보고·규칙등]

(a) 보고서

선거위원회는 각 보조지출기간 경과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회기중의 상원 및 하원에 완전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각정당후보자 및 수권위원회가 부담한(선거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에 나타난) 적정선거운동비용
- (2) 각 적격후보자에게 지불하기 위하여 제9036조에 따라 선거위원회가 증명한 금액
- (3) 제9038조에 따라 후보자에게 요구한 반환액과 반환요구이유

(b) 규칙 등

선거위원회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조사 및 검사(제9038조(a)가 요구한 것 포함) 또는 수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또한 필요한 장부, 기록 및 자료의 보존과 제출을 하도록 하기 위해 (c)의 규정에 따라 규칙 및 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

(c) 규칙심사

(1) 선거위원회는 (b)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이나 명령을 제정하기 전에 이 항의 규정에 따라 상·하양원에게 규칙 및 명령에 관한 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이유서에는 제안된 규칙과 명령을 제시하고 상세

한 설명과 입법취지를 포함해야 한다.

- (2) 각 원이 이 설명서를 수령한 후 30일 입법기간내에 설명서에 제시된 명령 또는 규칙안을 거부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이 명령 또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하원의 선거위원회가 이 명령이나 규칙에 관계 있는 의안을 제출하면(비록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이전의 동의가 부결되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그 의안을 심의하는 절차를 밟는 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동의안은 전권사항이며, 토론에 회부될 수 없다.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상정될 수 없고, 동의안을 통과시키거나 부결시킨 투표를 재심사하기 위한 동의안을 제출할 수 없다. 위원회는 이 절차에 따라 양원의 1원이 부결한 규칙이나 명령을 제정할 수 없다.

제9040조 [선거위원회의 사법절차참가]

(a) 고문의 출정

선거위원회는 위원회의 고용변호사, 또는 고문으로 하여금 출석·방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쟁채용직의 임명을 규율하는 U.S.C. 제5편의 규정과 관계없이 본편의 제51장의 종장Ⅲ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그 보수를 정할 수 있다.

(b) 일정한 지불금액의 회수

선거위원회는 (a)에 의한 변호사나 고문을 통해서 제9038조에 의거한 회계검사와 회계감사의 결과 장관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으로 결정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c) 금지명령

선거위원회는 변호사나 고문을 통해서 본장의 규정을 실현하기에 적절한 금지명령을 연방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d) 불복

선거위원회는 연방정부를 대리하여 이 조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출소하는 조치에 관하여 내려진 판결이나 명령에 불복하여, 심리를 위한 사건 이송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부 록>

제9041조 [사법심사]

(a) 선거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심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선거위원회의 처분은 콜롬비아특별구연방고등법원에서 심리한다. 청구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b) 심사절차

U.S.C. 제5편 제7장의 규정들은 U.S.C. 제5편 제551조(13)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연방선거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사법심사에 적용된다.

제9042조 [벌칙] (생략)